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542-10

국 가 통 계 승 인 번 호

제 1 1 7 1 0 8 호

#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542-10

국 가 통 계 승 인 번 호

제 117108 호

#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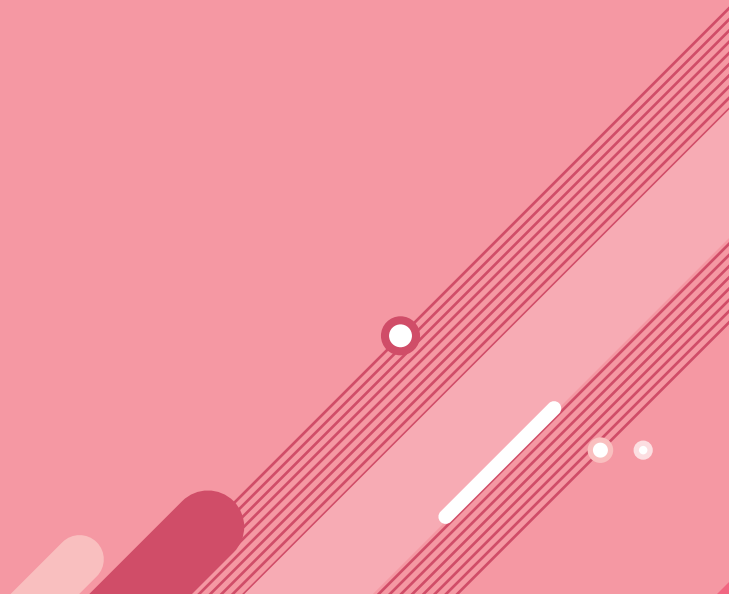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Contents

---



주요현황 ..... 25

제1장 서론 ..... 35

1. 발간목적 ..... 37

2. 법적근거 ..... 38

3. 자료수집 및 분석 ..... 38

4. 주요 분석항목 ..... 38

제2장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 41

1. 신고접수 ..... 43

가. 전체 신고접수 ..... 43

나. 시·군·구별 신고접수 ..... 45

다.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 54

라. 월별 신고접수 ..... 56

2. 신고접수 방법 ..... 57

3. 신고접수 경로 ..... 57



4. 신고자 유형..... 58

- 가. 신고자 유형..... 58
- 나. 신고의무자 유형..... 59
- 다. 비신고의무자 유형..... 63

**제3장 장애인학대 사례판정 및 지원..... 67**

1. 학대조사..... 69

- 가. 전체 학대조사..... 69
- 나.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 70

2. 사례판정..... 71

- 가. 전체 사례판정..... 71
- 나.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72

3. 상담 및 지원..... 74

- 가. 전체 상담 및 지원..... 74
- 나.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75
- 다. 지역·기관별 상담원 1명당 평균 상담 및 지원..... 77

4. 사례종결..... 79

<b>제4장 장애인학대 사례분석</b> .....	81
<b>1. 인구사회학적 요인</b> .....	83
가. 피해장애인 .....	83
1) 성별 .....	83
2) 연령 .....	84
3) 장애유형 및 정도 .....	85
4) 거주형태 .....	88
5) 국민기초생활수보장수급자 여부 .....	88
나. 학대행위자 .....	89
1) 성별 .....	89
2) 연령 .....	90
3) 피해장애인과 관계 .....	91
4) 피해장애인과 동거여부 .....	93
<b>2. 장애인학대 양상</b> .....	94
가. 학대 발생장소 .....	94
나. 학대 발생빈도 및 지속기간 .....	96
<b>3. 장애인학대 유형</b> .....	97
가. 장애인학대 유형 .....	97
1)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97
2)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99



- 나. 장애인학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 100
  - 1)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 100
  - 2)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 101
  - 3)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 102
  - 4)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 103
  - 5)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 103
- 다.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 105
- 라.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 106
- 마.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 ..... 109
  
- 4. 응급조치 ..... 110
  
- 5.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 111
  - 가. 피해장애인 지원 현황 ..... 111
  - 나. 피해장애인 세부지원 현황 ..... 112
    - 1) 의료지원 ..... 112
    - 2) 심리지원 ..... 112
    - 3) 거주지원 ..... 113
    - 4) 사법지원 ..... 113
    - 5) 복지지원 ..... 114
    - 6) 예방교육지원 ..... 114
    - 7) 학업지원 ..... 115
    - 8) 중재지원 ..... 115
    - 9) 진정지원 ..... 115
  - 다.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 116

6. 사례종결	117
7. 사후모니터링	118
<b>제5장 특성별 장애인학대 사례분석</b>	121
<b>1. 발달장애인 학대사례</b>	123
가.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124
나.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125
다.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127
1) 성별 및 연령	127
2) 거주유형	128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28
4) 재학대사례	128
라.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129
1) 성별	129
2) 피해 발달장애인과 관계	130
마.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현황	132
1) 학대 발생장소	132
2) 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134
바.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135
1)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35
2)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36



사. 발달장애인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	137
1)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	137
2)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	137
3) 발달장애인 학대유형별 지속기간 .....	138
4)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	138
아. 발달장애인 학대에 대한 조치 .....	140
1) 응급조치 .....	140
2)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	141
<b>2. 장애아동 학대사례 .....</b>	<b>142</b>
가.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장애아동 .....	142
나. 학대피해 장애아동 .....	144
1) 성별 및 연령 .....	144
2) 장애유형 및 정도 .....	145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	146
다.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	147
1) 성별 .....	147
2) 연령 .....	148
3)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	149
라. 장애아동 학대 발생현황 .....	150
1) 학대 발생장소 .....	150
2) 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	152
마. 장애아동 학대유형 .....	153
1) 장애아동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153
2) 장애아동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154

바. 장애아동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155
1)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성별	155
2)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연령	155
3)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156
사.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조치	158
1) 응급조치	158
2) 피해 장애아동 지원	158
<b>3. 노동력 착취사례</b>	159
가.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160
1) 성별 및 연령	160
2) 장애유형	161
3) 거주유형	162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62
나. 노동력 착취 행위자	163
1) 성별	163
2) 연령	164
3)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	165
다. 노동력 착취 발생현황	167
1)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167
2)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168
라. 노동력 착취에 대한 조치	169
1) 응급조치	169
2)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170



4.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171
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71
1)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171
2) 지역 및 기관별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172
나.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173
1) 성별	173
2) 연령	173
3) 장애유형 및 정도	174
다.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신고자 유형	175
라. 집단이용시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 관계	177
마.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학대 지속기간	179
바.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80
1)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80
2)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82
사.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184
1)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184
2)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운영주체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185
3)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86
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조치	187
1) 응급조치	187
2)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187

5. 재학대 사례	189
가. 재학대 피해장애인	189
1) 성별 및 연령	189
2) 장애유형	190
3) 거주유형	191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91
나. 재학대 행위자	192
1) 성별	192
2) 연령	193
3) 피해장애인과외의 관계	194
다. 재학대 발생현황	196
1) 재학대 발생장소	196
2) 재학대 지속시간 및 발생빈도	198
라. 재학대 학대유형	199
1) 재학대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99
2) 재학대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200
마. 재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치	201
1) 응급조치	201
2) 재학대 피해장애인 지원	202



**제6장 일반사례 현황** ..... 205

- 1. 일반사례 유형 ..... 207
- 2. 지역 및 기관별 일반사례 유형 ..... 208
- 3. 차별사례 현황 ..... 209
  - 가. 차별사례 유형 ..... 209
  - 나. 차별사례 지원결과 ..... 210

**제7장 연도별 장애인학대 현황** ..... 213

- 1. 연도별 신고접수 ..... 215
-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 217
- 3.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 220
- 4. 연도별 학대행위자 ..... 222
- 5. 연도별 장애인학대유형 ..... 224
  - 가.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224
  - 나.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226
- 6. 연도별 재학대 ..... 228

---

<b>부록</b> .....	231
1. 주요용어 설명 .....	233
2.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	238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및 현황 .....	241



**표 목차**

[표 1-1]	주요 분석항목	38
[표 2-1]	신고접수	44
[표 2-2]	시·군·구별 신고접수	45
[표 2-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54
[표 2-4]	월별 신고접수	56
[표 2-5]	신고접수 방법	57
[표 2-6]	신고접수 경로	57
[표 2-7]	신고자 유형	58
[표 2-8]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61
[표 2-9]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63
[표 2-10]	장애유형별 본인 신고	64
[표 3-1]	전체 학대조사	69
[표 3-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	70
[표 3-3]	전체 사례판정 결과	71
[표 3-4]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72
[표 3-5]	2023년에 실시한 상담 및 지원	74
[표 3-6]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75
[표 3-7]	지역·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상담 및 지원	77
[표 3-8]	사례종결	79
[표 4-1]	피해장애인 성별	83
[표 4-2]	피해장애인 연령	84
[표 4-3]	장애인 등록 여부	85
[표 4-4]	피해장애인 주장장애유형	86
[표 4-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87
[표 4-6]	피해장애인 거주형태	88
[표 4-7]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88

[표 4-8]	학대행위자 성별	89
[표 4-9]	학대행위자 연령	90
[표 4-1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92
[표 4-11]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동거여부	93
[표 4-12]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95
[표 4-13]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96
[표 4-14]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98
[표 4-15]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99
[표 4-16]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100
[표 4-17]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101
[표 4-18]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02
[표 4-19]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103
[표 4-20]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04
[표 4-21]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105
[표 4-22]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107
[표 4-23]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	109
[표 4-24]	응급조치	110
[표 4-25]	피해장애인 지원유형	111
[표 4-26]	피해장애인 의료지원 유형	112
[표 4-27]	피해장애인 심리지원 유형	112
[표 4-28]	피해장애인 거주지원 유형	113
[표 4-29]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113
[표 4-30]	피해장애인 복지지원 유형	114
[표 4-31]	피해장애인 예방교육지원 유형	114
[표 4-32]	피해장애인 학업지원 유형	115
[표 4-33]	피해장애인 중재지원 유형	115
[표 4-34]	피해장애인 진정지원 유형	115

[표 4-35]	지역·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	116
[표 4-36]	사례종결 .....	117
[표 4-37]	사후모니터링 .....	118
[표 5-1]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	124
[표 5-2]	발달장애인 학대신고자 유형 .....	125
[표 5-3]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	127
[표 5-4]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거주유형 .....	128
[표 5-5]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	128
[표 5-6]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재학대사례 .....	128
[표 5-7]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	129
[표 5-8]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	131
[표 5-9]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	133
[표 5-10]	발달장애인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	134
[표 5-11]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135
[표 5-12]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136
[표 5-13]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	137
[표 5-14]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	137
[표 5-15]	발달장애인 학대유형별 지속기간 .....	138
[표 5-16]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	139
[표 5-17]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응급조치 .....	140
[표 5-18]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유형 .....	141
[표 5-19]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	141
[표 5-20]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장애아동 .....	143
[표 5-21]	피해 장애아동 성별 및 연령 .....	144
[표 5-22]	피해 장애아동 장애유형 .....	145
[표 5-23]	피해 장애아동 장애정도 .....	146
[표 5-24]	피해 장애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	146

[표 5-25]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성별	147
[표 5-26]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148
[표 5-27]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149
[표 5-28]	장애아동 학대 발생장소	151
[표 5-29]	장애아동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152
[표 5-30]	장애아동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53
[표 5-31]	장애아동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54
[표 5-32]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성별	155
[표 5-33]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연령	155
[표 5-34]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157
[표 5-35]	피해 장애아동 응급조치	158
[표 5-36]	피해 장애아동 지원 유형	158
[표 5-37]	피해 장애아동 사법지원 유형	159
[표 5-38]	노동력 착취 발생	159
[표 5-39]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160
[표 5-4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161
[표 5-4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162
[표 5-42]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62
[표 5-43]	노동력 착취 행위자 성별	163
[표 5-44]	노동력 착취 행위자 연령	164
[표 5-45]	노동력 착취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65
[표 5-46]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167
[표 5-47]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168
[표 5-48]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응급조치	169
[표 5-49]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170
[표 5-5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170
[표 5-51]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71



[표 5-52]	지역 및 기관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	172
[표 5-53]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성별 .....	173
[표 5-54]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연령 .....	173
[표 5-55]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	174
[표 5-56]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	174
[표 5-57]	집단이용시설 신고자 유형 .....	176
[표 5-58]	집단이용시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	178
[표 5-59]	집단이용시설 학대 지속기간 .....	179
[표 5-60]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180
[표 5-61]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182
[표 5-62]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	184
[표 5-6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주체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	185
[표 5-64]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	186
[표 5-65]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응급조치 .....	187
[표 5-66]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	187
[표 5-67]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	188
[표 5-68]	재학대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	189
[표 5-69]	재학대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	190
[표 5-70]	재학대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	191
[표 5-71]	재학대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	191
[표 5-72]	재학대 행위자 성별 .....	192
[표 5-73]	재학대 행위자 연령 .....	193
[표 5-74]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	194
[표 5-75]	재학대 발생장소 .....	196
[표 5-76]	재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	198
[표 5-77]	재학대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199
[표 5-78]	재학대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200

[표 5-79]	재학대 피해장애인 응급조치	201
[표 5-80]	재학대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202
[표 5-81]	재학대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203
[표 6-1]	일반사례 유형	207
[표 6-2]	지역 및 기관별 일반사례 유형	208
[표 6-3]	차별사례 유형	209
[표 6-4]	차별사례 지원결과	210
[표 7-1]	연도별 신고접수	216
[표 7-2]	연도별 신고자 유형	218
[표 7-3]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220
[표 7-4]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222
[표 7-5]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24
[표 7-6]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226
[표 7-7]	연도별 재학대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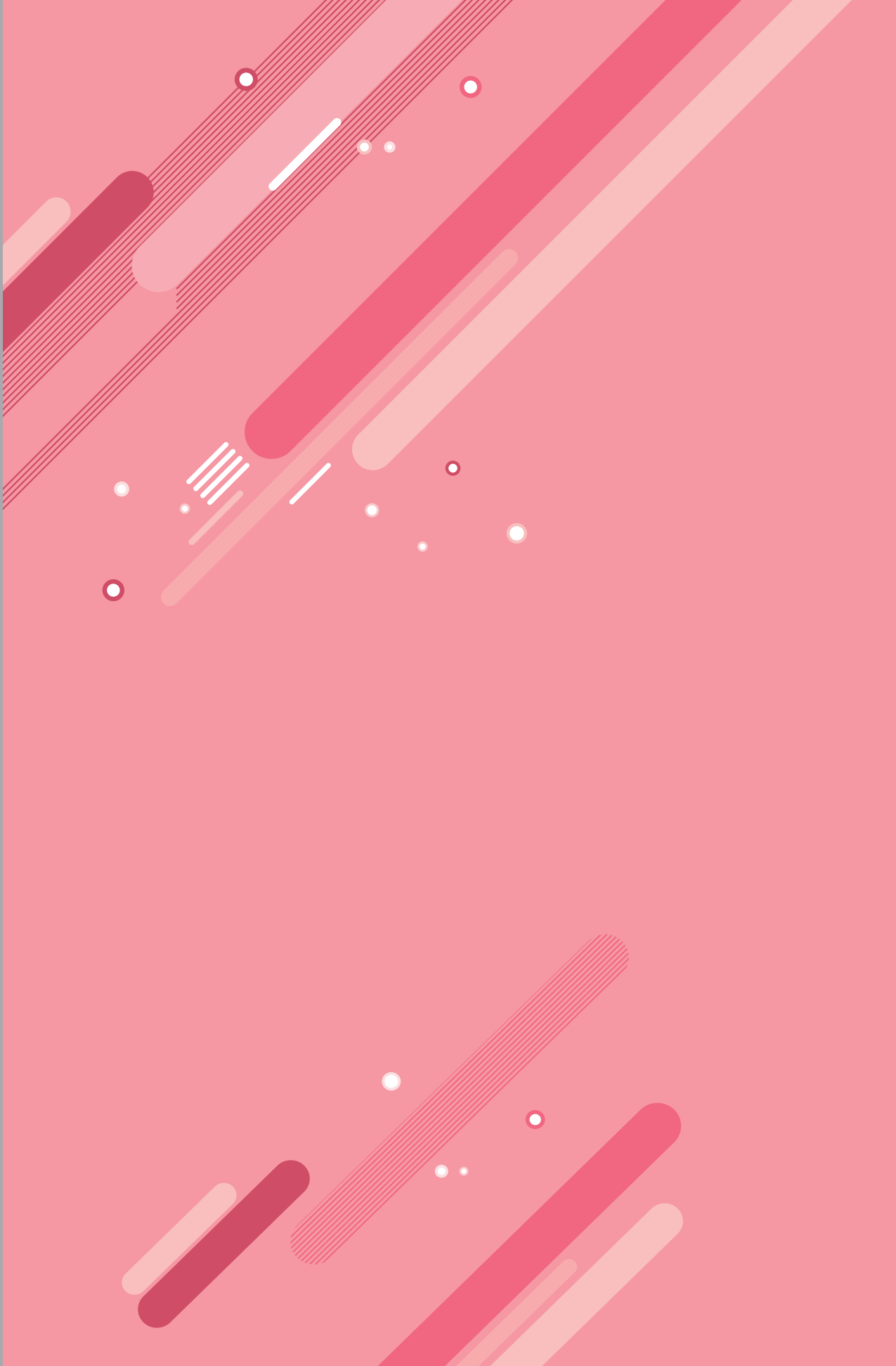
## 그림 목차

[그림 2-1]	신고접수	44
[그림 2-2]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55
[그림 2-3]	월별 신고접수	56
[그림 2-4]	신고자 유형	58
[그림 2-5]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62
[그림 2-6]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64
[그림 3-1]	전체 사례판정 결과	71
[그림 3-2]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73
[그림 3-3]	지역·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76
[그림 3-4]	지역·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담당사례	78
[그림 3-5]	지역·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상담 및 지원	78
[그림 4-1]	피해장애인 성별	83
[그림 4-2]	피해장애인 연령	84
[그림 4-3]	장애인 등록 여부	85
[그림 4-4]	피해장애인 주장애유형	86
[그림 4-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87
[그림 4-6]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88
[그림 4-7]	학대행위자 성별	89
[그림 4-8]	학대행위자 연령	90
[그림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대분류)	93
[그림 4-1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중분류)	93
[그림 4-11]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94
[그림 4-12]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97
[그림 4-13]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98
[그림 4-14]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99
[그림 4-15]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100

[그림 4-16]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101
[그림 4-17]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106
[그림 4-18]	응급조치	110
[그림 4-19]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111
[그림 4-20]	지역·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117
[그림 5-1]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127
[그림 5-2]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129
[그림 5-3]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30
[그림 5-4]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132
[그림 5-5]	발달장애인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134
[그림 5-6]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35
[그림 5-7]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36
[그림 5-8]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응급조치	140
[그림 5-9]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유형	141
[그림 5-10]	피해 장애아동 성별 및 연령	144
[그림 5-11]	피해 장애아동 장애유형	145
[그림 5-12]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성별	147
[그림 5-13]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148
[그림 5-14]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150
[그림 5-15]	장애아동 학대 발생장소	151
[그림 5-16]	장애아동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53
[그림 5-17]	장애아동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54
[그림 5-18]	피해 장애아동 지원 유형	158
[그림 5-19]	노동력 착취 발생	159
[그림 5-2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160
[그림 5-2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161
[그림 5-22]	노동력 착취 행위자 성별	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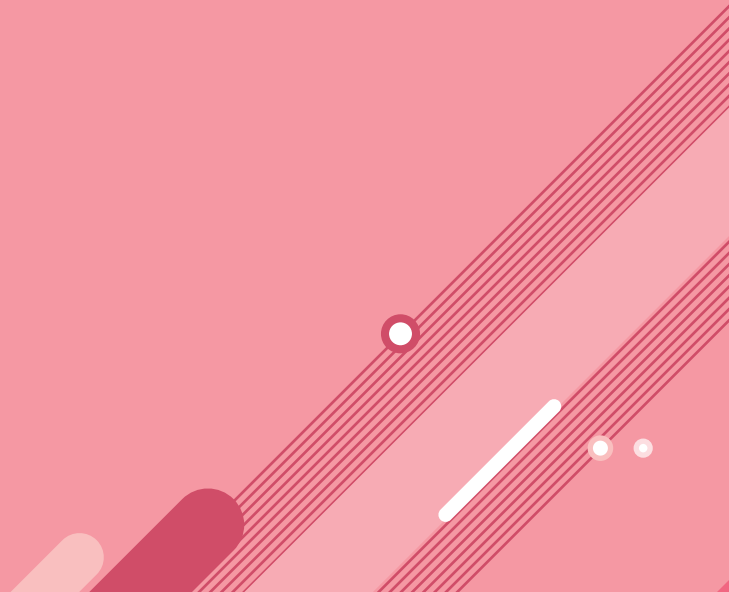
[그림 5-23]	노동력 착취 행위자 연령	164
[그림 5-24]	노동력 착취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66
[그림 5-25]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167
[그림 5-26]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168
[그림 5-27]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170
[그림 5-28]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81
[그림 5-29]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83
[그림 5-30]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185
[그림 5-31]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188
[그림 5-32]	재학대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189
[그림 5-33]	재학대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190
[그림 5-34]	재학대 행위자 성별	192
[그림 5-35]	재학대 행위자 연령	193
[그림 5-36]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95
[그림 5-37]	재학대 발생장소	197
[그림 5-38]	재학대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99
[그림 5-39]	재학대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200
[그림 5-40]	재학대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202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216
[그림 7-2]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221
[그림 7-3]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25
[그림 7-4]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227
[그림 7-5]	연도별 재학대	228





# 주요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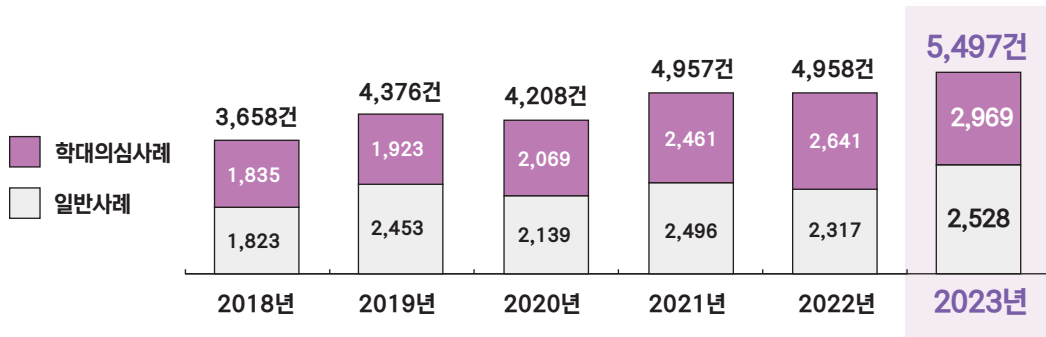
## 주요 현황

- ※ 본 보고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5,497건의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 ※ 본 보고서는 신고접수 현황, 학대 사례판정 및 지원 현황,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인학대 양상 및 유형,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장애아동 학대사례, 노동력 착취사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례, 재학대 사례, 일반사례 현황, 연도별 장애인학대 현황을 분석함
- ※ 일부 항목은 유형별 현황의 수가 많지 않아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전체 추이 파악의 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함

## 신고접수 현황

### 신고접수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는 2023년 5,497건으로, 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2,969건(54.0%), 일반 사례는 2,528건(46.0%)임. 전체 신고 건수는 2018년 3,658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 의심 사례는 2018년 1,835건에서 매년 증가해 왔고, 전년도 2,641건 대비 12.4% 증가
  - 지역·기관별로는 서울 892건(16.2%), 경기남부 781건(14.2%), 경기북부 472건(8.6%), 부산 382건(6.9%) 등의 순으로 접수됨



### 신고자

- ❖ 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7.0%(802건),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73.0%(2,167건)임. 특히 비신고 의무자의 신고는 2018년 1,033건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도 1,776건 대비 22.0% 증가
  - 신고자는 본인이 17.9%(530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4.2%(421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2.5%(372건), 타인 9.7%(287건), 경찰공무원 8.6%(254건) 등의 순이었음
  - 본인 신고는 2018년 194건에서 매년 증가해 왔으며, 전년도 435건 대비 21.8% 증가



**본인**  
17.9%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종사자**  
14.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2.5%



**타인**  
9.7%



**경찰공무원**  
8.6%

## 학대 사례판정 및 지원 현황

### 학대조사

- ❖ 학대의심사례 2,969건 중 2,889건(97.3%)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조사 횟수는 6,277회에 달함

### 사례판정

- ❖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2018년 889건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23년에는 전년 1,186건 대비 19.6% 증가한 1,418건으로 판정됨
  - 장애인학대사례 1,418건(47.8%), 비학대사례 1,054건(35.5%), 잠재위험사례 282건(9.5%), 조사 중인 사례 215건(7.2%)임

### 상담 및 지원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총 3,688건의 학대의심사례(2023년 이전 사례 719건, 2023년 사례 2,969건)에 대해 30,340회의 상담 및 지원 실시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총 93명)은 1명당 연평균 39.7건의 사례를 담당했으며, 1인당 평균 326.2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함

### 사례종결

-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결된 사례는 2,168건으로 사례종결율은 73.0%임. 전년도 사례종결율 65.1% 대비 7.9%p 증가한 수치임

## 학대사례 분석

### 피해장애인

- ❖ 학대로 판정된 1,418건 중 피해장애인은 여성 54.3%(770건), 남성 45.7%(648건)임
- ❖ 연령대는 20대 24.2%(343건)가 가장 많았고, 17세 이하 18.5%(263건), 30대 16.1%(228건), 40대 14.2%(201건) 등의 순이었음
  - 17세 이하의 사례는 전년도 249명 대비 5.6% 증가
  - 주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7.3%(955건), 자폐성장애 6.6%(93건), 지체장애 5.9%(84건), 뇌병변장애 4.7%(66건), 정신장애 4.4%(63건) 등의 순임

-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2018년 659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도 917건 대비 21.2% 증가
- 재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9.0%(128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임



**지적장애**  
67.3%



**뇌병변장애**  
4.7%



**자폐성장애**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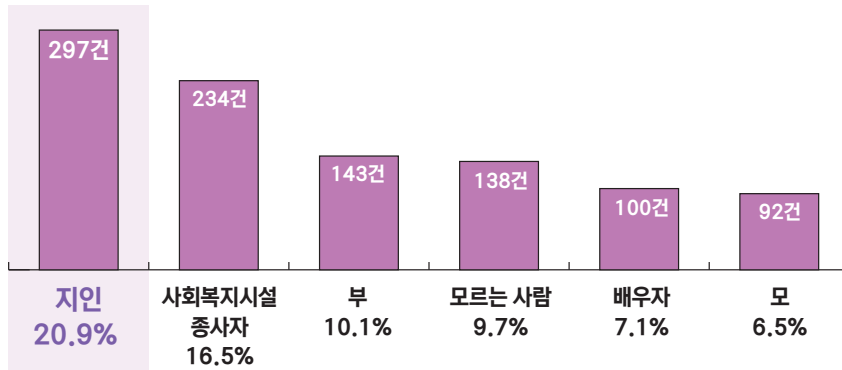
**지체장애**  
5.9%



**정신장애**  
4.4%

### 학대행위자

- ❖ 성별은 남성 69.9%(991명), 여성 30.1%(427명)임
- ❖ 학대행위자는 타인 39.9%(566건)이 가장 많았고, 가족 및 친인척 35.0%(497건),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2.3%(316건),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2.2%(31건) 순임
- 세부 유형으로는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20.9%(297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6.5%(234건), 부(父) 10.1%(143건), 모르는 사람 9.7%(138건), 배우자 7.1%(100건), 모(母) 6.5%(92건) 순임



###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 ❖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4.0%(624건), 장애인거주시설 13.2%(187건), 학대행위자의 거주지 7.5%(107건), 기타 6.1%(87건), 상업시설 5.3%(75건), 교육기관 4.9%(69건) 등임



**피해장애인 거주지**  
44.0%



**장애인 거주시설**  
13.2%



**학대행위자 거주지**  
7.5%



**기타**  
6.1%



**상업시설**  
5.3%



**교육기관**  
4.9%

### 장애인학대 유형

- ❖ 중복 학대를 별도 분류한 장애인학대 유형을 보면 중복 학대 25.3%(359건), 경제적 착취 23.2%(329건), 신체적 학대 20.5%(291건), 성적 학대 15.2%(216건), 정서적 학대 10.6%(151건), 방임 5.1%(72건) 순
- ❖ 중복학대를 미분류한 장애인학대 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가 30.8%(572건), 정서적 학대 24.8%(460건), 경제적 착취 23.9%(443건), 성적 학대 14.1%(261건), 방임 6.4%(119건) 순



**신체적 학대**  
30.8%



**정서적 학대**  
24.8%



**경제적 착취**  
23.9%



**성적 학대**  
14.1%



**방임**  
6.4%

### 응급조치

-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는 172건(12.1%) 실시, 이 중 쉼터 이용이 84.3%(145건)임  
- 기타 장소 5.8%(10건), 거주시설 5.2%(9건), 의료기관 4.7%(8건)임



**쉼터**  
84.3%



**기타 장소**  
5.8%



**거주시설**  
5.2%



**의료기관**  
4.7%

###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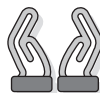
- ❖ 2023년 학대사례 1,418건에 대한 피해장애인 지원은 17,127회 실시  
- 상담지원 66.0%(11,302회), 사법지원 14.4%(2,458회), 복지지원 7.7%(1,322회), 거주지원 3.5%(600건), 기타 지원 4.3%(745회) 등임



**상담지원**  
66.0%



**사법지원**  
14.4%



**복지지원**  
7.7%



**거주지원**  
3.5%



**기타지원**  
4.3%

- ❖ 2023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지원한 학대사례(2023년 학대사례 및 2023년 이전 학대사례) 총 2,004건에 대한 피해장애인 지원은 23,631회 실시

## 특성별 장애인학대 사례 분석 결과

###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 ❖ 피해자의 주·부장애 유형 모두 발달장애인인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75.2%(1,067건)임
  - 학대피해자는 여성 550명(51.5%), 남성 517명(48.5%)임
  - 재학대사례(128건)에서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 경우는 87.5%(112건)임
  - 학대행위자는 남성 69.8%(745명), 여성 30.2%(322명)임
  - 학대행위자는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20.6%(220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0%(203건), 부(父)·모르는 사람 10.5%(112건), 모(母) 6.7%(72건) 순
- ❖ 발달장애인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9.7%(416건), 경제적 착취 26.4%(370건), 정서적 학대 23.3%(326건), 성적 학대 14.2%(199건), 방임 6.3%(88건) 순

### 장애아동 학대사례

- ❖ 0세부터 17세 이하까지의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8.5%(263건)임
  - 피해 장애아동은 남성 59.7%(157명), 여성 40.3%(106명)임
  - 피해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58.2%(153건), 자폐성장애 17.9%(47건), 미등록 11.4%(30건), 뇌병변 장애 4.6%(12건) 등의 순
  - 학대행위자는 남성 64.3%(169명), 여성 35.7%(94명)임
  - 학대행위자는 부(父)·모(母)가 39.5%(104건),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6.3%(43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1.4%(30건) 등의 순
- ❖ 장애아동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8.6%(130건), 정서적 학대 35.0%(118건), 성적 학대 16.0%(54건), 방임 6.5%(22건), 경제적 착취 3.9%(13건) 순

### 노동력 착취사례

- ❖ 경제적 착취사례 443건 중 노동력 착취사례는 112건으로 전체 학대사례의 7.9%임
  - 피해장애인은 남성 57.1%(64명), 여성 42.9%(48명)임
  - 학대행위자는 타인 53.6%(60건),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35.7%(40건), 가족 및 친인척 9.8%(11건) 순
  -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는 장애인거주시설이 33.9%(38건), 직장(일하는 곳) 25.9%(29건), 학대행위자의 거주지 15.2%(17건) 등의 순
  - 노동력 착취 지속 기간이 5~10년 미만인 사례는 32.1%(36건), 10년 이상인 사례는 23.2%(26건)임

###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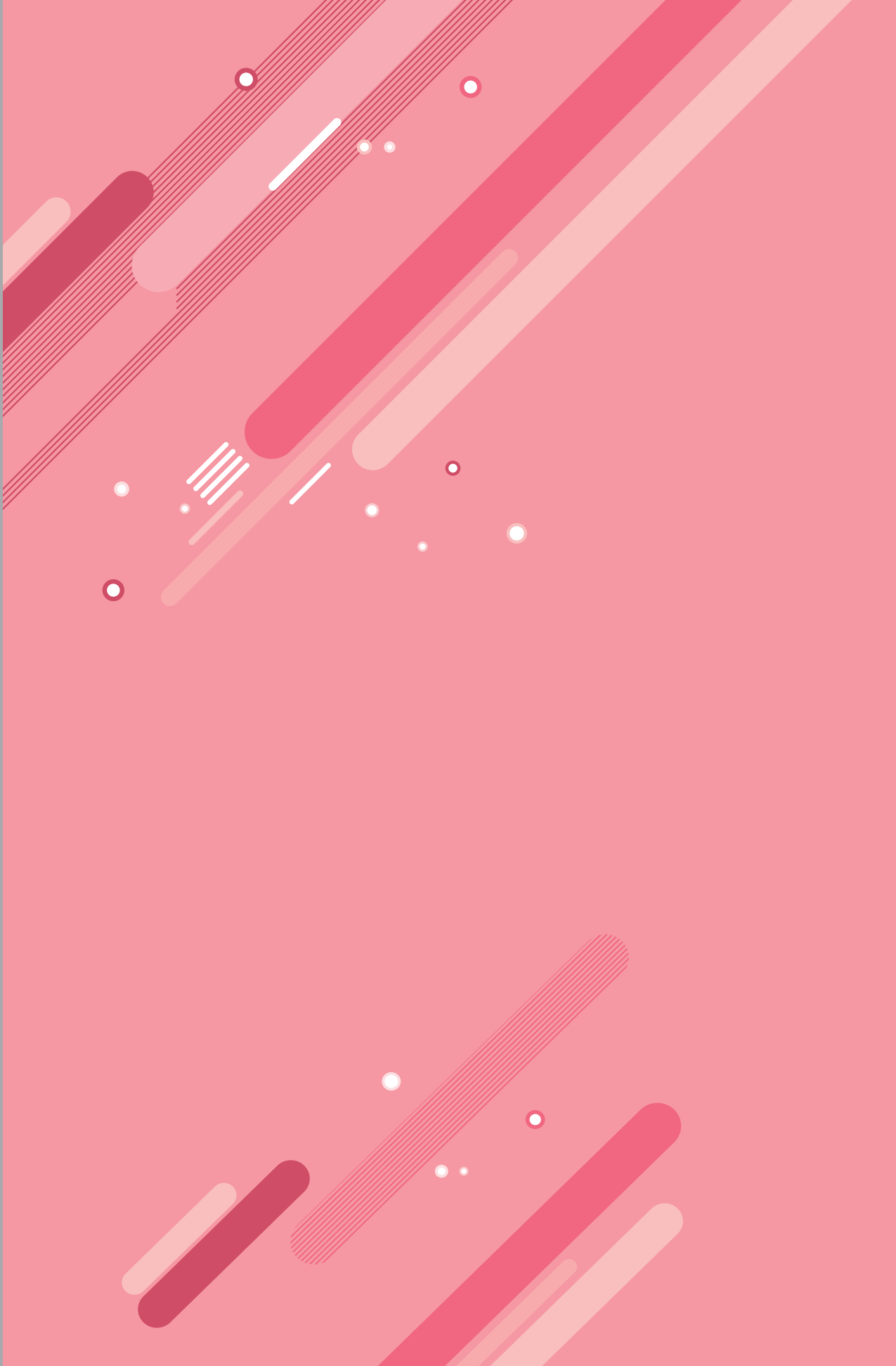
- ❖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27.2%(385건)임
  -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장애인거주시설 48.6%(187건), 교육기관 17.9%(69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8.6%(33건),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7.5%(29건), 미신고시설 5.2%(20건) 등의 순
  - 피해자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9.1%(266건), 자폐성장애 14.0%(54건), 뇌병변장애 4.7%(18건), 정신장애 3.4%(13건) 등의 순
  - 학대행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9.0%(227건),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6.1%(62건),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5.2%(20건) 순
- ❖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 28.5%(147건), 정서적 학대 26.2%(135건), 경제적 착취 24.3%(125건), 성적 학대 11.5%(59건), 방임 9.5%(49건) 순

### 재학대 학대사례

- ❖ 재학대로 학대피해 장애인은 전체 학대사례의 9%(128건)임
  - 재학대 피해장애인은 여성이 75(58.6%), 남성이 53명(41.4%)
  - 재학대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83.6%(107건), 뇌병변장애 4.7%(6건), 자폐성장애 3.9%(5건), 지체장애 2.3%(3건) 순
  - 재학대행위자는 남성 79.7%(102명), 여성 20.3%(26명)
  - 재학대행위자의 연령은 40대 20.3%(26명), 50대 18.0%(23명), 60대 14.1%(18명) 순
  - 재학대행위자는 부(父)·모(母)가 27.4%(35건),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25.8%(33건), 모르는 사람 10.9%(14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0.2%(13건) 순
  - 재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53.9%(69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9.4%(12건), 기타 8.6%(11건), 상업시설 7.8%(10건), 장애인거주시설 7.0%(9건)임
- ❖ 재학대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 29.0%(45건), 정서적 학대 25.8%(40건), 경제적 착취 24.5%(38건), 성적 학대 16.8%(26건), 방임 3.9%(6건) 순

### 일반사례 현황

- ❖ 일반사례 2,528건의 유형은 정보문의 1,478건(58.5%), 기타 605건(23.9%), 불만·민원 245건(9.7%), 장애인차별 200건(7.9%)임
  - 차별사례 유형은 기타를 제외하고 고용 36건(18.0%), 재화·용역 일반 30건(15.0%), 사법·행정 22건(11.0%) 등임





# 1 서론

---

1. 발간목적
2. 법적근거
3. 자료수집 및 분석
4. 주요 분석항목



# 제1장

# 서론

## 1. 발간목적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해, 2015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였다.

2017년 1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어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9개소가 운영 중이다. 경기도와 충청북도는 각각 2개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경기남부, 경기북부, 충북, 충북북부)을 두고 있으며,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2년 12월에 설치되어 2023년 3월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피해자지원, 사후관리 등 직접적인 대응업무를 수행하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관련 연구,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역량 강화, 장애인학대 통계 생산 등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지원하고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로 장애인학대 신고와 조사,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매년 국가통계로 장애인학대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매년 발간되는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국민들에게 장애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장애인학대 신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학대 관련 법률 개정 추진과 정부의 장애인학대 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이러한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복잡한 장애인학대 발생 추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권익보호와 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책 수립 및 시행의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 2. 법적근거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제3호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규정에 따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자료를 분석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의 모든 지원과정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되고 있다. 장애인학대 현황 분석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정보를 취합하였다. 분석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보고서의 통계는 백분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각 항목의 합계는 100.0%가 아닐 수 있다.

## 4. 주요 분석항목

본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분석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1-1] 주요 분석항목

분류	분석항목
신고접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시·군·구별, 지역·기관별, 월별 신고접수</li> </ul> </li> <li>• 신고접수 방법</li> <li>• 신고접수 경로</li> <li>• 신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자,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유형</li> </ul> </li> </ul>
학대 사례판정 및 지원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지역·기관별 학대조사</li> </ul> </li> <li>• 사례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지역·기관별 사례판정</li> </ul> </li> <li>• 상담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지역·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상담 및 지원</li> </ul> </li> <li>• 사례종결</li> </ul>

<p>학대사례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사회학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장애인(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정도, 거주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li> <li>- 학대행위자(성별, 연령, 피해장애인과 관계, 동거여부)</li> </ul> </li> <li>• 장애인학대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 발생장소, 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li> </ul> </li> <li>• 장애인학대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학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li> </ul> </li> <li>• 응급조치</li> <li>•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장애인 지원 현황, 피해장애인 세부지원 현황,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li> </ul> </li> <li>• 사례종결</li> <li>• 사후 모니터링</li> </ul>		
<p>특성별 장애인학대사례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기관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현황,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발달장애인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발달장애인 학대에 대한 조치</li> </ul> </li> <li>• 장애아동 학대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기관별 학대피해 장애아동, 학대피해 장애아동,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장애아동 학대 발생현황, 장애아동 학대유형, 장애아동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조치</li> </ul> </li> <li>• 노동력 착취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노동력 착취 행위자, 노동력 착취 발생현황, 노동력 착취에 대한 조치</li> </ul> </li> <li>•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신고자 유형, 집단이용시설 학대행위자,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학대 지속기간,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조치</li> </ul> </li> <li>• 재학대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학대 피해장애인, 재학대 행위자, 재학대 발생현황, 재학대 학대유형, 재학대에 대한 조치</li> </ul> </li> </ul>		
<p>일반사례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사례 유형</li> <li>• 지역·기관별 일반사례 유형</li> <li>• 차별사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 지원결과</li> </ul> </li> </ul>		
<p>연도별 장애인학대 현황</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 border: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신고접수</li> <li>•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li> <li>• 연도별 장애인학대유형</li> </ul> </td> <td style="width: 50%; border: n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신고자 유형</li> <li>• 연도별 학대행위자</li> <li>• 연도별 재학대</li> </ul>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신고접수</li> <li>•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li> <li>• 연도별 장애인학대유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신고자 유형</li> <li>• 연도별 학대행위자</li> <li>• 연도별 재학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신고접수</li> <li>•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li> <li>• 연도별 장애인학대유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 신고자 유형</li> <li>• 연도별 학대행위자</li> <li>• 연도별 재학대</li> </ul>		





# 2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

1. 신고접수
2. 신고접수 방법
3. 신고접수 경로
4. 신고자 유형



## 제2장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 1. 신고접수

## 가. 전체 신고접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번호 1644-8295를 중심으로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면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이하 학대의심사례)로 접수하여 사례지원 절차에 따라 조사 및 사례판정 등을 실시한다.

학대의심사례 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차별 사례, 복지상담이나 정보문의, 일반 법률상담 등 정보제공이 필요한 사례, 사회나 제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 장애인학대와 무관한 개인 간의 다툼이나 분쟁 등의 사례는 '일반사례'로 접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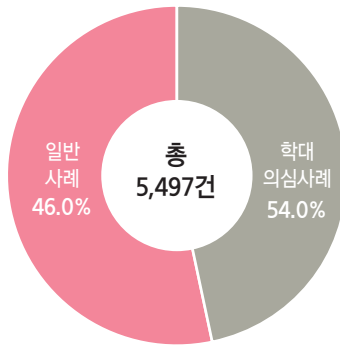
2023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는 5,497건으로 전년도 4,958건보다 10.9% 증가하였다. 학대의심사례는 2,969건(54.0%)으로 전년도 2,641건보다 12.4% 증가하였다. 일반사례는 2,528건(46.0%) 접수되었다.

[표 2-1] 신고접수

(단위: 건, %)

학대의심사례		일반사례		계	
2,969	54.0	2,528	46.0	5,497	100.0

[그림 2-1] 신고접수



## 나. 시·군·구별 신고접수

피해장애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시·군·구별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시·도 중에서는 경기도가 758건(25.5%)으로 가장 신고가 많았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218건(7.3%), 경상남도 208건(7.0%), 부산광역시 199건(6.7%) 등의 순이었다. 시·군·구 중에서는 단일 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면, 경기도 파주시 66건(2.2%), 충청북도 충주시 64건(2.2%), 경기도 양주시 59건(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2건(1.8%), 경기도 남양주시 51건(1.7%) 등의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표 2-2] 시·군·구별 신고접수

(단위: 건, %)

구분	시·군·구	학대의심사례	지역 내 비율	전체 비율
서울	종로구	4	2.1	0.1
	중구	4	2.1	0.1
	용산구	5	2.7	0.2
	성동구	-	-	-
	광진구	3	1.6	0.1
	동대문구	4	2.1	0.1
	종랑구	9	4.8	0.3
	성북구	6	3.2	0.2
	강북구	9	4.8	0.3
	도봉구	11	5.9	0.4
	노원구	23	12.2	0.8
	은평구	14	7.4	0.5
	서대문구	3	1.6	0.1
	마포구	3	1.6	0.1
	양천구	10	5.3	0.3
	강서구	11	5.9	0.4
	구로구	7	3.7	0.2
	금천구	4	2.1	0.1
	영등포구	6	3.2	0.2
	동작구	10	5.3	0.3
관악구	10	5.3	0.3	
서초구	2	1.1	0.1	

구분	시·군·구	학대의심사례	지역 내 비율	전체 비율
서울	강남구	7	3.7	0.2
	송파구	3	1.6	0.1
	강동구	20	10.6	0.7
	소계	188	100.0	6.3
부산	중구	-	-	-
	서구	25	12.6	0.8
	동구	2	1.0	0.1
	영도구	10	5.0	0.3
	부산진구	21	10.6	0.7
	동래구	5	2.5	0.2
	남구	7	3.5	0.2
	북구	12	6.0	0.4
	해운대구	17	8.5	0.6
	사하구	30	15.1	1.0
	금정구	13	6.35	0.4
	강서구	6	3.0	0.2
	연제구	11	5.5	0.4
	수영구	4	2.0	0.1
	사상구	25	12.6	0.8
	기장군	11	5.5	0.4
소계	199	100.0	6.7	
대구	중구	3	2.4	0.1
	동구	26	21.0	0.9
	서구	11	8.9	0.4
	남구	9	7.3	0.3
	북구	24	19.4	0.8
	수성구	12	9.7	0.4
	달서구	30	24.2	1.0
	달성군	9	7.3	0.3
	소계	124	100.0	4.2
인천	중구	9	8.1	0.3
	동구	1	0.9	0.0

구분	시·군·구	학대의심사례	지역 내 비율	전체 비율
인천	미추홀구	24	21.6	0.8
	연수구	4	3.6	0.1
	남동구	6	5.4	0.2
	부평구	31	27.9	1.0
	계양구	14	12.6	0.5
	서구	15	13.5	0.5
	강화군	4	3.6	0.1
	옹진군	3	2.7	0.1
	소계	111	100.0	3.7
광주	동구	10	12.7	0.3
	서구	19	24.1	0.6
	남구	7	8.9	0.2
	북구	23	29.1	0.8
	광산구	20	25.3	0.7
	소계	79	100.0	2.7
대전	동구	38	31.1	1.3
	중구	24	19.7	0.8
	서구	33	27.0	1.1
	유성구	5	4.1	0.2
	대덕구	22	18.0	0.7
	소계	122	100.0	4.1
울산	중구	27	21.8	0.9
	남구	30	24.2	1.0
	동구	12	9.7	0.4
	북구	37	29.8	1.2
	울주군	18	14.5	0.6
	소계	124	100.0	4.2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73	100.0	2.5
	소계	73	100.0	2.5
경기	수원시 장안구	18	2.4	0.6
	수원시 권선구	11	1.5	0.4
	수원시 팔달구	19	2.5	0.6

구분	시·군·구	학대의심사례	지역 내 비율	전체 비율
경기	수원시 영통구	12	1.6	0.4
	용인시 처인구	35	4.6	1.2
	용인시 기흥구	7	0.9	0.2
	용인시 수지구	2	0.3	0.1
	고양시 덕양구	16	2.1	0.5
	고양시 일산동구	11	1.5	0.4
	고양시 일산서구	10	1.3	0.3
	화성시	29	3.8	1.0
	성남시 수정구	11	1.5	0.4
	성남시 중원구	7	0.9	0.2
	성남시 분당구	8	1.1	0.3
	부천시	34	4.5	1.1
	남양주시	51	6.7	1.7
	안산시 상록구	19	2.5	0.6
	안산시 단원구	6	0.8	0.2
	평택시	14	1.8	0.5
	안양시 만안구	29	3.8	1.0
	안양시 동안구	5	0.7	0.2
	시흥시	27	3.6	0.9
	파주시	66	8.7	2.2
	김포시	20	2.6	0.7
	의정부시	37	4.9	1.2
	광주시	17	2.2	0.6
	하남시	6	0.8	0.2
	광명시	3	0.4	0.1
	군포시	4	0.5	0.1
	양주시	59	7.8	2.0
	오산시	13	1.7	0.4
	이천시	4	0.5	0.1
	안성시	28	3.7	0.9
	구리시	13	1.7	0.4
	의왕시	6	0.8	0.2

구분	시·군·구	학대의심사례	지역 내 비율	전체 비율
경기	포천시	17	2.2	0.6
	양평군	21	2.8	0.7
	여주시	22	2.9	0.7
	동두천시	24	3.2	0.8
	과천시	2	0.3	0.1
	가평군	7	0.9	0.2
	연천군	8	1.1	0.3
	소계	758	100.0	25.5
강원	춘천시	29	25.7	1.0
	원주시	28	24.8	0.9
	강릉시	10	8.8	0.3
	태백시	1	0.9	0.0
	속초시	-	-	-
	삼척시	1	0.9	0.0
	홍천군	10	8.8	0.3
	횡성군	5	4.4	0.2
	영월군	1	0.9	0.0
	평창군	1	0.9	0.0
	정선군	3	2.7	0.1
	철원군	6	5.3	0.2
	화천군	7	6.2	0.2
	양구군	5	4.4	0.2
	인제군	4	3.5	0.1
	고성군	1	0.9	0.0
	양양군	1	0.9	0.0
소계	113	100.0	3.8	
충북	청주시 상당구	26	11.9	0.9
	청주시 서원구	28	12.8	0.9
	청주시 흥덕구	27	12.4	0.9
	청주시 청원구	20	9.2	0.7
	충주시	64	29.4	2.2
	제천시	10	4.6	0.3

구분	시·군·구	학대의심사례	지역 내 비율	전체 비율
충북	보은군	1	0.5	0.0
	옥천군	6	2.8	0.2
	영동군	6	2.8	0.2
	증평군	2	0.9	0.1
	진천군	8	3.7	0.3
	괴산군	1	0.5	0.0
	음성군	16	7.3	0.5
	단양군	3	1.4	0.1
	소계	218	100.0	7.3
충남	천안시 동남구	17	10.4	0.6
	천안시 서북구	24	14.6	0.8
	공주시	10	6.1	0.3
	보령시	5	3.0	0.2
	아산시	9	5.5	0.3
	서산시	28	17.1	0.9
	논산시	14	8.5	0.5
	계룡시	1	0.6	0.0
	당진시	22	13.4	0.7
	금산군	2	1.2	0.1
	부여군	1	0.6	0.0
	서천군	4	2.4	0.1
	청양군	6	3.7	0.2
	홍성군	8	4.9	0.3
	예산군	13	7.9	0.4
	태안군	-	-	-
	소계	164	100.0	5.5
전북	전주시 완산구	11	10.5	0.4
	전주시 덕진구	5	4.8	0.2
	군산시	16	15.2	0.5
	익산시	22	21.0	0.7
	정읍시	6	5.7	0.2
	남원시	2	1.9	0.1

구분	시·군·구	학대의심사례	지역 내 비율	전체 비율
전북	김제시	10	9.5	0.3
	완주군	14	13.3	0.5
	진안군	3	2.9	0.1
	무주군	3	2.9	0.1
	장수군	2	1.9	0.1
	임실군	-	-	-
	순창군	-	-	-
	고창군	2	1.9	0.1
	부안군	9	8.6	0.3
	소계	105	100.0	3.5
전남	목포시	37	22.7	1.2
	여수시	5	3.1	0.2
	순천시	12	7.4	0.4
	나주시	13	8.0	0.4
	광양시	8	4.9	0.3
	담양군	10	6.1	0.3
	곡성군	2	1.2	0.1
	구례군	-	-	-
	고흥군	3	1.8	0.1
	보성군	3	1.8	0.1
	화순군	7	4.3	0.2
	장흥군	1	0.6	0.0
	강진군	3	1.8	0.1
	해남군	3	1.8	0.1
	영암군	8	4.9	0.3
	무안군	3	1.8	0.1
	함평군	3	1.8	0.1
	영광군	7	4.3	0.2
	장성군	12	7.4	0.4
	완도군	10	6.1	0.3
진도군	3	1.8	0.1	
신안군	10	6.1	0.3	

구분	시·군·구	학대의심사례	지역 내 비율	전체 비율
전남	소계	163	100.0	5.5
경북	포항시 남구	14	10.4	0.5
	포항시 북구	15	11.1	0.5
	경주시	12	8.9	0.4
	김천시	9	6.7	0.3
	안동시	7	5.2	0.2
	구미시	11	8.1	0.4
	영주시	1	0.7	0.0
	영천시	14	10.4	0.5
	상주시	5	3.7	0.2
	문경시	4	3.0	0.1
	경산시	15	11.1	0.5
	군위군	1	0.7	0.0
	의성군	3	2.2	0.1
	청송군	-	-	-
	영양군	-	-	-
	영덕군	4	3.0	0.1
	청도군	6	4.4	0.2
	고령군	1	0.7	0.0
	성주군	2	1.5	0.1
	칠곡군	9	6.7	0.3
	예천군	1	0.7	0.0
	봉화군	1	0.7	0.0
	울진군	-	-	-
울릉군	-	-	-	
	소계	135	100.0	4.5
경남	창원시 의창구	13	6.3	0.4
	창원시 성산구	7	3.4	0.2
	창원시 마산합포구	4	1.9	0.1
	창원시 마산회원구	6	2.9	0.2
	창원시 진해구	5	2.4	0.2
	진주시	36	17.3	1.2

구분	시·군·구	학대의심사례	지역 내 비율	전체 비율
경남	통영시	14	6.7	0.5
	사천시	7	3.4	0.2
	김해시	43	20.7	1.4
	밀양시	6	2.9	0.2
	거제시	15	7.2	0.5
	양산시	17	8.2	0.6
	의령군	4	1.9	0.1
	함안군	2	1.0	0.1
	창녕군	4	1.9	0.1
	고성군	7	3.4	0.2
	남해군	3	1.4	0.1
	하동군	1	0.5	0.0
	산청군	3	1.4	0.1
	거창군	4	1.9	0.1
	합천군	7	3.4	0.2
	소계	208	100.0	7.0
제주	제주시	52	61.2	1.8
	서귀포시	33	38.8	1.1
	소계	85	100.0	2.9
계		2,969	100.0	100.0

## 다.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기관당 평균 289.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53건(22.8%)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고, 서울 892건(16.2%), 부산 382건(6.9%), 충북 343건(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의심사례는 기관당 평균 156.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전년도(평균 146.7건)와 비교했을 때 평균 10건의 신고가 더 접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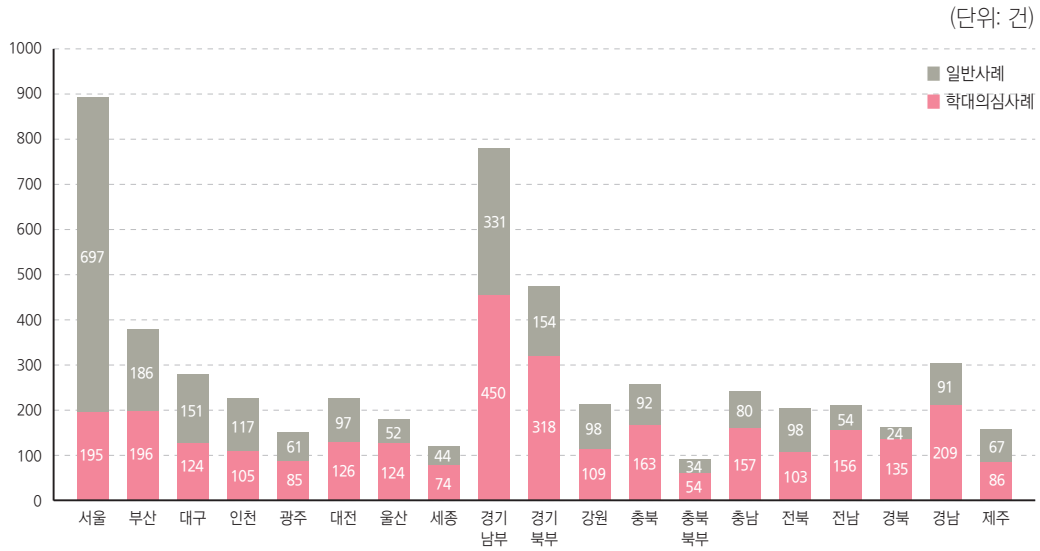
지역별 학대의심사례 신고접수는 경기도가 768건(25.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북 217건(7.3%), 경남 209건(7.0%), 부산 196건(6.6%), 서울 195건(6.6%) 등의 순이었다.

[표 2-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단위: 건, %)

구분		학대의심사례		일반사례		계	
서울		195	6.6	697	27.6	892	16.2
부산		196	6.6	186	7.4	382	6.9
대구		124	4.2	151	6.0	275	5.0
인천		105	3.5	117	4.6	222	4.0
광주		85	2.9	61	2.4	146	2.7
대전		126	4.2	97	3.8	223	4.1
울산		124	4.2	52	2.1	176	3.2
세종		74	2.5	44	1.7	118	2.1
경기	경기남부	450	15.2	331	13.1	781	14.2
	경기북부	318	10.7	154	6.1	472	8.6
	소계	768	25.9	485	19.2	1,253	22.8
강원		109	3.7	98	3.9	207	3.8
충북	충북	163	5.5	92	3.6	255	4.6
	충북북부	54	1.8	34	1.3	88	1.6
	소계	217	7.3	126	5.0	343	6.2
충남		157	5.3	80	3.2	237	4.3
전북		103	3.5	98	3.9	201	3.7
전남		156	5.3	54	2.1	210	3.8
경북		135	4.5	24	0.9	159	2.9
경남		209	7.0	91	3.6	300	5.5
제주		86	2.9	67	2.7	153	2.8
계		2,969	100.0	2,528	100.0	5,497	100.0

[그림 2-2]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 라. 월별 신고접수

2023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는 월평균 458.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학대의심사례는 월평균 247.4건, 일반사례는 월평균 210.7건 접수되었다. 월별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3월이 594건(10.8%)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다음으로 5월 532건(9.7%), 6월 499건(9.1%)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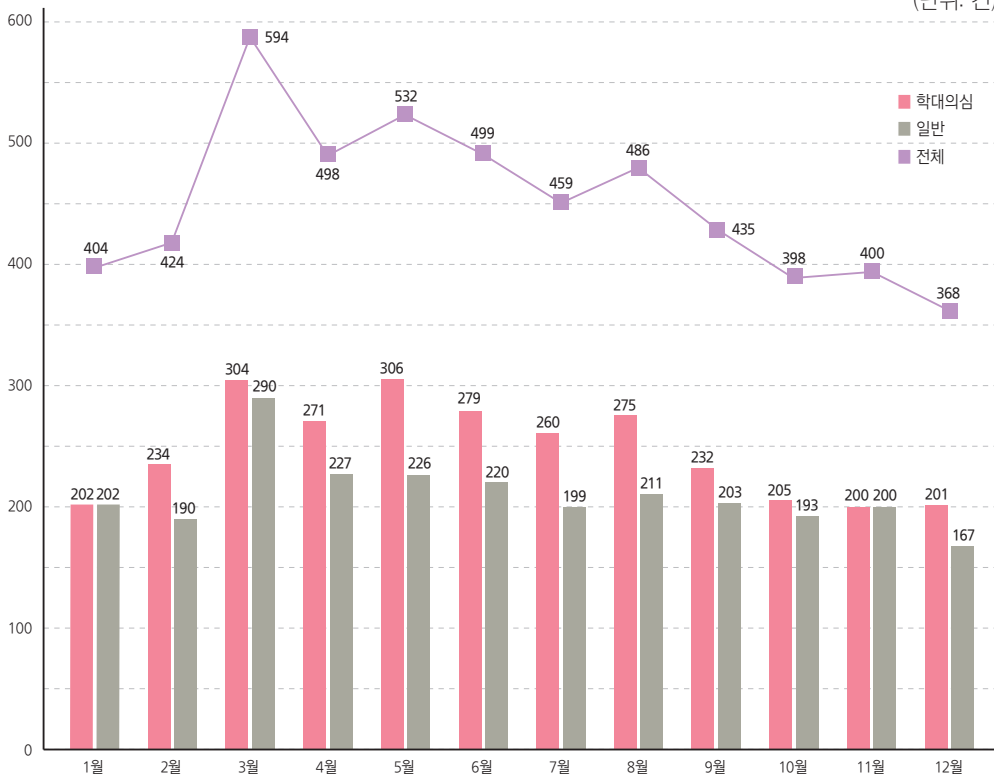
[표 2-4] 월별 신고접수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학대의심	202	234	304	271	306	279	260	275	232	205	200	201	2,969
일반	202	190	290	227	226	220	199	211	203	193	200	167	2,528
계	404	424	594	498	532	499	459	486	435	398	400	368	5,497

[그림 2-3] 월별 신고접수

(단위: 건)



## 2. 신고접수 방법

신고접수는 장애인학대 신고번호 1644-8295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실 번호로 신고하는 전화 신고,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내방 신고,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온라인 신고, 상담원이 사례를 알게 되어 접수하는 인지, 그 외 문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2021년 4월부터 청각·언어 장애인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문자신고시스템을 도입하여 문자(SMS), 카카오톡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2023년 신고자는 주로 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했으며, 이는 전체 신고의 64.4%에 해당하는 3,541건이었다. 다음으로 온라인 신고 976건(17.8%), 인지 신고 317건(5.8%), 내방 신고 301건(5.5%), 팩스 신고 236건(4.3%)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팩스에 의한 신고는 경찰의 장애인학대 통보 방법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표 2-5] 신고접수 방법

(단위: 건, %)

전화	온라인	문자	팩스	우편	내방	인지	기타	계
3,541	976	57	236	11	301	317	58	5,497
64.4	17.8	1.0	4.3	0.2	5.5	5.8	1.1	100.0

## 3. 신고접수 경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로는 신고, 인지, 이관, 연계, 경찰통보가 있다. 인지의 경우 언론보도 등 상담원이 사례를 알게 되어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통보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 사망 및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2023년 신고접수 경로를 보면 일반적인 신고가 4,270건(77.7%)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찰통보 735건(13.4%), 인지 371건(5.8%), 이관 127건(2.3%), 연계 48건(0.9%) 순이었다. 경찰통보 건수는 전년도(570건)에 비해 28.9% 증가하였다.

[표 2-6] 신고접수 경로

(단위: 건, %)

신고	인지	이관	연계	경찰통보	계
4,270	371	127	48	735	5,497
77.7	5.8	2.3	0.9	13.4	100.0

## 4. 신고자 유형

### 가. 신고자 유형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1항) 또한 특정 직종을 정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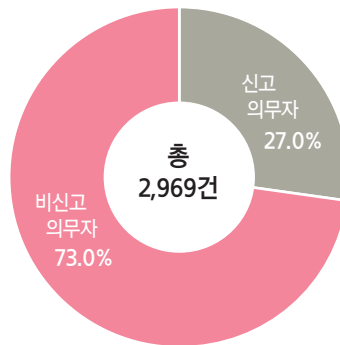
학대의심사례 2,969건 중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802건(27.0%)으로 전년도(865건) 대비 7.3% 감소하였다.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이하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167건(73.0%)으로 전년도(1,776건) 대비 22.0% 증가하였다.

[표 2-7]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계	
802	27.0	2,167	73.0	2,969	100.0

[그림 2-4] 신고자 유형



## 나. 신고의무자 유형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피해장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 학대사례의 특성상 피해장애인 본인이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신고의무자가 학대의 징후를 관찰하고 장애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각각의 신고의무자 유형을 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복무요원 포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담당자,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119구급대의 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종사자, 초·중등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담당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이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2022.1.28. 시행)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담당자,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담당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가 새롭게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었으며, 기존 초·중등학교 교직원은 초·중등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신고의무자의 신고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46.4%(372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9.5%(156건), 초·중등학교 종사자 10.7%(86건),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7.2%(58건),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6.7%(54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담당자,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강사·직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에 의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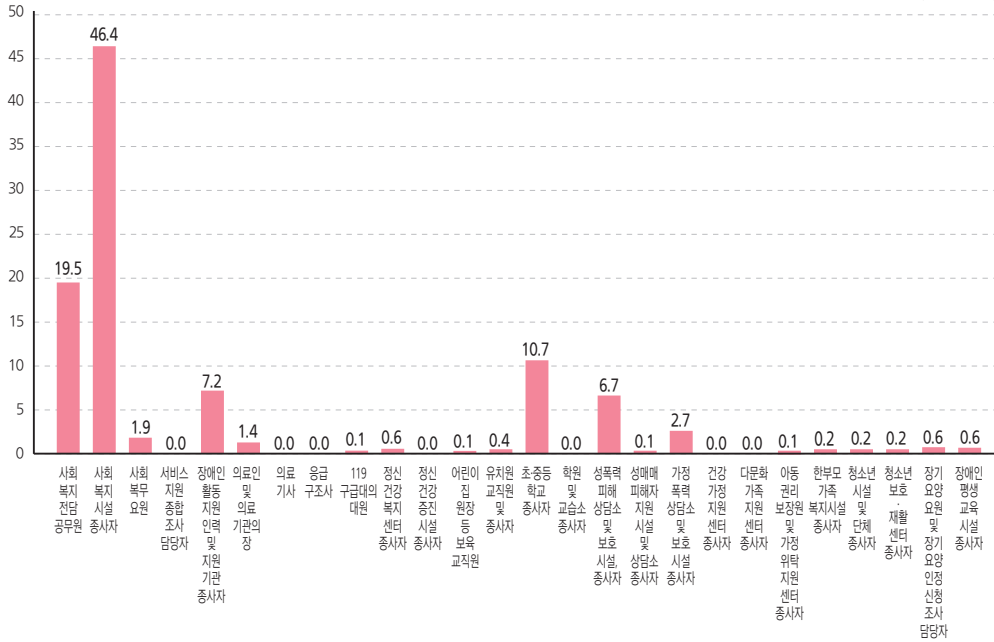
[표 2-8]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단위: 건, %)

신고의무자	건수	비율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56	19.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72	46.4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	15	1.9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담당자	-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58	7.2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1	1.4
의료기사	-	-
응급구조사	-	-
119구급대의 대원	1	0.1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5	0.6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	-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1	0.1
유치원 교직원 및 종사자	3	0.4
초·중등학교 종사자	86	10.7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54	6.7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1	0.1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22	2.7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1	0.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2	0.2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2	0.2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2	0.2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담당자	5	0.6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5	0.6
계	802	100.0

[그림 2-5]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단위: %)



## 다. 비신고의무자 유형

비신고의무자는 피해장애인을 기준으로 본인, 가족 및 친인척, 유관기관 종사자, 타인, 파악안됨으로 분류한다.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현황을 보면 유관기관 종사자의 신고가 40.2%(871건)로 가장 높았고, 본인 24.5%(530건), 가족 및 친인척 20.5%(445건), 타인 13.2%(287건), 파악 안 됨 1.6%(34건)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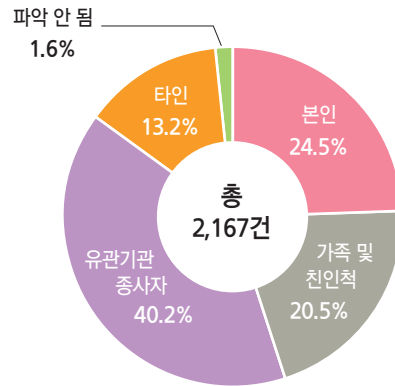
비신고의무자 유형 중 본인에 의한 신고가 530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421건(19.4%), 타인 287건(13.2%), 경찰공무원 254건(11.7%), 부모 211건(9.7%) 등의 순이었다. 피해장애인 본인신고는 24.5%(530건)이며, 전년도(435건)와 비교했을 때 21.8% 증가하였다.

[표 2-9]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단위: 건, %)

비신고의무자		건수	비율
본인		530	24.5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18	0.8
	부모	211	9.7
	자녀	40	1.8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03	4.8
	그 외 친척	73	3.4
	소계	445	20.5
	유관기관 종사자	일반공무원	70
경찰공무원		254	11.7
공공기관 종사자		13	0.6
교육기관 종사자		15	0.7
의료기관 종사자		10	0.5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421	19.4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14	0.6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15	0.7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59	2.7
소계		871	40.2
타인		287	13.2
파악 안 됨		34	1.6
계		2,167	100.0

[그림 2-6]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한 경우는 530건으로 이는 전체 학대의심사례의 17.9%에 해당한다. 직접 피해 신고를 한 본인의 장애유형의 보면 지적장애가 50.2%(266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지체장애 16.8%(89건), 뇌병변장애·정신장애 각각 8.3%(4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지적장애인 신고 건수는 전년도(212건)보다 25.5% 증가하였다.

[표 2-10] 장애유형별 본인 신고

(단위: 건, %)

장애유형	건수	비율
지체장애	89	16.8
뇌병변장애	44	8.3
시각장애	30	5.7
청각장애	17	3.2
언어장애	1	0.2
지적장애	266	50.2
자폐성장애	6	1.1
정신장애	44	8.3
신장장애	5	0.9
심장장애	0	0.0
호흡기장애	0	0.0
뇌전증장애	6	1.1
미등록	22	4.2
<b>계</b>	<b>530</b>	<b>100.0</b>







# 3

## 장애인학대 사례판정 및 지원

---

1. 학대조사
2. 사례판정
3. 상담 및 지원
4. 사례종결



## 제3장

# 장애인학대 사례판정 및 지원

## 1. 학대조사

### 가. 전체 학대조사

장애인학대조사란 신고접수된 사례의 피해장애인에게 장애인학대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를 말한다. 조사 시에는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 등 관련자에 대해 면담하고, 증거와 피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며, 필요시 피해장애인에 대해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모든 학대의심사례는 학대조사가 원칙이나 피해장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거나, 이미 경찰 또는 유관전문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완료되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추가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 등 조사를 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 조사실시율은 100.0%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2,969건에 대해 2,889건을 조사했으며, 조사 실시율은 97.3%로 나타났다. 학대조사 횟수는 6,277회로 사례별 평균 2.2회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전체 학대조사

(단위: 건, %, 회)

학대의심사례	학대조사	학대조사실시율	학대조사 횟수 <sup>1)</sup>	사례별 조사 횟수
2,969	2,889	97.3	6,277	2.2

1) 2020년부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학대조사 건수 외 조사횟수도 집계하고 있다. 조사일자, 조사장소, 조사방법이 동일한 경우 1회의 조사로 보며, 조사원, 조사장소, 조사방법이 다를 경우 각 1회의 조사로 집계한다. 1회 조사에 조사대상이 1명 이상이라도 조사는 1회로 집계한다.

## 나.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 실시율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북부, 충북, 충남이 각각 100.0%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산 99.5%, 전북 99.0%, 제주 98.8%, 경북 98.5% 순으로 높았다. 전남 71.2%, 충북북부 87.0%, 경남 95.7%, 인천 97.1% 순으로 학대조사 실시율이 낮았다.

[표 3-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

(단위: 건, %, 회)

구분	학대의심사례	학대조사건수	학대조사실시율	학대조사횟수	
서울	195	195	100.0	380	
부산	196	195	99.5	321	
대구	124	124	100.0	408	
인천	105	102	97.1	283	
광주	85	85	100.0	341	
대전	126	126	100.0	217	
울산	124	124	100.0	385	
세종	74	74	100.0	291	
경기	경기남부	450	442	98.2	913
	경기북부	318	318	100.0	503
	소계	768	760	99.0	1,416
강원	109	106	97.2	237	
충북	충북	163	163	100.0	242
	충북북부	54	47	87.0	62
	소계	217	210	96.8	304
충남	157	157	100.0	330	
전북	103	102	99.0	175	
전남	156	111	71.2	209	
경북	135	133	98.5	390	
경남	209	200	95.7	373	
제주	86	85	98.8	217	
계	2,969	2,889	97.3	6,277	

## 2. 사례판정

### 가. 전체 사례판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조사를 마친 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학대 여부를 판정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사결정 회의인 사례회의에서 장애인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비학대사례 여부를 판정하고, 사례회의에서 판정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판정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사례는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하여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를 말한다. 잠재위험사례는 학대조사 결과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로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를 말한다. 비학대사례는 장애인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말한다. 조사 중인 사례는 학대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사례판정을 하지 않은 사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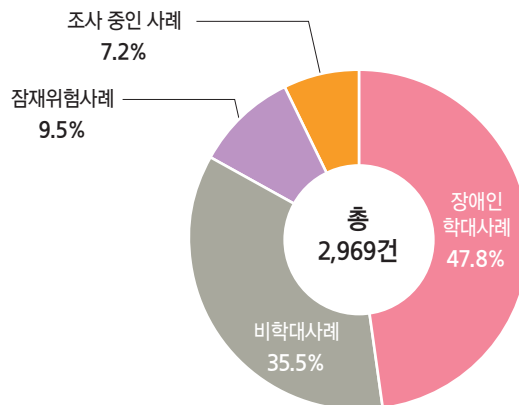
학대의심사례 2,969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18건으로 전체의 47.8%를 차지했다. 비학대사례는 1,054건(35.5%), 잠재위험사례는 282건(9.5%), 조사 중인 사례는 215건(7.2%)이었다. 장애인학대사례는 전년도(1,186건) 대비 1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전체 사례판정 결과

(단위: 건, %)

장애인학대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조사 중인 사례		계	
1,418	47.8	1,054	35.5	282	9.5	215	7.2	2,969	100.0

[그림 3-1] 전체 사례판정 결과



## 나.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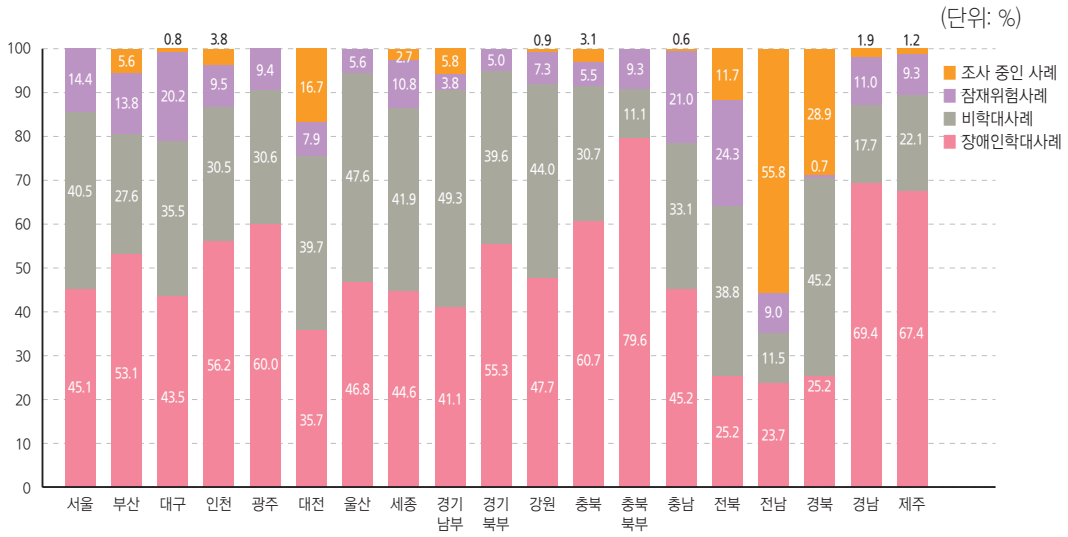
장애인학대사례 판정율은 총북북부(79.6%), 경남(69.4%), 제주(67.4%), 충북(60.7%) 순으로 나타났다. 비학대사례 판정율은 경기남부(49.3%), 울산(47.6%), 경북(45.2%), 강원(44.0%) 등의 순이었으며, 잠재위험사례 판정율은 전북(24.3%), 충남(21.0%), 대구(20.2%), 서울(14.4%) 등의 순이었다.

[표 3-4]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단위: 건, %)

구분	장애인학대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조사 중인 사례		계		
서울	88	45.1	79	40.5	28	14.4	-	-	195	100.0	
부산	104	53.1	54	27.6	27	13.8	11	5.6	196	100.0	
대구	54	43.5	44	35.5	25	20.2	1	0.8	124	100.0	
인천	59	56.2	32	30.5	10	9.5	4	3.8	105	100.0	
광주	51	60.0	26	30.6	8	9.4	-	-	85	100.0	
대전	45	35.7	50	39.7	10	7.9	21	16.7	126	100.0	
울산	58	46.8	59	47.6	7	5.6	-	-	124	100.0	
세종	33	44.6	31	41.9	8	10.8	2	2.7	74	100.0	
경기	경기남부	185	41.1	222	49.3	17	3.8	26	5.8	450	100.0
	경기북부	176	55.3	126	39.6	16	5.0	-	-	318	100.0
	소계	361	47.0	348	45.3	33	4.3	26	3.4	768	100.0
강원	52	47.7	48	44.0	8	7.3	1	0.9	109	100.0	
충북	충북	99	60.7	50	30.7	9	5.5	5	3.1	163	100.0
	충북북부	43	79.6	6	11.1	5	9.3	-	-	54	100.0
	소계	142	65.4	56	25.8	14	6.5	5	2.3	217	100.0
충남	71	45.2	52	33.1	33	21.0	1	0.6	157	100.0	
전북	26	25.2	40	38.8	25	24.3	12	11.7	103	100.0	
전남	37	23.7	18	11.5	14	9.0	87	55.8	156	100.0	
경북	34	25.2	61	45.2	1	0.7	39	28.9	135	100.0	
경남	145	69.4	37	17.7	23	11.0	4	1.9	209	100.0	
제주	58	67.4	19	22.1	8	9.3	1	1.2	86	100.0	
계	1,418	47.8	1,054	35.5	282	9.5	215	7.2	2,969	100.0	

[그림 3-2]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결과



### 3. 상담 및 지원

#### 가. 전체 상담 및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한다. 비학대사례인 경우에도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부 개입하여 당사자를 지원한다.

2023년 신규로 접수된 학대의심사례(이하 2023년 사례)와 2023년 이전에 접수되어 2023년 진행 중인 학대의심사례(이하 2023년 이전 사례)를 포함하여, 한 해 동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실시한 상담 및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 1) 2023년에 실시한 상담 및 지원

2023년 사례(2,969건)와 2023년 이전사례(719건) 총 3,688건에 대해 30,340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고, 사례별 평균 8.2회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전년도(22,726회) 대비 상담 및 지원 횟수는 7,614건, 사례별 평균 상담 및 지원 횟수는 1.4회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2023년 이전 사례(719건)는 2023년에 7,308회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으며 사례별 평균 10.2회의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2023년 사례(2,969건)는 23,032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고 사례별 평균 7.8회의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표 3-5] 2023년에 실시한 상담 및 지원

(단위: 건, 회)

구분	학대의심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
2023년 이전	719	7,308	10.2
2023년	2,969	23,032	7.8
계	3,688	30,340	8.2

## 나.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2023년 신고된 학대의심사례는 총 2,969건으로 30,340회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2023년 상담 및 지원횟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 7,961회, 서울 2,347회, 경남 1,977회, 충북 1,965회 등의 순이었다.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는 제주 15.3회, 광주 13.3회, 강원 11.1회, 울산 10.3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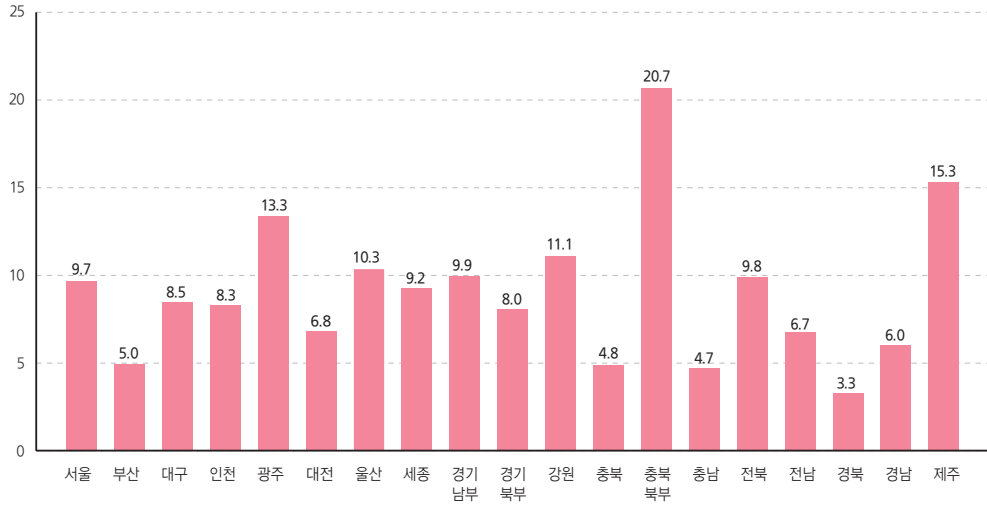
[표 3-6]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단위: 건, 회)

구분	2023년 이전		2023년		계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의심 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서울	47	615	195	1,732	242	2,347	9.7	
부산	51	324	196	906	247	1,230	5.0	
대구	31	269	124	1,055	155	1,324	8.5	
인천	26	290	105	796	131	1,086	8.3	
광주	19	203	85	1,182	104	1,385	13.3	
대전	22	517	126	485	148	1,002	6.8	
울산	22	165	124	1,341	146	1,506	10.3	
세종	21	379	74	499	95	878	9.2	
경기	경기남부	67	1,034	450	4,070	517	5,104	9.9
	경기북부	40	526	318	2,331	358	2,857	8.0
	소계	107	1,560	768	6,401	875	7,961	9.1
강원	54	639	109	1,175	163	1,814	11.1	
충북	충북	12	92	163	755	175	847	4.8
	충북북부	0	0	54	1,118	54	1,118	20.7
	소계	12	92	217	1,873	229	1,965	8.6
충남	46	340	157	623	203	963	4.7	
전북	23	139	103	1,101	126	1,240	9.8	
전남	70	520	156	984	226	1,504	6.7	
경북	26	140	135	385	161	525	3.3	
경남	121	751	209	1,226	330	1,977	6.0	
제주	21	365	86	1,268	107	1,633	15.3	
계	719	7,308	2,969	23,032	3,688	30,340	8.2	

[그림 3-3] 지역·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단위: 회)



## 다. 지역·기관별 상담원 1명당 평균 상담 및 지원

2023년 한 해 동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 93명은 총 3,688건의 사례에 대해 30,340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다. 상담원 1명은 한 해 평균 39.7건의 사례를 담당하였고 326.2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다. 전년도(상담원 1명 평균 44.3건, 299.0회)와 비교했을 때 상담원 1명이 담당하는 사례 건수는 평균 4.6건 감소하였고, 상담 및 지원 횟수는 27.2회 증가하였다.

지역·기관별로 보면 부산은 상담원 1명이 평균 82.3건의 사례를 담당하여 전국 평균보다 약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경남 55.0건, 경기 54.7건, 경북 53.7건, 충남 50.8건 등의 순이었다. 상담원 1명이 한 해 동안 실시한 상담 및 지원 횟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497.6회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전국 평균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세종 439.0회, 부산 410.0회, 제주 408.3회, 강원 362.8회 등의 순으로 많았다.

[표 3-7] 지역·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상담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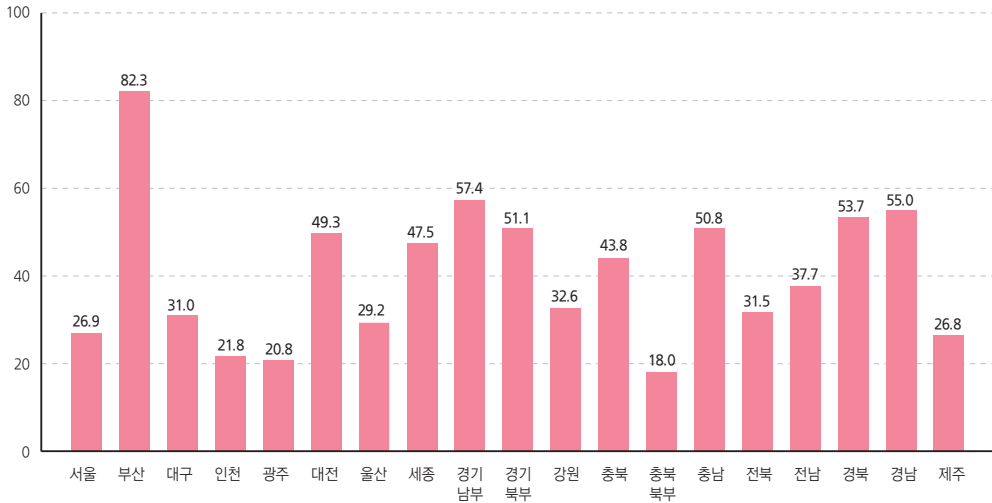
(단위: 명, 건, 회)

구분	상담원 <sup>2)</sup>	학대의심 사례	상담원 1명 평균 담당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상담원 1명 평균 상담 및 지원 횟수	
서울	9	242	26.9	2,347	260.8	
부산	3	247	82.3	1,230	410.0	
대구	5	155	31.0	1,324	264.8	
인천	6	131	21.8	1,086	181.0	
광주	5	104	20.8	1,385	277.0	
대전	3	148	49.3	1,002	334.0	
울산	5	146	29.2	1,506	301.2	
세종	2	95	47.5	878	439.0	
경기	경기남부	9	517	57.4	5,104	567.1
	경기북부	7	358	51.1	2,857	408.1
	소계	16	875	54.7	7,961	497.6
강원	5	163	32.6	1,814	362.8	
충북	충북	4	175	43.8	847	211.8
	충북북부	3	54	18.0	1,118	372.7
	소계	7	229	32.7	1,965	280.7
충남	4	203	50.8	963	240.8	
전북	4	126	31.5	1,240	310.0	
전남	6	226	37.7	1,504	250.7	
경북	3	161	53.7	525	175.0	
경남	6	330	55.0	1,977	329.5	
제주	4	107	26.8	1,633	408.3	
계	93	3,688	39.7	30,340	326.2	

2) 2023년 12월말 기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은 93명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원은 5명으로 이 중 관장 및 운영지원 직원을 제외한 3명이 상담원으로서 사례지원 업무를 담당함. 지역별로 상담원 수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국고보조금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예산을 지원하여 상담원을 추가로 채용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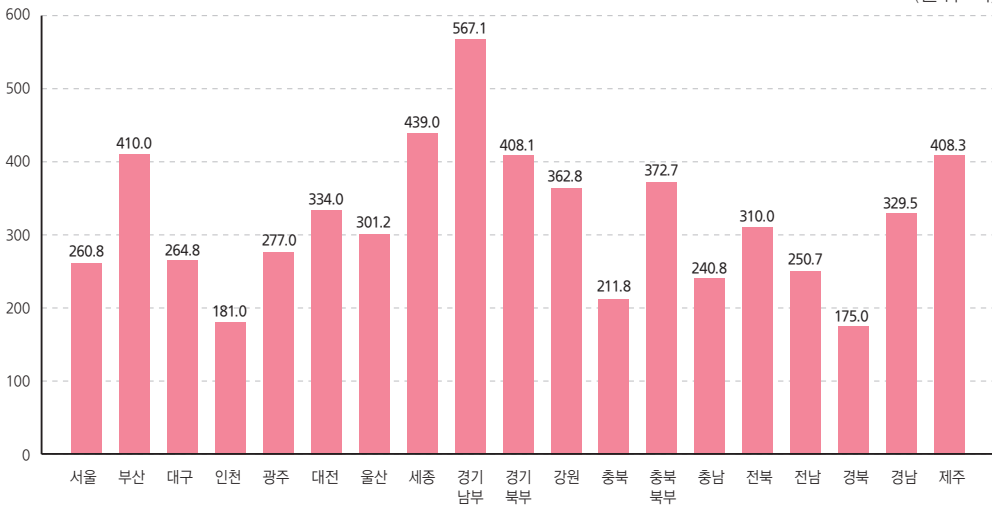
[그림 3-4] 지역·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담당사례

(단위: 건)



[그림 3-5] 지역·기관별 상담원 1명 평균 상담 및 지원

(단위: 회)



## 4. 사례종결

학대의심사례 2,969건 중 2,168건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종결되었다.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은 73.0%로 전년도 (65.1%)와 비교하면 7.9%p 높은 수치이다.

[표 3-8] 사례종결

(단위: 건, %)

학대의심사례	종결사례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
2,969	2,168	73.0



# 4

## 장애인학대 사례분석

---

1. 인구사회학적 요인
2. 장애인학대 양상
3. 장애인학대 유형
4. 응급조치
5.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6. 사례종결
7. 사후 모니터링



## 제4장

## 장애인학대 사례분석

## 1. 인구사회학적 요인

## 가. 피해장애인

학대의심사례 2,969건 중 학대로 판정된 1,418건에 대한 피해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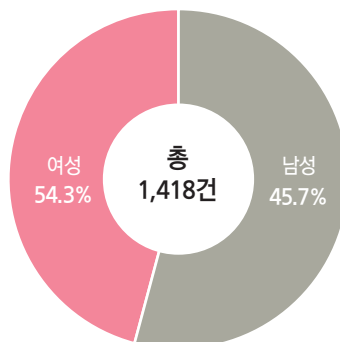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의 성별은 여성이 54.3%(770명), 남성이 45.7%(648명)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여성 피해장애인(611명)은 26.0% 증가하였다.

[표 4-1] 피해장애인 성별

(단위: 명, %)

남성		여성		계	
648	45.7	770	54.3	1,418	100.0

[그림 4-1] 피해장애인 성별



## 2)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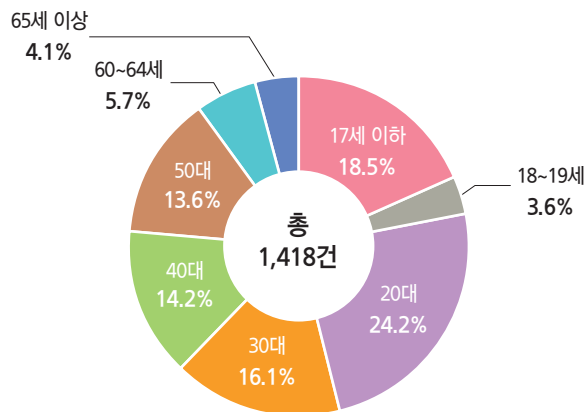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20대가 24.2%(34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17세 이하 18.5%(263명), 30대 16.1%(228명), 40대 14.2%(201명) 등의 순이었다. 전년도 대비 20대(307명)는 11.7%, 17세 이하(249명)는 5.6% 증가하였다.

[표 4-2] 피해장애인 연령

(단위: 명, %)

연령	명수	비율
17세 이하	263	18.5
18~19세	51	3.6
20대(20~29세)	343	24.2
30대(30~39세)	228	16.1
40대(40~49세)	201	14.2
50대(50~59세)	193	13.6
60~64세	81	5.7
65세 이상	58	4.1
계	1,418	100.0

[그림 4-2] 피해장애인 연령



### 3) 장애유형 및 정도

피해자가 미등록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등록 장애인과 동일하게 신고접수와 학대조사를 실시한다. 미등록 피해장애인에게 장애인 등록이 필요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등록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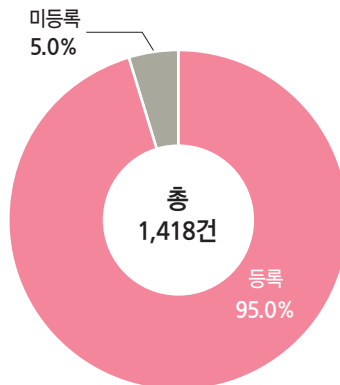
학대사례 1,418건의 사례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95.0%(1,346건)이며, 전년도 대비 장애인 등록 여부(1,132명)는 19.0% 증가하였다.

[표 4-3] 장애인 등록 여부

(단위: 건, %)

등록	미등록	계
1,346	72	1,418
95.0	5.0	100.0

[그림 4-3] 장애인 등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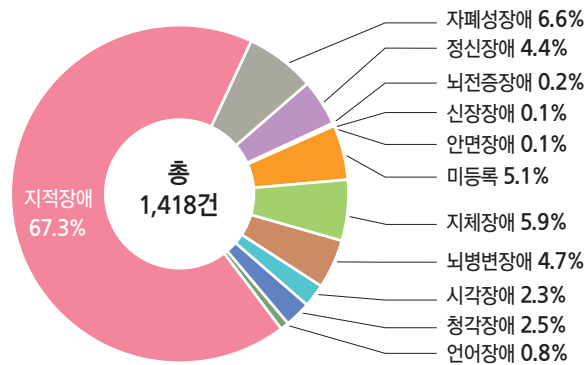
피해자의 장애유형을 보면 신체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235건)보다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1,111건)의 수가 약 4.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지적장애가 67.3%(955건)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장애 6.6%(93건), 지체장애 5.9%(8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정신장애(35건) 80.0%, 지체장애(61건) 37.7%, 자폐성장애(77건) 20.8% 증가하였다.

[표 4-4] 피해장애인 주장애유형<sup>3)</sup>

(단위: 건, %)

장애유형	건수	비율
지체장애	84	5.9
뇌병변장애	66	4.7
시각장애	33	2.3
청각장애	35	2.5
언어장애	11	0.8
지적장애	955	67.3
자폐성장애	93	6.6
정신장애	63	4.4
신장장애	2	0.1
심장장애	-	-
호흡기장애	-	-
간장애	-	-
안면장애	1	0.1
장루·요루장애	-	-
뇌전증장애	3	0.2
미등록	72	5.1
계	1,418	100.0

[그림 4-4] 피해장애인 주장애유형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의 주장애유형과 부장애유형을 모두 확인하며, 본 장에서는 피해장애인의 주장애유형을 기초로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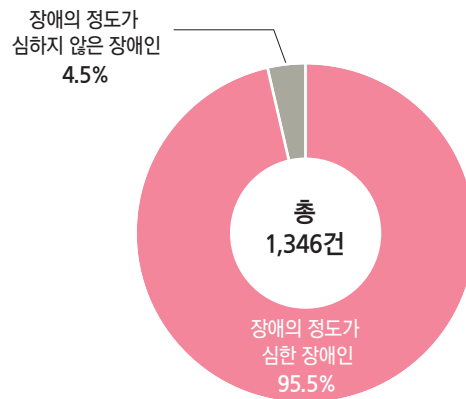
장애인으로 등록된 학대사례 1,346건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95.5%(1,286건)로 나타났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4.5%(60건)로 나타났다.

[표 4-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sup>4)</sup>

(단위: 건, %)

장애정도	건수	비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1,286	95.5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	60	4.5
계	1,346	100.0

[그림 4-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4)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개편되었음. 기존 1~3등급의 장애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4~6등급의 장애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으로 변경되었음

#### 4) 거주형태

피해장애인의 거주형태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재가와 시설로 나뉜다. 시설이라 함은 다수가 집단으로 거주하고, 관리자가 있는 주거형태로 사회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혹은 생활시설, 미신고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가라 함은 시설에서 거주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고 당시 피해장애인이 재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는 81.3%(1,153건)이었고,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는 18.7%(265건)이었다.

[표 4-6] 피해장애인 거주형태

(단위: 건, %)

재가		시설		계	
1,153	81.3	265	18.7	1,418	100.0

####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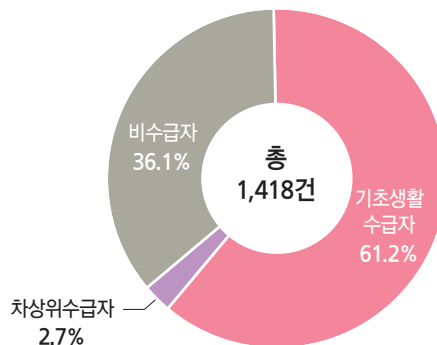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는 61.2%(868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36.1%(512건), 차상위수급자인 경우는 2.7%(38건)이었다.

[표 4-7]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단위: 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비수급자		합계	
868	61.2	38	2.7	512	36.1	1,418	100.0

[그림 4-6]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 나. 학대행위자

장애인학대 행위자는 사례에 따라 한 명 이상일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사례별 행위자가 다수이더라도 주 행위자 한 명에 대한 정보만 통계로 집계하여 피해장애인과 학대행위자의 수는 1,418명으로 동일하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조사를 통해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최대한 파악하고 있으나 학대행위자의 정보(이름, 소재지, 연락처 등)를 알 수 없는 경우 ‘파악 안 됨’으로 분류한다.

###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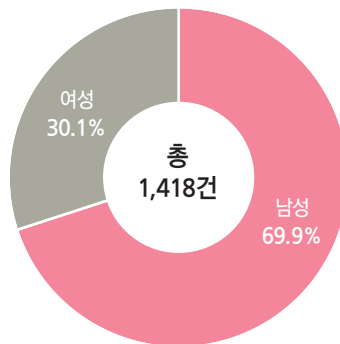
학대행위자는 남성 69.9%(991명), 여성 30.1%(427명)이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약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명, %)

남성		여성		계	
991	69.9	427	30.1	1,418	100.0

[그림 4-7] 학대행위자 성별



## 2)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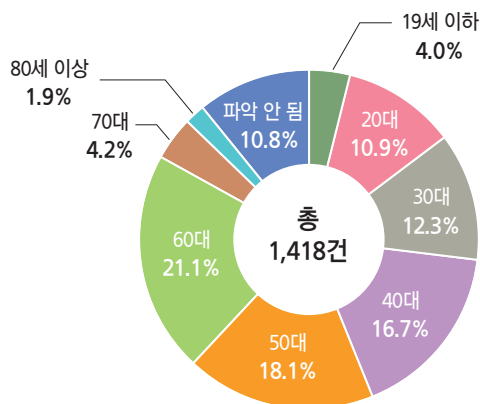
학대행위자의 연령을 보면 60대가 21.1%(299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18.1%(257명), 40대 16.7%(23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60대(208명) 43.8%, 40대(213명) 11.3% 각각 증가하였으며, 50대(264명) 2.7% 감소하였다.

[표 4-9]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명, %)

연령	명수	비율
19세 이하	57	4.0
20대(20~29세)	154	10.9
30대(30~39세)	174	12.3
40대(40~49세)	237	16.7
50대(50~59세)	257	18.1
60대(60~69세)	299	21.1
70대(70~79세)	60	4.2
80세 이상	27	1.9
파악 안 됨	153	10.8
계	1,418	100.0

[그림 4-8] 학대행위자 연령



### 3)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

학대행위자는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가족 및 친인척, 타인,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본인, 파악 안 됨으로 분류된다. 가족 및 친인척에는 배우자, 부(父), 모(母),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그 외 친척이 있다. 타인에는 동거인, 이웃,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이 있다.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명시된 직종의 사람을 말하며,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는 교육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를 말한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에서 '타인'에 의한 학대가 39.9%(566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및 친인척' 35.0%(497건),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2.3%(316건),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2.2%(31건), '파악 안 됨' 0.4%(6건), '본인' 0.1%(2건) 순 이었다.

학대행위자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에 의한 학대가 20.9%(297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 16.5%(234건), 부(父)에 의한 학대 10.1%(143건)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모르는 사람 9.7%(138건), 배우자 7.1%(100건), 모(母) 6.5%(9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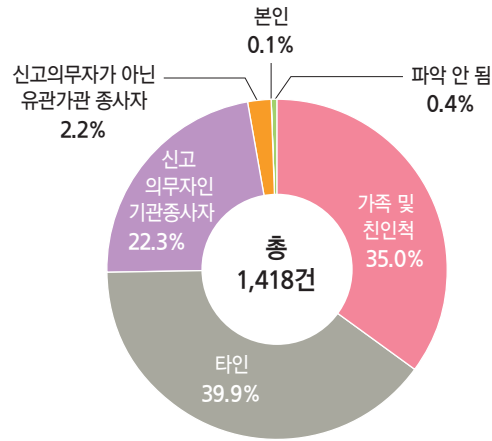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전년도(432건) 대비 15.0% 증가했으며, '타인'에 의한 학대는 전년도(425건) 대비 33.2% 증가,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전년도(304건)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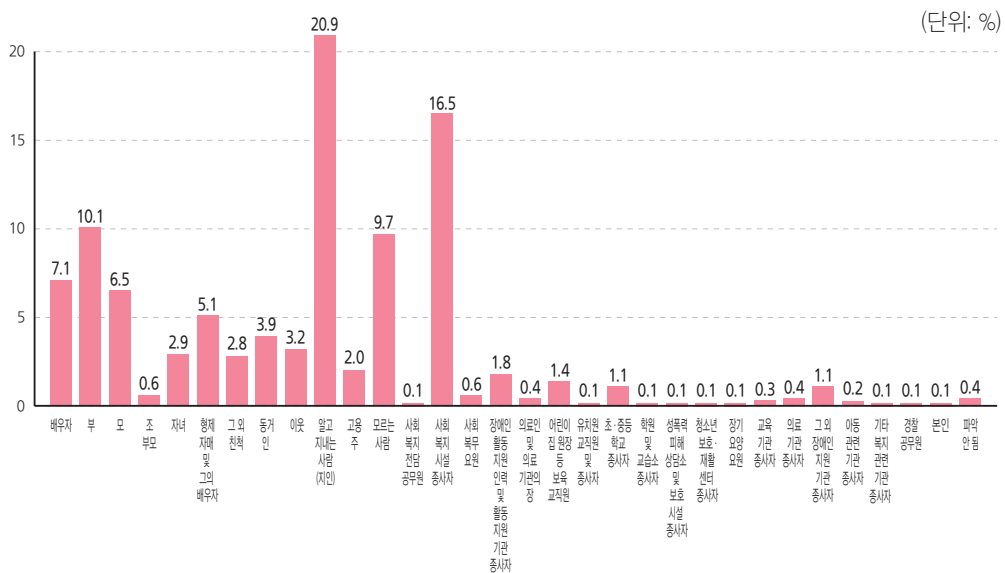
(단위: 건, %)

관계		건수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100	7.1
	부	143	10.1
	모	92	6.5
	조부모	9	0.6
	자녀	41	2.9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72	5.1
	그 외 친척	40	2.8
	소계	497	35.0
타인	동거인	56	3.9
	이웃	46	3.2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297	20.9
	고용주	29	2.0
	모르는 사람	138	9.7
	소계	566	39.9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1	0.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34	16.5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	8	0.6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26	1.8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5	0.4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20	1.4
	유치원 교직원 및 종사자	1	0.1
	초·중등학교 종사자	16	1.1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	0.1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1	0.1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1	0.1
	장기요양요원	2	0.1
	소계	316	22.3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4	0.3
	의료기관 종사자	6	0.4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5	1.1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3	0.2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2	0.1
	경찰공무원	1	0.1
	소계	31	2.2
본인	2	0.1	
파악 안 됨	6	0.4	
계	1,418	100.0	

[그림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가의 관계(대분류)



[그림 4-1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가의 관계(중분류)



4) 피해장애인가의 동거여부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65.0%(922건), 동거하는 경우는 30.2%(428건),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4.8%(68건)로 나타났다.

[표 4-11]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가의 동거여부

(단위: 건, %)

동거		비동거		파악 안 됨		계	
428	30.2	922	65.0	68	4.8	1,418	100.0

## 2. 장애인학대 양상

### 가. 학대 발생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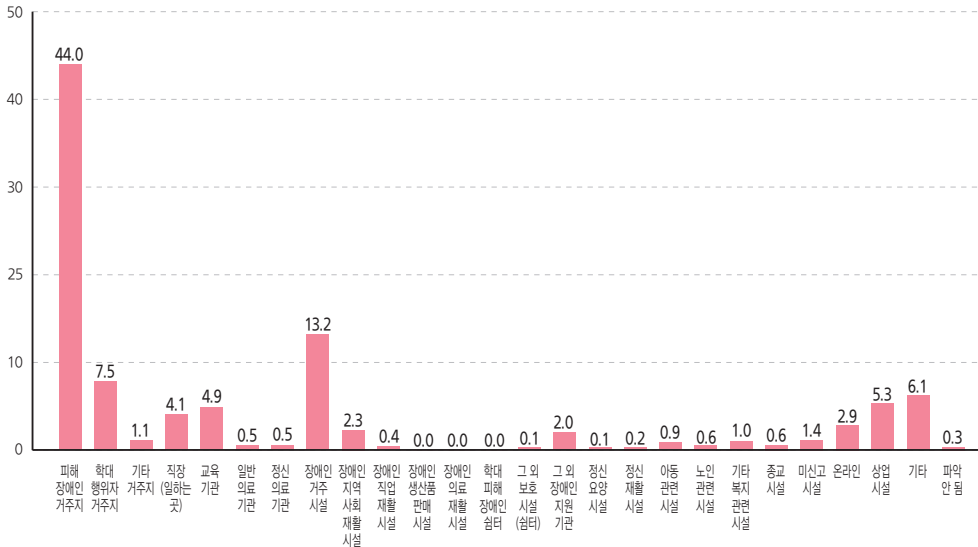
장애인학대 발생장소는 피해내용,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 관계를 고려하여 피해장애인 거주지, 학대행위자 거주지, 기타 거주지, 직장(일하는 곳), 교육기관, 일반 의료기관, 정신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그 외 보호시설(쉼터),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관련시설, 기타 복지관련시설, 종교시설, 미신고시설, 온라인, 상업시설, 기타 등으로 분류한다.

장애인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로 전체 학대사례의 44.0%(624건)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13.2%(187건), 학대행위자의 거주지 7.5%(107건), 기타 6.1%(87건), 상업시설 5.3%(75건), 교육기관 4.9%(69건) 등의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피해장애인의 거주지(486건)는 28.4% 증가한 반면, 장애인거주시설(198건)은 5.6% 감소하였다.

[그림 4-11]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단위: %)



[표 4-12]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

발생장소		건수	비율
피해장애인 거주지		624	44.0
학대행위자 거주지		107	7.5
기타 거주지		15	1.1
직장(일하는 곳)		58	4.1
교육기관		69	4.9
일반 의료기관		7	0.5
정신 의료기관		7	0.5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187	13.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33	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	0.4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학대피해장애인쉼터	-	-
	소계	226	15.9
그 외 보호시설(쉼터)		1	0.1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29	2.0
정신요양시설		2	0.1
정신재활시설		3	0.2
아동관련시설		13	0.9
노인관련시설		8	0.6
기타 복지관련시설		14	1.0
종교시설		8	0.6
미신고시설		20	1.4
온라인		41	2.9
상업시설		75	5.3
기타		87	6.1
파악 안 됨		4	0.3
계		1,418	100.0

## 나. 학대 발생빈도 및 지속기간

장애인학대가 지속되는 기간은 3개월 미만이 45.1%(6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1~3년 미만이 15.7%(222건), 3~6개월 미만이 10.6%(151건)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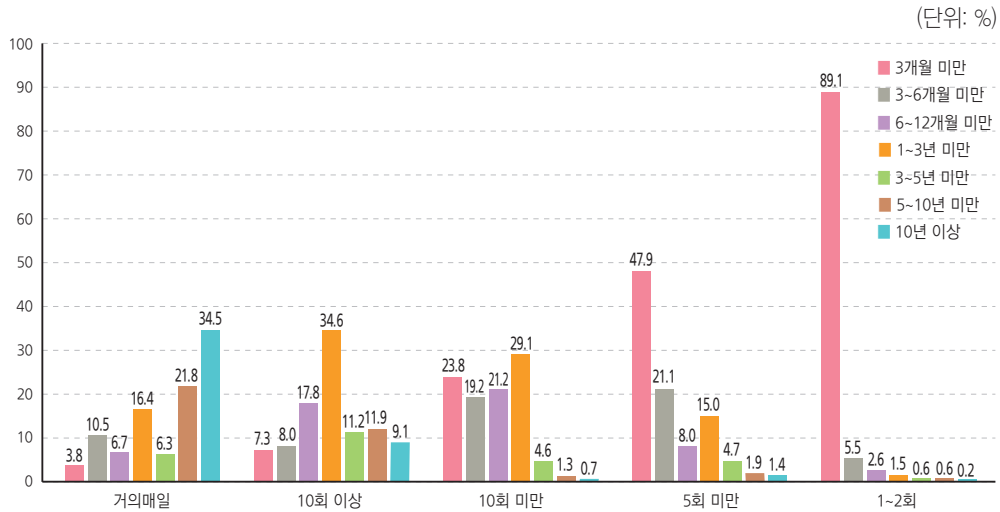
장애인학대의 지속기간과 발생빈도 간의 상관관계를 보며 발생빈도가 1~2회 짧은 경우 학대 지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례가 89.1%(472건)로 나타났다. 반면 거의 매일 학대가 발생하는 사례의 지속기간은 3년 이상인 경우가 62.6%(149건)로 나타났다.

[표 4-13]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단위: 건, %)

구분		발생빈도											
		거의 매일		10회 이상		10회 미만		5회 미만		1~2회		계	
지 속 기 간	3개월 미만	9	3.8	21	7.3	36	23.8	102	47.9	472	89.1	640	45.1
	3~6개월 미만	25	10.5	23	8.0	29	19.2	45	21.1	29	5.5	151	10.6
	6~12개월 미만	16	6.7	51	17.8	32	21.2	17	8.0	14	2.6	130	9.2
	1~3년 미만	39	16.4	99	34.6	44	29.1	32	15.0	8	1.5	222	15.7
	3~5년 미만	15	6.3	32	11.2	7	4.6	10	4.7	3	0.6	67	4.7
	5~10년 미만	52	21.8	34	11.9	2	1.3	4	1.9	3	0.6	95	6.7
	10년 이상	82	34.5	26	9.1	1	0.7	3	1.4	1	0.2	113	8.0
	계	238	100.0	286	100.0	151	100.0	213	100.0	530	100.0	1,418	100.0

[그림 4-12]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 3.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학대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유형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으로 분류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장애인학대 유형 분류 시 피해장애인이 한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대 피해를 경험한 경우를 ‘중복 학대’로 보고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한 장애인학대 유형과 ‘중복 학대’를 포함한 장애인학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봤다.

#### 가. 장애인학대 유형

##### 1)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중복 학대를 하나의 장애인학대 유형으로 구분지어 분석한 결과, 전체 학대사례 1,418건 중 중복 학대가 25.3%(359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23.2%(329건), 신체적 학대 20.5%(291건), 성적 학대 15.2%(216건), 정서적 학대 10.6%(151건), 방임 5.1%(72건)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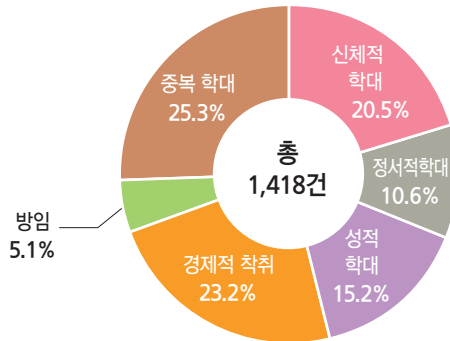
전년도 장애인학대 유형이 신체적 학대(27.5%, 326건), 중복 학대(26.5%, 314건), 경제적 착취 (15.7%, 186건), 성적 학대(13.2%, 156건), 정서적 학대(12.9%, 153건), 방임(4.3%, 51건) 순이었던 것과 달리 2023년 학대사례는 경제적 착취가 76.9%, 성적 학대 38.5% 증가한 반면, 신체적 학대는 10.7%, 정서적 학대는 1.3% 감소하였다.

[표 4-14]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291	20,5
정서적 학대	151	10,6
성적 학대	216	15,2
경제적 착취	329	23,2
유기	-	-
방임	72	5,1
중복 학대	359	25,3
계	1,418	100,0

[그림 4-13]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2)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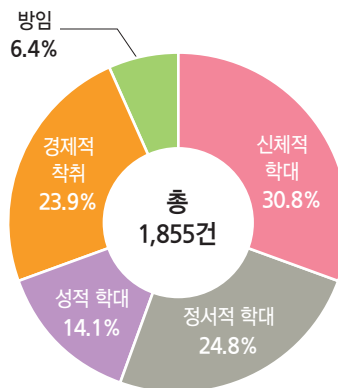
피해장애인이 경험한 학대를 각각의 장애인학대 유형에 포함하여 집계한 결과, 장애인학대 유형은 총 1,855건이었다. 신체적 학대가 30.8%(572건)로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학대 24.8%(460건), 경제적 착취 23.9%(443건), 성적 학대 14.1%(261건), 방임 6.4%(119건)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경제적 착취(273건)가 62.3% 증가하였고, 방임(133건)은 10.5% 감소하였다.

[표 4-15]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572	30.8
정서적 학대	460	24.8
성적 학대	261	14.1
경제적 착취	443	23.9
유기	-	-
방임	119	6.4
계	1,855	100.0

[그림 4-14]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나. 장애인학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1,855건에 대해 장애인학대 유형과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 1)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피해장애인의 성별은 남성이 45.5%, 여성이 54.5%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와 방임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반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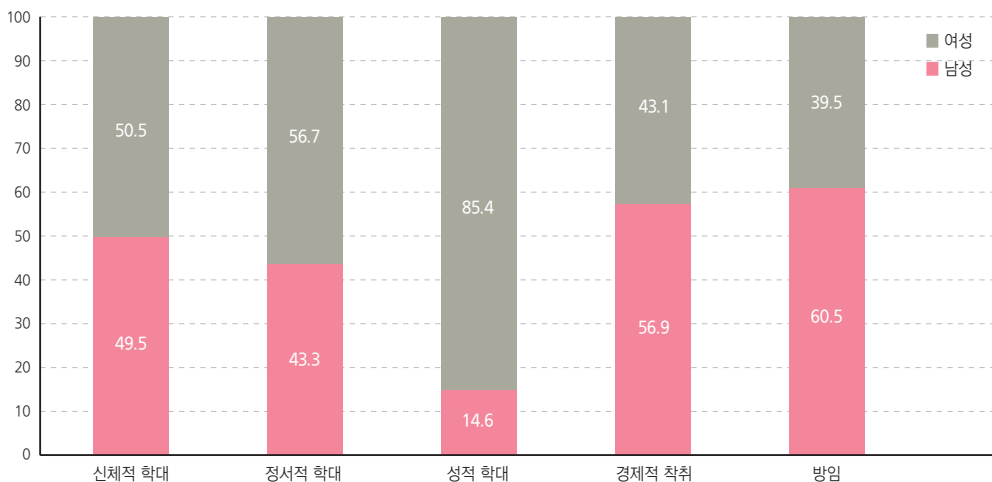
[표 4-16]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남성	283	49.5	199	43.3	38	14.6	252	56.9	-	72	60.5	844	45.5
여성	289	50.5	261	56.7	223	85.4	191	43.1	-	47	39.5	1,011	54.5
계	572	100.0	460	100.0	261	100.0	443	100.0	-	119	100.0	1,855	100.0

[그림 4-15]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단위: %)



2)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학대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을 보면 신체적 학대는 17세 이하가 가장 많았고, 20대, 40대, 30대 등의 순이었다. 정서적 학대 역시 17세 이하가 가장 많았고, 20대, 40대, 30대 등의 순이었다. 성적 학대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17세 이하, 30대, 4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는 20대가 많았으며, 30대, 40대, 50대 등의 순이었다. 방임은 17세 이하, 20대, 30대가 동일한 수치로 많이 나타났다.

[표 4-17]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17세 이하	130	22.7	118	25.7	54	20.7	13	2.9	-	-	22	18.5	337	18.2
18~19세	17	3.0	16	3.5	20	7.7	14	3.2	-	-	4	3.4	71	3.8
20대(20~29세)	122	21.3	96	20.9	75	28.7	136	30.7	-	-	22	18.5	451	24.3
30대(30~39세)	84	14.7	62	13.5	42	16.1	78	17.6	-	-	22	18.5	288	15.5
40대(40~49세)	85	14.9	67	14.6	30	11.5	76	17.2	-	-	14	11.8	272	14.7
50대(50~59세)	81	14.2	61	13.3	25	9.6	76	17.2	-	-	17	14.3	260	14.0
60~64세	31	5.4	25	5.4	6	2.3	36	8.1	-	-	10	8.4	108	5.8
65세 이상	22	3.8	15	3.3	9	3.4	14	3.2	-	-	8	6.7	68	3.7
계	572	100.0	460	100.0	261	100.0	443	100.0	-	-	119	100.0	1,855	100.0

[그림 4-16]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단위: %)



### 3)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을 보면 지적장애의 경우 경제적 착취 27.9%, 신체적 학대 27.8%, 정서적 학대 22.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폐성 장애의 경우 신체적 학대가 49.6%로 가장 높았고, 정서적 학대가 29.5%로 그 뒤를 이었다. 지체장애의 경우 정서적 학대 34.2%, 신체적 학대 33.3%, 경제적 착취 13.5% 등의 순이었으며, 뇌병변 장애의 경우 신체적 학대 38.6%, 정서적 학대 32.5%, 경제적 착취 13.3% 등의 순이었다. 정신장애의 경우 신체적 학대 32.2%, 경제적 착취 27.6%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정서적 학대 31.2%, 신체적 학대 23.7%, 성적학대 22.6% 등의 순이었다.

[표 4-18]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지체장애	37	33.3	38	34.2	12	10.8	15	13.5	-	-	9	8.1	111	100.0
뇌병변장애	32	38.6	27	32.5	5	6.0	11	13.3	-	-	8	9.6	83	100.0
시각장애	19	42.2	14	31.1	3	6.7	5	11.1	-	-	4	8.9	45	100.0
청각장애	17	41.5	5	12.2	9	22.0	7	17.1	-	-	3	7.3	41	100.0
언어장애	4	30.8	6	46.2	-	-	2	15.4	-	-	1	7.7	13	100.0
지적장애	347	27.8	284	22.8	191	15.3	348	27.9	-	-	76	6.1	1,246	100.0
자폐성장애	64	49.6	38	29.5	2	1.6	13	10.1	-	-	12	9.3	129	100.0
정신장애	28	32.2	16	18.4	17	19.5	24	27.6	-	-	2	2.3	87	100.0
신장장애	1	50.0	1	50.0	-	-	-	-	-	-	-	-	2	100.0
심장장애	-	-	-	-	-	-	-	-	-	-	-	-	-	-
호흡기장애	-	-	-	-	-	-	-	-	-	-	-	-	-	-
간장애	-	-	-	-	-	-	-	-	-	-	-	-	-	-
안면장애	-	-	1	100.0	-	-	-	-	-	-	-	-	1	100.0
장루·요루장애	-	-	-	-	-	-	-	-	-	-	-	-	-	-
뇌전증장애	1	25.0	1	25.0	1	25.0	1	25.0	-	-	-	-	4	100.0
미등록	22	23.7	29	31.2	21	22.6	17	18.3	-	-	4	4.3	93	100.0
계	572	30.8	460	24.8	261	14.1	443	23.9	-	-	119	6.4	1,855	100.0

#### 4)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모든 장애인학대 유형에서 피해장애인이 시설보다 재가에 사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재가에 사는 피해장애인의 거주 비율이 시설에 비해 63.6%p 더 높았다.

[표 4-19]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재가	497	86.9	397	86.3	231	88.5	323	72.9	-	-	70	58.8	1,518	81.8
시설	75	13.1	63	13.7	30	11.5	120	27.1	-	-	49	41.2	337	18.2
계	572	100.0	460	100.0	261	100.0	443	100.0	-	-	119	100.0	1,855	100.0

#### 5)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장애인학대 유형별로 학대행위자를 보면 신체적 학대에서는 ‘가족 및 친인척’이 55.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1.0%, ‘타인’ 20.1% 등의 순이었다.

정서적 학대의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43.7%, ‘타인’ 27.4%,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 학대의 행위자는 ‘타인’이 77.8%로 가장 많았고, ‘가족 및 친인척’ 10.3% 등의 순이었다.

경제적 착취의 행위자는 ‘타인’ 53.5%,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9.3%, ‘가족 및 친인척’ 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29.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6.2%, 모르는 사람 11.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방임의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이 46.2%로 가장 많았고,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40.3%, ‘타인’ 10.1% 등의 순이었다.

[표 4-20]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가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81	14.2	57	12.4	5	1.9	8	1.8	-	-	2	1.7	153	8.2
	부	101	17.7	52	11.3	6	2.3	6	1.4	-	-	16	13.4	181	9.8
	모	55	9.6	37	8.0	2	0.8	7	1.6	-	-	20	16.8	121	6.5
	조부모	2	0.3	6	1.3	2	0.8	1	0.2	-	-	-	-	11	0.6
	자녀	29	5.1	20	4.3	-	-	5	1.1	-	-	6	5.0	60	3.2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6	6.3	18	3.9	6	2.3	28	6.3	-	-	8	6.7	96	5.2
	그 외 친척	14	2.4	11	2.4	6	2.3	18	4.1	-	-	3	2.5	52	2.8
	소계	318	55.6	201	43.7	27	10.3	73	16.5	-	-	55	46.2	674	36.3
타인	동거인	27	4.7	14	3.0	6	2.3	19	4.3	-	-	9	7.6	75	4.0
	이웃	9	1.6	17	3.7	22	8.4	11	2.5	-	-	-	-	59	3.2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64	11.2	72	15.7	101	38.7	130	29.3	-	-	3	2.5	370	19.9
	고용주	4	0.7	6	1.3	2	0.8	25	5.6	-	-	-	-	37	2.0
	모르는 사람	11	1.9	17	3.7	72	27.6	52	11.7	-	-	-	-	152	8.2
	소계	115	20.1	126	27.4	203	77.8	237	53.5	-	-	12	10.1	693	37.4
신고 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1	0.2	-	-	-	-	-	-	-	-	1	0.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8	11.9	71	15.4	20	7.7	116	26.2	-	-	42	35.3	317	17.1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	8	1.4	-	-	-	-	-	-	-	-	-	-	8	0.4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6	1.0	7	1.5	1	0.4	13	2.9	-	-	4	3.4	31	1.7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0.3	1	0.2	1	0.4	1	0.2	-	-	1	0.8	6	0.3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19	3.3	17	3.7	-	-	-	-	-	-	1	0.8	37	2.0
	유치원 교직원 및 종사자	-	-	1	0.2	-	-	-	-	-	-	-	-	1	0.1
	초·중등학교 종사자	13	2.3	11	2.4	-	-	-	-	-	-	-	-	24	1.3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	0.2	-	-	-	-	-	-	-	-	-	-	1	0.1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	1	0.2	-	-	-	-	-	-	-	-	1	0.1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1	0.2	1	0.2	-	-	-	-	-	-	-	-	2	0.1
소계	120	21.0	113	24.6	23	8.8	130	29.3	-	-	48	40.3	434	23.4	
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2	0.3	3	0.7	-	-	-	-	-	-	-	-	5	0.3
	의료기관 종사자	6	1.0	3	0.7	-	-	-	-	-	-	-	-	9	0.5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8	1.4	9	2.0	5	1.9	-	-	-	-	1	0.8	23	1.2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2	0.3	3	0.7	-	-	-	-	-	-	-	-	5	0.3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	1	0.2	-	-	-	-	-	-	1	0.8	2	0.1
	경찰공무원	-	-	1	0.2	-	-	-	-	-	-	-	-	1	0.1
	소계	18	3.1	20	4.3	5	1.9	-	-	-	-	2	1.7	45	2.4
본인	-	-	-	-	-	-	-	-	-	-	2	1.7	2	0.1	
파악 안 됨	1	0.2	-	-	3	1.1	3	0.7	-	-	-	-	7	0.4	
계	572	100.0	460	100.0	261	100.0	443	100.0	-	-	119	100.0	1,855	100.0	

## 다.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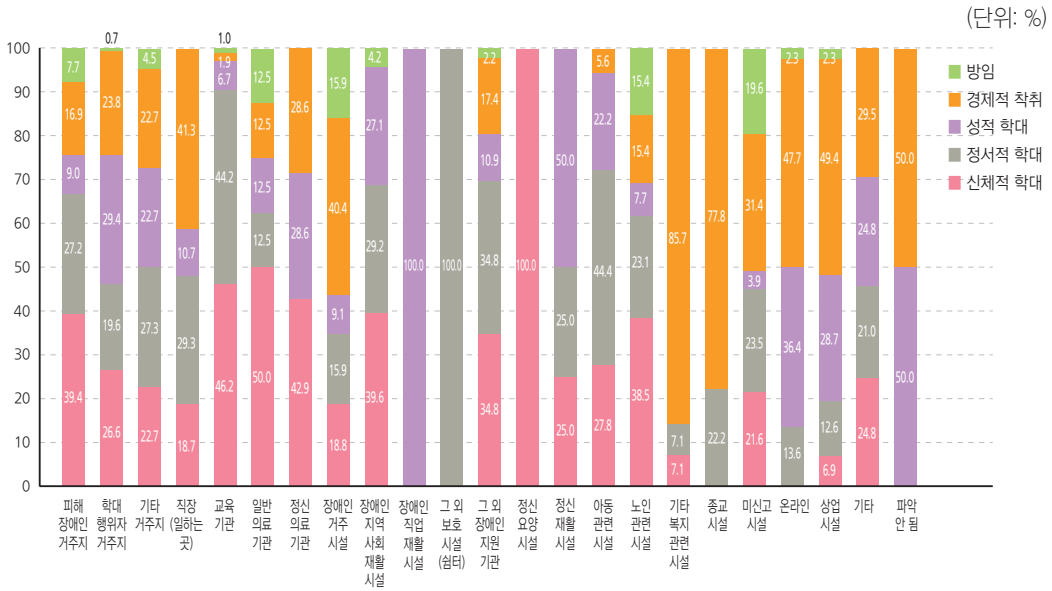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을 보면 피해장애인의 거주지에서는 신체적 학대 39.4%, 정서적 학대 27.2%, 경제적 착취 16.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경제적 착취가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적 학대 18.8%, 정서적 학대 15.9%, 방임 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거주지에서는 성적 학대 29.4%, 신체적 학대 26.6%, 경제적 착취 23.8% 등의 순이었으며, 교육기관의 경우 신체적 학대 46.2%, 정서적 학대 44.2%, 성적 학대 6.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업시설에서는 경제적 착취가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적 학대 28.7%, 정서적 학대 12.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1]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피해장애인 거주지	329	39.4	227	27.2	75	9.0	141	16.9	-	-	64	7.7	836	100.0	
학대행위자 거주지	38	26.6	28	19.6	42	29.4	34	23.8	-	-	1	0.7	143	100.0	
기타 거주지	5	22.7	6	27.3	5	22.7	5	22.7	-	-	1	4.5	22	100.0	
직장(일하는 곳)	14	18.7	22	29.3	8	10.7	31	41.3	-	-	-	-	75	100.0	
교육기관	48	46.2	46	44.2	7	6.7	2	1.9	-	-	1	1.0	104	100.0	
일반 의료기관	4	50.0	1	12.5	1	12.5	1	12.5	-	-	1	12.5	8	100.0	
정신 의료기관	3	42.9	-	-	2	28.6	2	28.6	-	-	-	-	7	100.0	
장애인 복지 시설	장애인거주시설	39	18.8	33	15.9	19	9.1	84	40.4	-	-	33	15.9	208	100.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9	39.6	14	29.2	13	27.1	-	-	-	2	4.2	48	10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	-	-	6	100.0	-	-	-	-	-	6	100.0	
	소계	58	22.1	47	17.9	38	14.5	84	32.1	-	-	35	13.4	262	100.0
그 외 보호시설(쉼터)	-	-	1	100.0	-	-	-	-	-	-	-	-	1	100.0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16	34.8	16	34.8	5	10.9	8	17.4	-	-	1	2.2	46	100.0	
정신요양시설	2	100.0	-	-	-	-	-	-	-	-	-	-	2	100.0	
정신재활시설	1	25.0	1	25.0	2	50.0	-	-	-	-	-	-	4	100.0	
아동관련시설	5	27.8	8	44.4	4	22.2	1	5.6	-	-	-	-	18	100.0	
노인관련시설	5	38.5	3	23.1	1	7.7	2	15.4	-	-	2	15.4	13	100.0	
기타 복지관련시설	1	7.1	1	7.1	-	-	12	85.7	-	-	-	-	14	100.0	
종교시설	-	-	2	22.2	-	-	7	77.8	-	-	-	-	9	100.0	
미신고시설	11	21.6	12	23.5	2	3.9	16	31.4	-	-	10	19.6	51	100.0	
온라인	-	-	6	13.6	16	36.4	21	47.7	-	-	1	2.3	44	100.0	
상업시설	6	6.9	11	12.6	25	28.7	43	49.4	-	-	2	2.3	87	100.0	
기타	26	24.8	22	21.0	26	24.8	31	29.5	-	-	-	-	105	100.0	
파악 안 됨	-	-	-	-	2	50.0	2	50.0	-	-	-	-	4	100.0	
계	572	30.8	460	24.8	261	14.1	443	23.9	-	-	119	6.4	1,855	100.0	

[그림 4-17]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 라.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전체 학대사례 1,418건의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을 보면 피해장애인 거주지에서는 ‘가족 및 친인척’이 70.4%로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부(父) 20.2%, 배우자 14.9%, 모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거주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88.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학대행위자의 거주지의 경우 ‘타인’ 65.4%로 가장 높았고 세부적으로는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26.2%, 모르는 사람 17.8%, 동거인 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업시설의 경우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50.7%, 모르는 사람 37.3% 등의 순이었으며, 교육기관의 경우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37.7%,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2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2]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피해 장애인 거주지		학대 행위자 거주지		기타 거주지		직장 (일하는 곳)		교육기관		일반 의료기관		정신 의료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 외 보호시설 (쉼터)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93	14.9	4	3.7	1	6.7	-	-	-	-	1	14.3	-	-	-	-	-	-	-	-	-	-
	부	126	20.2	10	9.3	-	-	-	-	-	-	-	-	-	-	-	-	-	-	-	-	-	-
	모	81	13.0	6	5.6	-	-	-	-	-	-	1	14.3	-	-	-	-	-	-	-	-	-	-
	조부모	8	1.3	1	0.9	-	-	-	-	-	-	-	-	-	-	-	-	-	-	-	-	-	-
	자녀	39	6.3	1	0.9	-	-	1	1.7	-	-	-	-	-	-	-	-	-	-	-	-	-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67	10.7	4	3.7	-	-	-	-	-	-	-	-	-	-	-	-	-	-	-	-	-	-
	그 외 친척	25	4.0	8	7.5	-	-	1	1.7	-	-	-	1	14.3	-	-	-	-	-	-	-	-	-
소계	439	70.4	34	31.8	1	6.7	2	3.4	-	-	2	28.6	1	14.3	-	-	-	-	-	-	-	-	
타인	동거인	26	4.2	14	13.1	-	-	-	-	-	-	-	-	-	-	9	4.8	-	-	-	-	-	-
	이웃	33	5.3	7	6.5	2	13.3	2	3.4	-	-	-	-	-	-	-	-	-	-	-	-	-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73	11.7	28	26.2	8	53.3	22	37.9	26	37.7	1	14.3	1	14.3	5	2.7	9	27.3	6	100.0	-	-
	고용주	1	0.2	2	1.9	-	-	24	41.4	-	-	-	-	-	-	-	-	-	-	-	-	-	-
	모르는 사람	29	4.6	19	17.8	3	20.0	1	1.7	-	-	-	1	14.3	3	1.6	1	3.0	-	-	-	-	-
	소계	162	26.0	70	65.4	13	86.7	49	84.5	26	37.7	1	14.3	2	28.6	17	9.1	10	30.3	6	100.0	-	-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	0.2	2	1.9	-	-	1	1.7	-	-	-	-	-	-	166	88.8	17	51.5	-	-	-	-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	1	0.2	-	-	-	-	-	-	2	2.9	-	-	-	-	3	1.6	2	6.1	-	-	-	-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16	2.6	-	-	1	6.7	-	-	1	1.4	-	-	-	1	0.5	-	-	-	-	-	-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	-	-	-	-	-	-	-	3	42.9	2	28.6	-	-	-	-	-	-	-	-	-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	-	-	-	-	-	-	-	20	29.0	-	-	-	-	-	-	-	-	-	-	-	-
	유치원 교직원 및 종사자	-	-	-	-	-	-	-	-	1	1.4	-	-	-	-	-	-	-	-	-	-	-	-
	초·중등학교 종사자	-	-	-	-	-	-	-	-	16	23.2	-	-	-	-	-	-	-	-	-	-	-	-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1	100.0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	-	-	-	-	-	-	-	-	-	-	-	-	-	-	1	3.0	-	-	-	-	
장기요양요원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18	2.9	2	1.9	1	6.7	1	1.7	40	58.0	3	42.9	2	28.6	170	90.9	20	60.6	-	-	1	100.0	
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	-	-	-	-	-	-	-	3	4.3	-	-	-	-	-	-	-	-	-	-	-	-
	의료기관 종사자	-	-	-	-	-	3	5.2	-	-	1	14.3	2	28.6	-	-	-	-	-	-	-	-	-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종사자	-	-	-	-	-	3	5.2	-	-	-	-	-	-	-	-	3	9.1	-	-	-	-	-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1	0.2	-	-	-	-	-	-	-	-	-	-	-	-	-	-	-	-	-	-	-	-
	경찰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1	0.2	-	-	-	-	6	10.3	3	4.3	1	14.3	2	28.6	-	-	3	9.1	-	-	-	-
본인	2	0.3	-	-	-	-	-	-	-	-	-	-	-	-	-	-	-	-	-	-	-	-	
파악 안 됨	2	0.3	1	0.9	-	-	-	-	-	-	-	-	-	-	-	-	-	-	-	-	-	-	
계	624	100.0	107	100.0	15	100.0	58	100.0	69	100.0	7	100.0	7	100.0	187	100.0	33	100.0	6	100.0	1	100.0	

구분		그 외 장애인 자원기관		정신요양 시설	정신재활 시설	아동관련 시설	노인관련 시설	기타 복지 관련시설	종교 시설	미신고 시설	온라인	상업시설	기타	파악 안 됨		계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	-	-	-	-	-	-	-	-	-	-	-	1	1.1	-	-	100	7.1							
	부	1	3.4	-	-	-	-	-	-	-	-	-	1	1.3	5	5.7	-	-	143	10.1						
	모	-	-	-	-	-	-	-	-	-	-	-	1	1.3	3	3.4	-	-	92	6.5						
	조부모	-	-	-	-	-	-	-	-	-	-	-	-	-	-	-	-	-	9	0.6						
	자녀	-	-	-	-	-	-	-	-	-	-	-	-	-	-	-	-	-	41	2.9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	-	-	-	-	-	-	-	-	-	-	1	1.1	-	-	72	5.1						
	그 외 친척	-	-	-	-	-	-	-	-	1	12.5	-	-	2	4.9	1	1.3	1	1.1	-	-	40	2.8			
	소계	1	3.4	-	-	-	-	-	-	1	12.5	-	-	2	4.9	3	4.0	11	12.6	-	-	497	35.0			
타인	동거인	-	-	-	-	-	2	25.0	-	-	-	3	15.0	-	-	1	1.3	1	1.1	-	-	121	8.5			
	이웃	-	-	-	-	-	-	-	-	-	-	-	-	2	4.9	-	-	-	-	-	-	79	5.6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4	13.8	2	100.0	3	100.0	2	15.4	-	-	-	6	75.0	5	25.0	16	39.0	38	50.7	39	44.8	3	75.0	297	20.9
	고용주	-	-	-	-	-	-	-	-	-	-	-	-	-	-	-	-	-	-	-	-	-	75	5.3		
	모르는 사람	2	6.9	-	-	-	1	7.7	-	-	-	-	-	-	-	-	21	51.2	28	37.3	28	32.2	1	25.0	336	23.7
	소계	6	20.7	2	100.0	3	100.0	3	23.1	2	25.0	-	-	6	75.0	8	40.0	39	95.1	69	92.0	68	78.2	5	100.0	566
신고 의무자 기관 증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	-	-	-	-	-	-	-	-	-	-	-	-	-	-	-	-	1	1.1	-	-	1	0.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	11	37.9	-	-	-	4	30.8	4	50.0	14	100.0	1	12.5	11	55.0	-	-	-	-	2	2.3	-	-	234	16.5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4	13.8	-	-	-	-	1	12.5	-	-	-	-	-	-	-	1	1.3	1	1.1	-	-	-	-	26	1.8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	-	-	-	-	-	-	-	-	-	-	-	-	-	-	-	-	-	-	-	-	-	5	0.4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	-	-	-	-	-	-	-	-	-	-	-	-	-	-	-	-	-	-	-	-	-	-	20	1.4
	유치원 교직원 및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1	0.1
	초·중등학교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16	1.1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	-	-	1	7.7	-	-	-	-	-	-	-	-	-	-	-	-	-	-	-	-	1	0.1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1	0.1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	-	-	1	0.1
	장기요양요원	-	-	-	-	-	-	-	-	-	-	-	-	-	-	-	-	-	-	-	1	1.1	-	-	2	0.1
	소계	15	51.7	-	-	-	5	38.5	6	75.0	14	100.0	1	12.5	11	55.0	-	-	1	1.3	5	5.7	-	-	316	22.3
	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증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	-	-	-	-	1	7.7	-	-	-	-	-	-	-	-	-	-	-	-	-	-	-	4	0.3
의료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	-	6	0.4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종사자		7	24.1	-	-	-	-	-	-	-	-	-	1	5.0	-	-	-	-	-	-	-	-	-	15	1.1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	-	-	-	-	3	23.1	-	-	-	-	-	-	-	-	1	1.3	-	-	-	-	-	3	0.2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	-	-	-	1	7.7	-	-	-	-	-	-	-	-	-	-	-	-	-	-	-	2	0.1	
경찰공무원		-	-	-	-	-	-	-	-	-	-	-	-	-	-	-	-	-	-	1	1.1	-	-	1	0.1	
소계		7	24.1	-	-	-	5	38.5	-	-	-	-	-	1	5.0	-	-	1	1.3	1	1.1	-	-	31	2.2	
본인	-	-	-	-	-	-	-	-	-	-	-	-	-	-	-	-	-	-	-	-	-	-	-	2	0.1	
파악 안 됨	-	-	-	-	-	-	-	-	-	-	-	-	-	1	1.3	2	2.3	-	-	-	-	-	-	6	0.4	
계	29	100.0	2	100.0	3	100.0	13	100.0	8	100.0	14	100.0	8	100.0	20	100.0	41	100.0	75	100.0	87	100.0	4	100.0	1,418	100.0

## 마.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학대사례 1,855건을 기준으로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을 보면 대체로 3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학대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의 경우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학대가 지속되는 경우가 29.4%를 차지했다.

[표 4-23]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3개월 미만	289	50.5	167	36.3	181	69.3	90	20.3	-	-	28	23.5	755	40.7
3~6개월 미만	73	12.8	71	15.4	22	8.4	44	9.9	-	-	6	5.0	216	11.6
6~12개월 미만	47	8.2	55	12.0	11	4.2	57	12.9	-	-	11	9.2	181	9.8
1~3년 미만	69	12.1	77	16.7	28	10.7	98	22.1	-	-	19	16.0	291	15.7
3~5년 미만	20	3.5	27	5.9	8	3.1	42	9.5	-	-	11	9.2	108	5.8
5~10년 미만	31	5.4	29	6.3	8	3.1	64	14.4	-	-	9	7.6	141	7.6
10년 이상	43	7.5	34	7.4	3	1.1	48	10.8	-	-	35	29.4	163	8.8
계	572	100.0	460	100.0	261	100.0	443	100.0	3	100.0	119	100.0	1,855	100.0

## 4. 응급조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에 따라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피해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인도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기관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의료기관, 그 밖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쉼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외 거주시설, 의료기관 및 기타의 장소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경우 정원 등의 문제로 보호가 어려운 때에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등에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요청한다. 또한 자립홈, 체험홈, 자립지원주택 등 자립을 위한 시설이나 가족 및 친인척의 집과 같은 장소에 보호를 요청한다. 그 외 적절한 주거공간을 찾지 못하면 사회복지시설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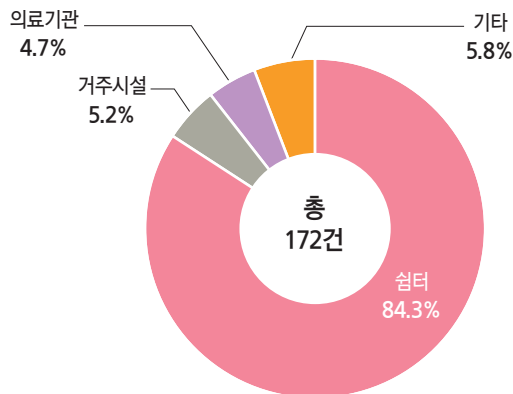
학대사례 1,418건에 대해 172건의 응급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는 전체 학대사례의 12.1%로 전년도(115건, 9.7%) 대비 2.4%p 증가하였다. 응급조치를 실시한 172건을 보면, 쉼터가 84.3%(145건)로 가장 많았고, 거주시설 5.2%(9건), 의료기관 4.7%(8건) 등의 순이었다.

[표 4-24] 응급조치

(단위: 건, %)

쉼터	거주시설	의료기관	기타	계
145	9	8	10	172
84.3	5.2	4.7	5.8	100.0

[그림 4-18] 응급조치



## 5.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 가. 피해장애인 지원 현황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예방교육, 학업, 중재, 진정, 상담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은 피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수 회 지원할 수 있다.

학대사례 1,418건에 대해 17,127회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 중 피해자 및 가족, 관련자 등에 이뤄지는 상담지원이 11,302회(66.0%)로 가장 많았고, 사법지원 2,458회(14.4%), 복지지원 1,322회(7.7%), 피해장애인 지원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지원 745회(4.3%) 등의 순으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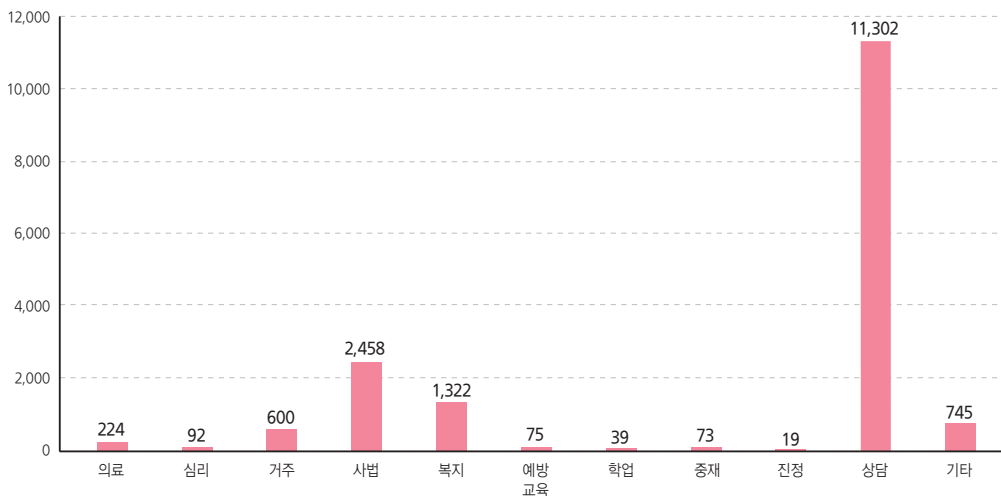
[표 4-25] 피해장애인 지원유형

(단위: 회, %)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예방교육	학업	중재	진정	상담	기타	계
402	92	600	2,458	1,322	75	39	73	19	11,302	745	17,127
2.3	0.5	3.5	14.4	7.7	0.4	0.2	0.4	0.1	66.0	4.3	100.0

[그림 4-19]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회)



## 나. 피해장애인 세부지원 현황

### 1) 의료지원

의료지원은 학대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의 치료, 피해의 회복을 의료적으로 돕는 것으로 응급의료조치, 검진·진단, 통원 및 입원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료지원 402회 중 검진 및 치료동행, 서류 작성 및 제출, 유관기관과의 협의, 의료지원 경과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기타지원이 178회(44.3%) 실시되었으며, 검진·진단 113회(28.1%), 통원치료 75회(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6] 피해장애인 의료지원 유형

(단위: 회, %)

응급의료조치	검진·진단	통원치료	입원치료	기타	계
9	113	75	27	178	402
2.2	28.1	18.7	6.7	44.3	100.0

### 2) 심리지원

심리지원은 피해장애인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하여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심리평가 및 진단,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받게 하는 지원이다. 심리지원은 외부 전문 기관에 연계하거나,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심리지원 92회 중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 43회(46.7%), 기타지원 43회(46.7%)로 가장 많이 지원했고, 심리평가 및 진단지원 6회(6.5%) 실시하였다.

[표 4-27] 피해장애인 심리지원 유형

(단위: 회, %)

심리평가 및 진단	심리상담 및 치료	기타	계
6	43	43	92
6.5	46.7	46.7	100.0

### 3) 거주지원

거주지원은 피해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지원으로 쉼터 입소와 같은 응급보호,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주지원, 장애인거주시설과 같은 복지시설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주지원이 있다. 거주지원은 단기 또는 장기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고 있다.

거주지원 600회 중 거주지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을 말하는 기타지원이 417회(69.5%)로 가장 많았다. 쉼터 등으로 피해장애인을 보호하는 응급보호 126회(21.0%), 단기거주지원(재가) 29회(4.8%), 장기거주지원(재가) 11회(1.8%), 장기거주지원(시설) 10회(1.7%), 단기거주지원(시설) 7회(1.2%) 실시하였다.

[표 4-28] 피해장애인 거주지원 유형

(단위: 회, %)

응급보호	단기거주지원 (재가)	단기거주지원 (시설)	장기거주지원 (재가)	장기거주지원 (시설)	기타	계
126	29	7	11	10	417	600
21.0	4.8	1.2	1.8	1.7	69.5	100.0

### 4) 사법지원

사법지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피해장애인이 입게 된 손해의 회복, 후견인 선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신뢰관계 동석 등 사법적인 절차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고발, 고소대리, 수사의뢰, 법률상담, 절차지원, 소송구조, 후견인 선임, 노동청 진정 등이 있다. 사법지원은 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부에 구성된 법률지원단이나 협력관계에 있는 변호사의 연계 및 자문을 받아 지원하고 있다.

사법지원은 2,458회 실시하였으며, 기타지원 1,636회(66.6%), 절차지원 474회(19.3%), 법률상담 147회(6.0%), 고발 91회(3.7%), 수사의뢰 69건(2.8%) 등의 순으로 실시하였다.

[표 4-29]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단위: 회, %)

고발	고소대리	수사의뢰	법률상담	절차지원	소송구조	후견인 선임	노동청 진정	기타	계
91	24	69	147	474	8	4	5	1,636	2,458
3.7	1.0	2.8	6.0	19.3	0.3	0.2	0.2	66.6	100.0

### 5) 복지지원

복지지원은 장애인등록 절차를 연계하거나 공공 및 민간 영역의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피해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다.

복지지원 1,322회 중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거나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정보탐색, 각종 서류 작성 및 신청, 유관기관과의 협의, 진행경과 등을 모니터링하는 기타지원이 970회(73.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민간복지자원 연계 214회(16.2%), 공공복지자원 연계 114회(8.6%), 장애인 등록 지원 24회(1.8%)를 실시하였다.

[표 4-30] 피해장애인 복지지원 유형

(단위: 회, %)

장애인 등록	공공복지자원	민간복지자원	기타	계
24	114	214	970	1,322
1.8	8.6	16.2	73.4	100.0

### 6) 예방교육지원

예방교육지원은 피해 회복과 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자, 가족, 행위자, 관련자 대상의 학대 예방 교육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외부 자원을 연계하여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다. 예방교육지원 75회 중 행위자 대상 교육 32회(42.7%), 피해자 대상 교육 28회(37.3%), 관련자 대상 교육 12회(16.0%), 가족 대상 교육 3회(4.0%) 실시하였다.

[표 4-31] 피해장애인 예방교육지원 유형

(단위: 회, %)

피해자 대상	가족 대상	행위자 대상	관련자 대상	계
28	3	32	12	75
37.3	4.0	42.7	16.0	100.0

### 7) 학업지원

학업지원은 2022년 신설된 지원 유형으로 피해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협의나 신청, 연계, 전학 신청, 등·하교 지원 등 학업을 위한 지원을 말한다.

학업 지원 39회 중 기타지원은 31회(79.5%), 학업지원은 8회(20.5%) 실시하였다.

[표 4-32] 피해장애인 학업지원 유형

(단위: 회, %)

학업	기타	계
8	31	39
20.5	79.5	100.0

### 8) 중재지원

중재란 피해장애인과 학대행위자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쟁을 조정하여 화해하는 것이다. 중재지원 73회 중 중재를 실시한 횟수는 41회(56.2%), 중재를 위한 동행·중재지원 관련자와의 협의·중재지원 경과 모니터링·정보탐색 등을 지원하는 기타지원은 32회(43.8%)로 나타났다.

[표 4-33] 피해장애인 중재지원 유형

(단위: 회, %)

중재	기타	계
41	32	73
56.2	43.8	100.0

### 9) 진정지원

진정은 피해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기관에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직접 진정하거나 피해장애인의 진정 과정을 돕는 형태로 이뤄진다. 진정지원은 19회 실시했으며, 이 중 진정과정을 협의하거나 진행경과 등을 모니터링 하는 기타지원은 11회(57.9%), 그 외 국가·민간기관인 기타기관 진정 6회(31.6%),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민권익위원회 진정 각각 1회(5.3%)로 나타났다.

[표 4-34] 피해장애인 진정지원 유형

(단위: 회, %)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기타기관	기타	계
1	1	6	11	19
5.3	5.3	31.6	57.9	100.0

### 다.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2023년 학대사례(1,418건)와 2023년 이전 학대사례(586건) 총 2,004건에 대해 23,631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다. 사례별 평균 11.8회의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전년도(17,453회, 사례별 평균 10.2회)와 비교하면 상담 및 지원 횟수는 35.4% 증가하였고, 사례별 평균 상담 및 지원 횟수도 15.7% 증가하였다. 학대의심사례별 평균 상담 및 지원 횟수(8.2회)와 비교하면 학대사례에 실시한 상담 및 지원이 3.6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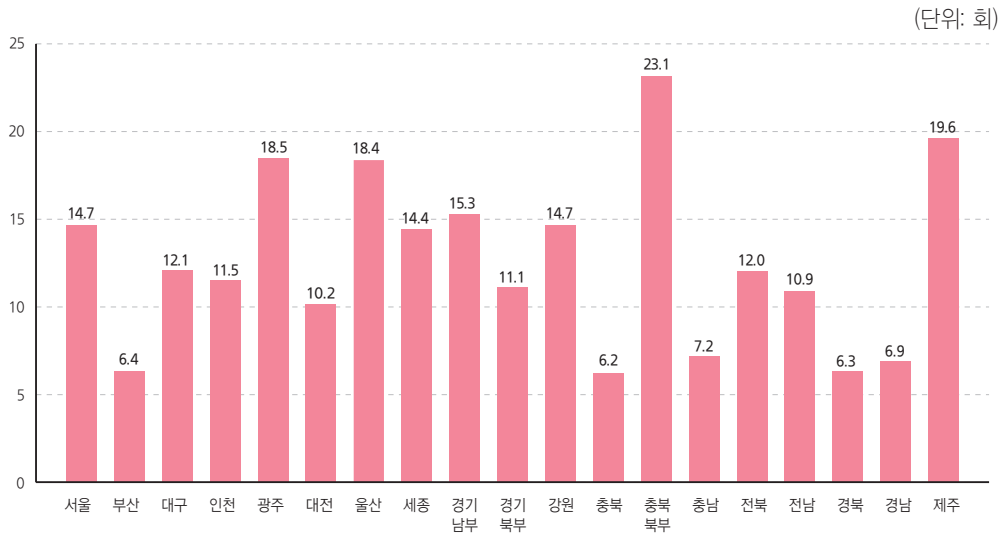
지역 및 기관별로 보면 충북북부가 사례별 평균 23.1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제주 19.6회, 광주 18.5회, 울산 18.4회 등의 순이었다.

[표 4-35] 지역·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단위: 건, 회)

구분	2023년 이전		2023년		계		사례별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서울	41	594	88	1,302	129	1,896	14.7	
부산	31	249	104	617	135	866	6.4	
대구	27	209	54	772	81	981	12.1	
인천	23	259	59	687	82	946	11.5	
광주	14	179	51	1,022	65	1,201	18.5	
대전	44	492	45	418	89	910	10.2	
울산	19	159	58	1,254	77	1,413	18.4	
세종	17	356	33	366	50	722	14.4	
경기	경기남부	51	956	185	2,658	236	3,614	15.3
	경기북부	24	431	176	1,796	200	2,227	11.1
	소계	75	1,387	361	4,454	436	5,841	13.4
강원	51	614	52	899	103	1,513	14.7	
충북	충북	11	81	99	596	110	677	6.2
	충북북부	-	-	43	992	43	992	23.1
	소계	11	81	142	1,588	153	1,669	10.9
충남	39	312	71	482	110	794	7.2	
전북	20	132	26	419	46	551	12.0	
전남	38	315	37	499	75	814	10.9	
경북	13	107	34	189	47	296	6.3	
경남	105	704	145	1,023	250	1,727	6.9	
제주	18	348	58	1,143	76	1,491	19.6	
계	586	6,497	1,418	17,134	2,004	23,631	11.8	

[그림 4-20] 지역·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 6. 사례종결

학대사례 1,418건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결된 사례는 697건으로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은 49.2%로 나타났다.

[표 4-36] 사례종결

(단위: 건, %)

학대사례	종결사례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
1,418	697	49.2

## 7. 사후 모니터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사례에 대한 지원이 완료된 이후 일정 기간 재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사후 모니터링 기간동안 최소 1회 이상 피해장애인과 직접 소통하여 안전과 재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피해장애인이 명확하게 연락 거부 의사를 표하거나, 사망, 수감 등으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 타 지역기관으로 사례가 이관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못할 수 있다.

2023년 종결된 학대사례 697건 중 416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당해 연도 사후 모니터링 실시율은 59.7%로 나타났다. 사후 모니터링 횟수는 1,049회로 사례별 평균 2.5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 사후모니터링

(단위: 건, %, 회)

사후 모니터링 실시 사례	당해 연도 사후 모니터링 실시율	사후 모니터링 실시 횟수
416	59.7	1,049





# 5

## 특성별 장애인학대 사례분석

---

1.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2. 장애아동 학대사례
3. 노동력 착취 사례
4.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5. 재학대사례



## 제5장

# 특성별 장애인학대 사례분석

본 장에서는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 발달장애인 학대, 장애아동 학대, 경제적 착취 중 노동력 착취,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등 장애인이 집단으로 거주 및 이용하는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와 재학대를 분석하였다.

## 1.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2023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2,641,896명<sup>5)</sup>이며, 이 중 발달장애인은 272,524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10.3%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2023년 전체 학대사례의 75.2%(1,067건<sup>6)</sup>)로 전년도 896건보다 19.1% 증가하였다. 발달장애인은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학대 고위험군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5)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2023.12.31 기준

6)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피해장애인의 주장유형 또는 부장애유형이 모두 발달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 주장유형은 지적장애 955건, 자폐성장애 93건이며, 부장애유형은 지적장애 19건이었음

## 가.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지역 및 기관별 현황을 보면 경기남부가 142명(13.3%)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 141명(13.2%), 경남 115명(10.8%), 부산 72명(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경기북부, 경북이 각각 59명, 경기남부 54명 등의 순으로 발달장애인 학대사례가 증가하였다. 발달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91.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 5-1]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단위: 명, %)

구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	54	5.5	7	7.5	61	5.7	
부산	68	7.0	4	4.3	72	6.7	
대구	29	3.0	4	4.3	33	3.1	
인천	42	4.3	4	4.3	46	4.3	
광주	40	4.1	2	2.2	42	3.9	
대전	31	3.2	5	5.4	36	3.4	
울산	30	3.1	6	6.5	36	3.4	
세종	26	2.7	2	2.2	28	2.6	
경기	경기남부	125	12.8	17	18.3	142	13.3
	경기북부	129	13.2	12	12.9	141	13.2
	소계	254	26.1	29	31.2	283	26.5
강원	40	4.1	2	2.2	42	3.9	
충북	충북	68	7.0	2	2.2	70	6.6
	충북북부	28	2.9	2	2.2	30	2.8
	소계	96	9.9	4	4.3	100	9.4
충남	49	5.0	3	3.2	52	4.9	
전북	18	1.8	-	-	18	1.7	
전남	31	3.2	-	-	31	2.9	
경북	23	2.4	1	1.1	24	2.2	
경남	100	10.3	15	16.1	115	10.8	
제주	43	4.4	5	5.4	48	4.5	
계	974	100.0	93	100.0	1,067	100.0	

## 나.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는 신고의무자에 의한 경우가 29.8%(318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경우가 70.2%(749건)이었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신고가 15.9%(170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4.5%(48건), 초·중등학교 종사자 3.7%(39건),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2.1%(22건) 등의 순으로 신고하였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가 21.9%(234건)로 가장 많았고, 본인 11.5%(123건), 타인 8.7%(93건), 경찰공무원 8.2%(87건) 등의 순으로 신고하였다.

학대피해자인 발달장애인 본인이 학대를 인지하여 스스로 신고한 경우는 11.5%(123건)로 전체 학대의심사례의 피해장애인 본인 신고율 17.9%와 비교하면 낮은 수치이다. 학대피해자 10명 중 발달장애인이 7명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본인이 학대 피해를 인식하고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에 대한 이해, 신고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5-2] 발달장애인 학대신고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신고의무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48	4.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70	15.9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22	2.1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0.3
	119구급대의 대원	1	0.1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1	0.1
	유치원 교직원 및 종사자	1	0.1
	초·중등학교 종사자	39	3.7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19	1.8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1	0.1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7	0.7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1	0.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1	0.1
	장기요양요원 및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담당자	1	0.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3	0.3
소계	318	29.8	

구분		건수	비율
비신고의무자	본인	123	11.5
	배우자	9	0.8
	부모	2	0.2
	자녀	63	5.9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1	2.9
	그 외 친척	22	2.1
	일반공무원	20	1.9
	경찰공무원	87	8.2
	공공기관 종사자	2	0.2
	교육기관 종사자	9	0.8
	의료기관 종사자	2	0.2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234	21.9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3	0.3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6	0.6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28	2.6
	타인	93	8.7
	파악 안 됨	15	1.4
	소계	749	70.2
	계	1,067	100.0

## 다.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 1) 성별 및 연령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성별은 여성이 550명(51.5%), 남성이 517명(48.5%)으로 나타났다. 피해 발달장애인의 연령은 20대가 312명(29.2%)으로 가장 많았고, 17세 이하가 204명(19.1%), 30대가 194명(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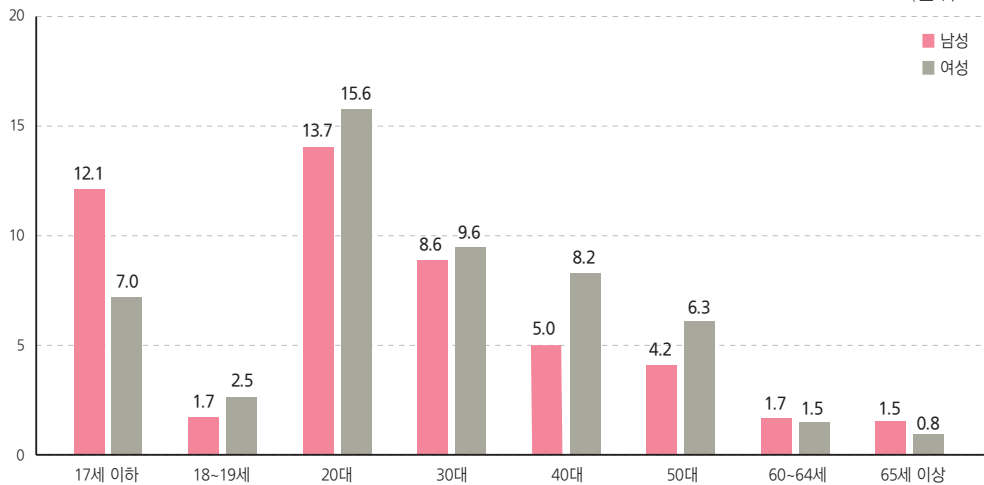
[표 5-3]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명, %)

구분	19세 이하				20대 (20~29세)		30대 (30~39세)		40대 (40~49세)		50대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계	
	17세 이하	18~19세	18	1.7	146	13.7	92	8.6	53	5.0	45	4.2	18	1.7	16	1.5	517	48.5
남성	129	12.1	18	1.7	146	13.7	92	8.6	53	5.0	45	4.2	18	1.7	16	1.5	517	48.5
여성	75	7.0	27	2.5	166	15.6	102	9.6	88	8.2	67	6.3	16	1.5	9	0.8	550	51.5
계	204	19.1	45	4.2	312	29.2	194	18.2	141	13.2	112	10.5	34	3.2	25	2.3	1,067	100.0

[그림 5-1]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



## 2) 거주유형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거주유형은 재가 78.0%(832건), 시설 22.0%(235건)로 나타났다.

[표 5-4]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거주유형

(단위: 건, %)

재가		시설		계	
832	78.0	235	22.0	1,067	100.0

##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63.2%(674건), 비수급자 34.6%(369건), 차상위수급자 2.2%(24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단위: 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비수급자	계
674	24	369	1,067
63.2	2.2	34.6	100.0

## 4) 재학대사례

재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 발달장애인 학대사례가 차지하는 비율은 87.5%(112건)로 나타났다. 전년도 발달장애인 재학대사례(81건)과 비교하면 38.3% 증가하였다.

[표 5-6]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재학대사례

(단위: 건, %)

학대사례	학대사례 중 재학대		재학대사례 중 발달장애인 학대	
1,418	128	9.0	112	87.5

## 라.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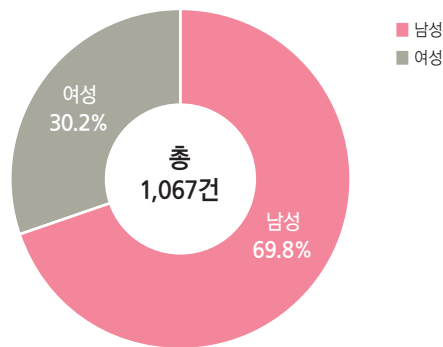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는 남성이 69.8%(745명)로 여성 30.2%(322명)보다 약 2.3배 높게 나타났다.

[표 5-7]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명, %)

남성		여성		계	
745	69.8	322	30.2	1,067	100.0

[그림 5-2]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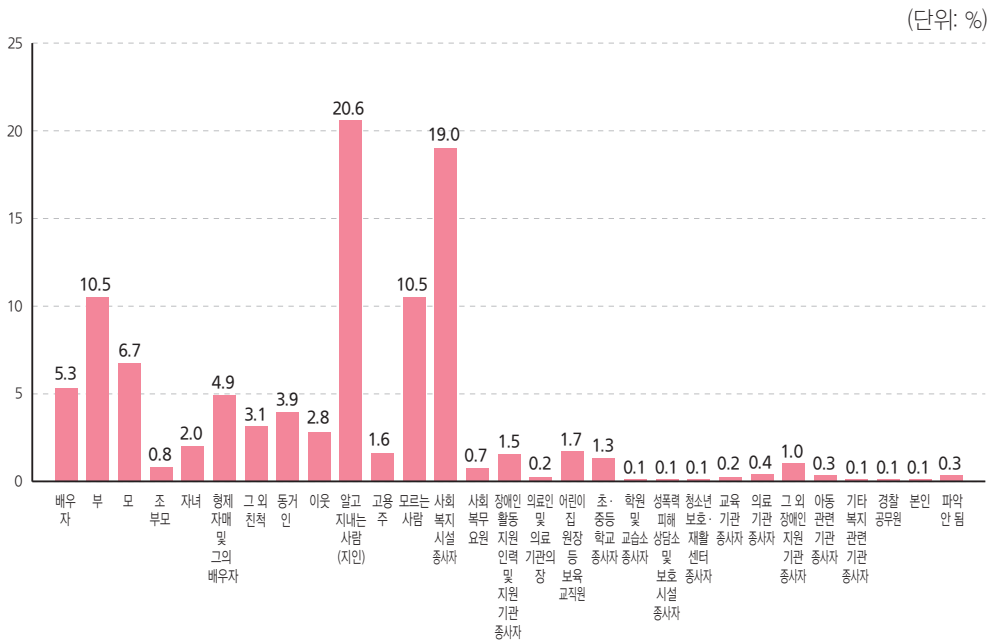


## 2) 피해 발달장애인과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를 보면 타인 39.5%(421건), 가족 및 친인척 33.4%(356건),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4.7%(264건),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2.1%(22건), 파악 안 됨 0.3%(3건), 본인 0.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324건) 9.9%, 타인에 의한 학대(321건) 31.2%가 증가하였다.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이 20.6%(220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0%(203건), 부(父) 10.5%(112건), 모르는 사람 10.5%(112건), 모(母) 6.7%(7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모르는 사람에 의한 학대(74건)는 5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176건)는 15.3% 증가했다.

[그림 5-3]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표 5-8]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가의 관계

(단위: 건, %)

관계		건수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57	5.3
	부	112	10.5
	모	72	6.7
	조부모	9	0.8
	자녀	21	2.0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52	4.9
	그 외 친척	33	3.1
	소계	356	33.4
타인	동거인	42	3.9
	이웃	30	2.8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220	20.6
	고용주	17	1.6
	모르는 사람	112	10.5
	소계	421	39.5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3	19.0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	8	0.7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16	1.5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0.2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18	1.7
	초·중등학교 종사자	14	1.3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	0.1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1	0.1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1	0.1
	소계	264	24.7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2	0.2
	의료기관 종사자	4	0.4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1	1.0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3	0.3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1	0.1
	경찰공무원	1	0.1
	소계	22	2.1
본인	1	0.1	
파악 안 됨	3	0.3	
계	1,0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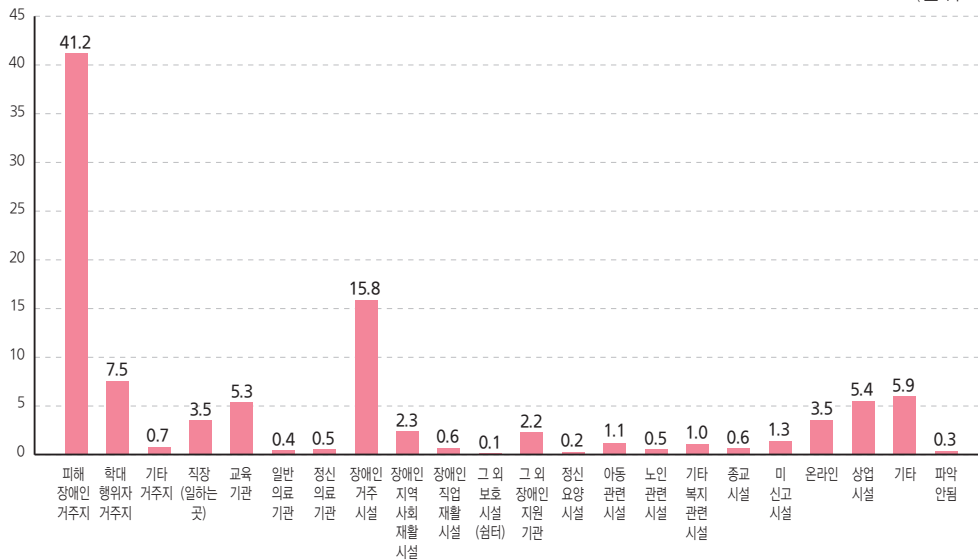
## 마.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현황

### 1) 학대 발생장소

발달장애인 학대는 피해장애인 거주지에서 41.2%(440건)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다음으로 장애인거주시설 15.8%(169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7.5%(80건) 등의 순이었다.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는 전체 학대사례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피해장애인 거주지, 장애인거주시설, 상업시설,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례가 증가하였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한 사례는 감소하였다.

[그림 5-4]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단위: %)



[표 5-9]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

발생장소		건수	비율
피해장애인 거주지		440	41.2
학대행위자 거주지		80	7.5
기타 거주지		8	0.7
직장(일하는 곳)		37	3.5
교육기관		57	5.3
일반 의료기관		4	0.4
정신 의료기관		5	0.5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169	15.8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25	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	0.6
	소계	200	18.7
그 외 보호시설(쉼터)		1	0.1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24	2.2
정신요양시설		2	0.2
아동관련시설		12	1.1
노인관련시설		5	0.5
기타 복지관련시설		11	1.0
종교시설		6	0.6
미신고시설		14	1.3
온라인		37	3.5
상업시설		58	5.4
기타		63	5.9
파악 안 됨		3	0.3
계		1,067	100.0

## 2) 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발달장애인 학대의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인 경우가 44.8%(478건)로 가장 많았고, 1~3년 미만인 경우가 16.9%(180건), 10년 이상의 경우도 7.4%(79건)로 나타났다. 발생빈도는 1~2회가 35.7%(381건), 10회 이상 20.0%(213건), 거의 매일 17.2%(183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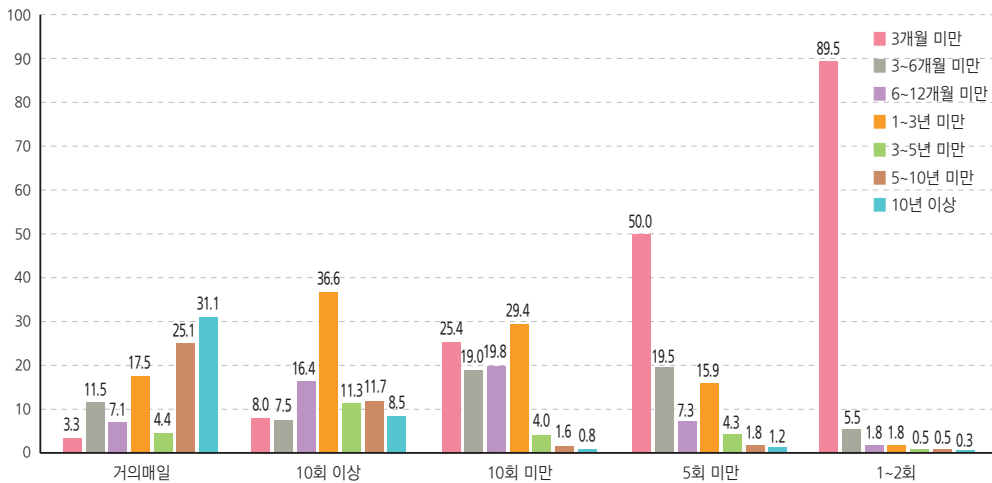
[표 5-10] 발달장애인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단위: 건, %)

구분		발생빈도											
		거의 매일		10회 이상		10회 미만		5회 미만		1~2회		계	
지속기간	3개월 미만	6	3.3	17	8.0	32	25.4	82	50.0	341	89.5	478	44.8
	3~6개월 미만	21	11.5	16	7.5	24	19.0	32	19.5	21	5.5	114	10.7
	6~12개월 미만	13	7.1	35	16.4	25	19.8	12	7.3	7	1.8	92	8.6
	1~3년 미만	32	17.5	78	36.6	37	29.4	26	15.9	7	1.8	180	16.9
	3~5년 미만	8	4.4	24	11.3	5	4.0	7	4.3	2	0.5	46	4.3
	5~10년 미만	46	25.1	25	11.7	2	1.6	3	1.8	2	0.5	78	7.3
	10년 이상	57	31.1	18	8.5	1	0.8	2	1.2	1	0.3	79	7.4
계		183	100.0	213	100.0	126	100.0	164	100.0	381	100.0	1,067	100.0

[그림 5-5] 발달장애인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단위: %)



## 바.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 1)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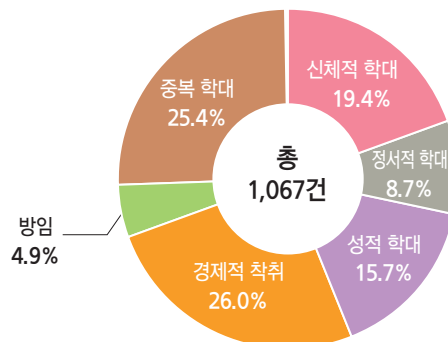
발달장애인의 학대유형은 경제적 착취 26.0%(277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복 학대 25.4%(271건), 신체적 학대가 19.4%(207건), 성적 학대 15.7%(167건), 정서적 학대 8.7%(93건), 방임 4.9%(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발달장애인 학대유형이 신체적 학대 28.1%(252건), 중복 학대 25.2%(226건), 경제적 착취 16.5%(148건), 성적 학대 13.8%(124건), 정서적 학대 11.5%(103건), 방임 4.8%(4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경제적 착취, 성적 학대의 증가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의 감소가 눈에 띈다.

[표 5-11]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207	19.4
정서적 학대	93	8.7
성적 학대	167	15.7
경제적 착취	277	26.0
방임	52	4.9
중복 학대	271	25.4
계	1,067	100.0

[그림 5-6]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2)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1,067건에서 발달장애인이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유형을 각각의 학대유형으로 보면 총 1,399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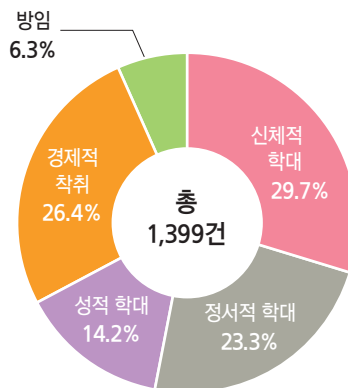
신체적 학대가 29.7%(416건)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 26.4%(370건), 정서적 학대 23.3%(326건), 성적 학대 14.2%(199건), 방임 6.3%(88건) 순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학대유형II에서 경제적 착취가 신체적 학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착취가 신체적 학대 및 다른 유형의 학대와 함께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2]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416	29.7
정서적 학대	326	23.3
성적 학대	199	14.2
경제적 착취	370	26.4
방임	88	6.3
계	1,399	100.0

[그림 5-7]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사. 발달장애인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발달장애인 학대유형에서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1,399건을 기준으로 발달장애인 학대유형과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 1)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은 남성의 경우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피해가 더 많았고, 여성의 경우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피해가 더 많았다.

[표 5-13]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계	
남성	220	52.9	160	49.1	29	14.6	218	58.9	57	64.8	684	48.9
여성	196	47.1	166	50.9	170	85.4	152	41.1	31	35.2	715	51.1
계	416	100.0	326	100.0	199	100.0	370	100.0	88	100.0	1,399	100.0

### 2)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학대유형별로 피해 발달장애인의 연령을 보면, 신체적 학대는 17세 이하, 20대 순으로 높았고 정서적 학대 역시 17세 이하, 20대 순이었으며, 성적 학대는 20대, 17세 이하 순으로 높았다. 경제적 착취는 20대, 30대 순으로 높았으며, 유기는 없었고, 방임은 20대와 3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5-14]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계	
17세 이하	112	26.9	91	27.9	39	19.6	11	3.0	15	17.0	268	19.2
18~19세	15	3.6	14	4.3	19	9.5	13	3.5	3	3.4	64	4.6
20대(20~29세)	108	26.0	87	26.7	64	32.2	130	35.1	19	21.6	408	29.2
30대(30~39세)	66	15.9	45	13.8	38	19.1	71	19.2	19	21.6	239	17.1
40대(40~49세)	54	13.0	43	13.2	20	10.1	65	17.6	9	10.2	191	13.7
50대(50~59세)	42	10.1	33	10.1	13	6.5	53	14.3	12	13.6	153	10.9
60~64세	10	2.4	11	3.4	2	1.0	18	4.9	8	9.1	49	3.5
65세 이상	9	2.2	2	0.6	4	2.0	9	2.4	3	3.4	27	1.9
계	416	100.0	326	100.0	199	100.0	370	100.0	88	100.0	1,399	100.0

### 3) 발달장애인 학대유형별 지속기간

발달장애인 학대 지속기간을 학대유형별로 보면 경제적 착취와 방임을 제외한 모든 학대가 3개월 미만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방임의 경우 10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발달장애인 학대유형별 지속기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계	
3개월 미만	210	50.5	118	36.2	141	70.9	79	21.4	19	21.6	567	40.5
3~6개월 미만	61	14.7	54	16.6	13	6.5	37	10.0	1	1.1	166	11.9
6~12개월 미만	30	7.2	35	10.7	10	5.0	47	12.7	9	10.2	131	9.4
1~3년 미만	53	12.7	61	18.7	24	12.1	79	21.4	16	18.2	233	16.7
3~5년 미만	11	2.6	15	4.6	4	2.0	35	9.5	7	8.0	72	5.1
5~10년 미만	21	5.0	20	6.1	6	3.0	58	15.7	9	10.2	114	8.1
10년 이상	30	7.2	23	7.1	1	0.5	35	9.5	27	30.7	116	8.3
계	416	100.0	326	100.0	199	100.0	370	100.0	88	100.0	1,399	100.0

### 4)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학대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에서 학대행위자는 타인, 가족 및 친인척,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부(父), 모르는 사람, 모(母) 등의 순이었다.

학대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의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53.6%)이 가장 많았고 세부적으로 부(父)(20.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3.9%), 배우자(10.8%),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9.9%) 등의 순이었다. 정서적 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43.3%)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세부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7.5%),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15.0%), 부(父)(12.0%), 배우자(9.5%) 등의 순이었다. 성적 학대는 타인(79.4%)에 의해 주로 발생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38.7%), 모르는 사람(30.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8.5%), 이웃(8.5%) 등의 순이었다. 경제적 착취는 타인(53.0%)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세부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29.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27.8%), 모르는 사람(12.4%) 등의 순이었다. 유기는 없었으며, 방임은 가족 및 친인척(45.5%)에 의한 경우가 많았으며, 세부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39.8%), 모(母)(19.3%), 부(父)(11.4%) 등의 순이었다.

[표 5-16]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45	10.8	31	9.5	3	1.5	7	1.9	-	-	86	6.1
	부	84	20.2	39	12.0	4	2.0	5	1.4	10	11.4	142	10.2
	모	40	9.6	29	8.9	2	1.0	7	1.9	17	19.3	95	6.8
	조부모	2	0.5	6	1.8	2	1.0	1	0.3	-	-	11	0.8
	자녀	16	3.8	13	4.0	-	-	4	1.1	3	3.4	36	2.6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4	5.8	13	4.0	4	2.0	21	5.7	7	8.0	69	4.9
	그 외 친척	12	2.9	10	3.1	5	2.5	15	4.1	3	3.4	45	3.2
	소계	223	53.6	141	43.3	20	10.1	60	16.2	40	45.5	484	34.6
타인	동거인	18	4.3	10	3.1	3	1.5	16	4.3	9	10.2	56	4.0
	이웃	4	1.0	8	2.5	17	8.5	9	2.4	-	-	38	2.7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41	9.9	49	15.0	77	38.7	109	29.5	-	-	276	19.7
	고용주	3	0.7	3	0.9	-	-	16	4.3	-	-	22	1.6
	모르는 사람	7	1.7	10	3.1	61	30.7	46	12.4	-	-	124	8.9
	소계	73	17.5	80	24.5	158	79.4	196	53.0	9	10.2	516	36.9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8	13.9	57	17.5	17	8.5	103	27.8	35	39.8	270	19.3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	8	1.9	-	-	-	-	-	-	-	-	8	0.6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5	1.2	3	0.9	1	0.5	9	2.4	1	1.1	19	1.4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	0.2	-	-	-	-	-	-	1	1.1	2	0.1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18	4.3	17	5.2	-	-	-	-	-	-	35	2.5
	초·중등학교 종사자	11	2.6	9	2.8	-	-	-	-	-	-	20	1.4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	0.2	-	-	-	-	-	-	-	-	1	0.1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	1	0.3	-	-	-	-	-	-	1	0.1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1	0.2	1	0.3	-	-	-	-	-	-	2	0.1
소계	103	24.8	88	27.0	18	9.0	112	30.3	37	42.0	358	25.6	
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2	0.5	1	0.3	-	-	-	-	-	-	3	0.2
	의료기관 종사자	4	1.0	3	0.9	-	-	-	-	-	-	7	0.5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8	1.9	8	2.5	2	1.0	-	-	1	1.1	19	1.4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2	0.5	3	0.9	-	-	-	-	-	-	5	0.4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	1	0.3	-	-	-	-	-	-	1	0.1
	경찰공무원	-	-	1	0.3	-	-	-	-	-	-	1	0.1
	소계	16	3.8	17	5.2	2	1.0	-	-	1	1.1	36	2.6
본인	-	-	-	-	-	-	-	-	1	1.1	1	0.1	
파악 안 됨	1	0.2	-	-	1	0.5	2	0.5	-	-	4	0.3	
계	416	100.0	326	100.0	199	100.0	370	100.0	88	100.0	1,399	100.0	

## 아. 발달장애인 학대에 대한 조치

### 1) 응급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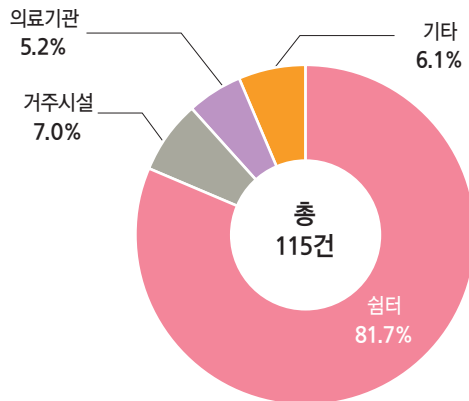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학대사례에서 총 115건의 응급조치를 실시하였다. 쉼터를 이용한 경우가 81.7%(9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주시설 7.0%(8건), 의료기관 5.2%(6건), 기타장소는 6.1%(7건)로 나타났다. 전년도 응급조치 실시건수(91건)와 비교하여 26.4% 증가했으며, 쉼터(82건)로의 응급조치 비율은 14.6% 증가했다.

[표 5-17]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응급조치

(단위: 건, %)

쉼터	거주시설	의료기관	기타	계
94	8	6	7	115
81.7	7.0	5.2	6.1	100.0

[그림 5-8]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응급조치



2)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총 12,902회의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 중 상담지원이 8,526회(66.1%)로 가장 많았고, 사법지원 1,912회(14.8%), 복지지원 941회(7.3%), 거주지원 484회(3.8%)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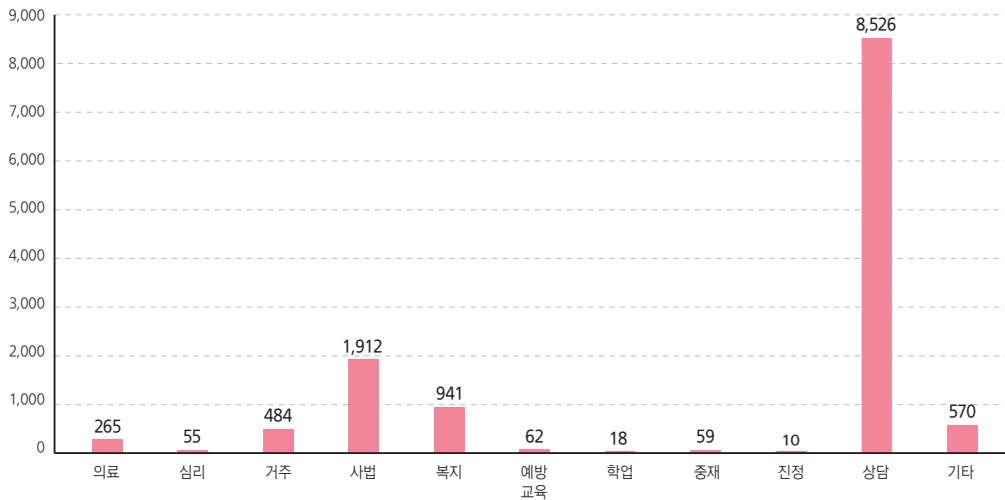
[표 5-18]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회, %)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예방교육	학업	중재	진정	상담	기타	계
265	55	484	1,912	941	62	18	59	10	8,526	570	12,902
2.1	0.4	3.8	14.8	7.3	0.5	0.1	0.5	0.1	66.1	4.4	100.0

[그림 5-9]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회)



발달장애인 학대사례에 실시한 사법지원은 총 1,912회로 기타지원을 제외하고 절차지원이 395회(20.7%)로 많았고, 법률상담 95회(5.0%), 고발 82회(4.3%) 등이 많았다.

[표 5-19]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단위: 회, %)

고발	고소대리	수사의뢰	법률상담	절차지원	소송구조	후견인 선임	노동청 진정	기타	계
82	18	53	95	395	7	4	4	1,254	1,912
4.3	0.9	2.8	5.0	20.7	0.4	0.2	0.2	65.6	100.0

## 2. 장애아동 학대사례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피해자 중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학대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장애아동 학대 사례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신고되면 상호 통보하여 재신고 및 동일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상호 협조하여 중복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2023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아동 학대신고는 452건이며, 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263건, 비학대사례는 138건, 잠재위험사례는 23건, 조사 중인 사례는 28건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장애아동 학대신고(413건)는 9.4% 증가하였고, 학대사례(249건)는 5.6% 증가하였다.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8.5%를 차지했다. 2023년 12월말 기준 등록장애인구 2,641,896<sup>7)</sup>명 중 장애아동은 3.1%(81,364명)이다.

### 가.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장애아동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지역 및 기관별 현황을 보면 경기남부가 51건(19.4%)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47건(17.9%), 부산 26건(9.9%), 울산 22건(8.4%) 등의 순이었다.

---

7)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2023.12.31 기준

[표 5-20]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장애아동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서울	10	3.8	
부산	26	9.9	
대구	6	2.3	
인천	8	3.0	
광주	2	0.8	
대전	7	2.7	
울산	22	8.4	
세종	9	3.4	
경기	경기남부	51	19.4
	경기북부	19	7.2
	소계	70	26.6
강원	9	3.4	
충북	충북	8	3.0
	충북북부	9	3.4
	소계	17	6.5
충남	12	4.6	
전북	2	0.8	
전남	9	3.4	
경북	4	1.5	
경남	47	17.9	
제주	3	1.1	
계	263	100.0	

## 나. 학대피해 장애아동

### 1) 성별 및 연령

피해 장애아동 성별은 남아 59.7%(157명), 여아 40.3%(106명)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에 해당하는 13~15세가 30.4%(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10~12세가 20.9%(55명),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6~17세가 18.3%(48명)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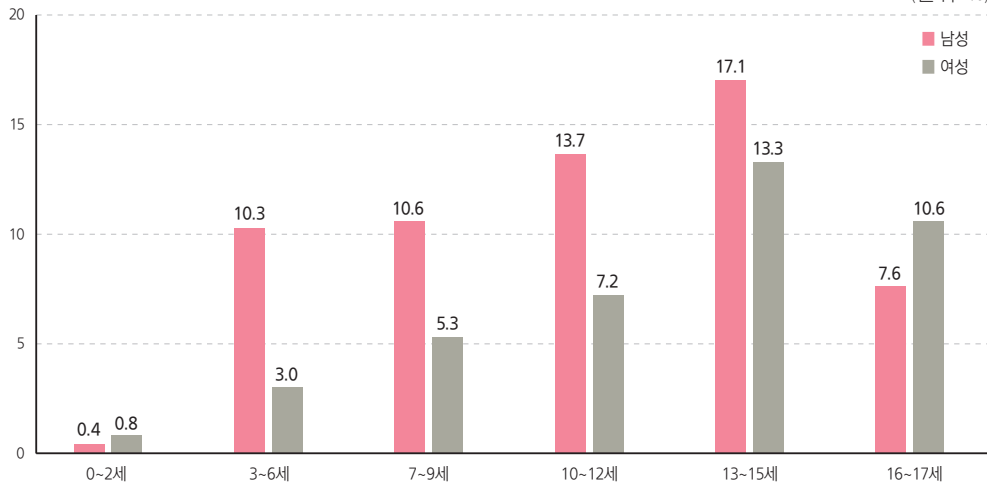
[표 5-21] 피해 장애아동 성별 및 연령

(단위: 명, %)

구분	0~2세		3~6세		7~9세		10~12세		13~15세		16~17세		계	
남성	1	0.4	27	10.3	28	10.6	36	13.7	45	17.1	20	7.6	157	59.7
여성	2	0.8	8	3.0	14	5.3	19	7.2	35	13.3	28	10.6	106	40.3
계	3	1.1	35	13.3	42	16.0	55	20.9	80	30.4	48	18.3	263	100.0

[그림 5-10] 피해 장애아동 성별 및 연령

(단위: %)



## 2) 장애유형 및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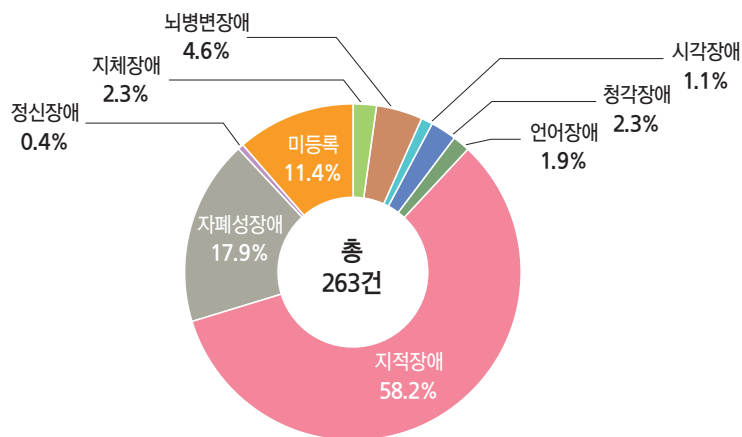
피해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58.2%(153건)로 가장 많았으며, 자폐성장애 17.9%(47건), 미등록 11.4%(30건), 뇌병변장애 4.6%(12건) 등의 순이었다. 전체 학대사례와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높았으며, 자폐성장애의 비율(17.9%)이 전체 학대사례의 자폐성장애 비율(6.6%)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22] 피해 장애아동 장애유형<sup>8)</sup>

(단위: 건, %)

장애유형	건수	비율
지체장애	6	2.3
뇌병변장애	12	4.6
시각장애	3	1.1
청각장애	6	2.3
언어장애	5	1.9
지적장애	153	58.2
자폐성장애	47	17.9
정신장애	1	0.4
미등록	30	11.4
계	263	100.0

[그림 5-11] 피해 장애아동 장애유형



8) 피해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은 주장애유형으로 분석함

피해 장애아동 중 장애 등록이 된 233건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97.0%(226건)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7건)이었다.

[표 5-23] 피해 장애아동 장애정도

(단위: 건, %)

장애정도	건수	비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226	97.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	7	3.0
계	233	100.0

###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피해 장애아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는 비수급자가 52.5%(138건)로 가장 많았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44.1%(116건), 차상위수급자는 3.4%(9건)이었다. 전체 학대사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61.2%(868건)을 차지하고 있지만, 장애아동 학대사례에서는 비수급자 가정에서의 학대사례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표 5-24] 피해 장애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단위: 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비수급자		계	
116	44,1	9	3,4	138	52,5	263	100,0

## 다.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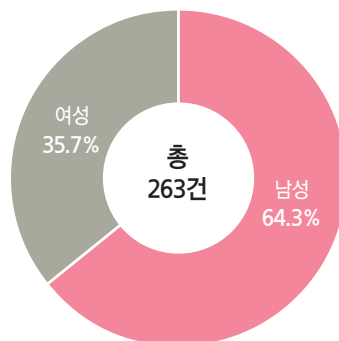
장애아동 학대행위자의 성별은 남성이 64.3%(169명), 여성이 35.7%(94명)로 전체 학대사례(남성 69.9%, 여성 30.1%)와 비교하면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표 5-25]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명, %)

남성		여성		계	
169	64.3	94	35.7	263	100.0

[그림 5-12]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성별



## 2) 연령

장애아동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40대가 27.8%(73명)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17.1%(45명), 30대 14.8%(3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19세 이하인 미성년자가 행위자인 경우는 13.7%(36명)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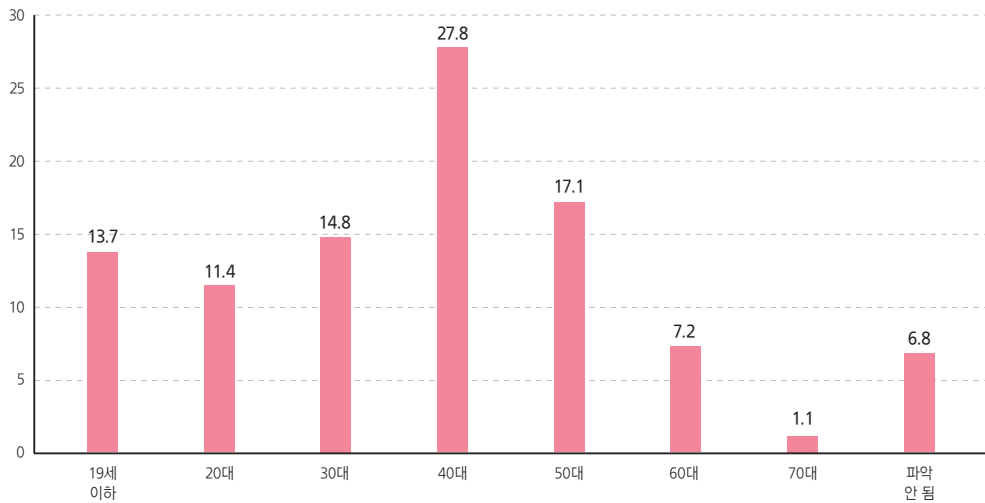
[표 5-26]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명, %)

연령	건수	비율
19세 이하	36	13.7
20대(20~29세)	30	11.4
30대(30~39세)	39	14.8
40대(40~49세)	73	27.8
50대(50~59세)	45	17.1
60대(60~69세)	19	7.2
70대(70~79세)	3	1.1
파악 안 됨	18	6.8
계	263	100.0

[그림 5-13] 장애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



### 3)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장애아동 학대행위자는 부(父)·모(母)가 39.5%(10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6.3%(43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1.4%(3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를 보면 가족 및 친인척 46.0%(121건), 타인 22.4%(59건),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28.1%(74건),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3.0%(8건) 순이었다.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와 다르게 가족 및 친인척의 비율이 타인 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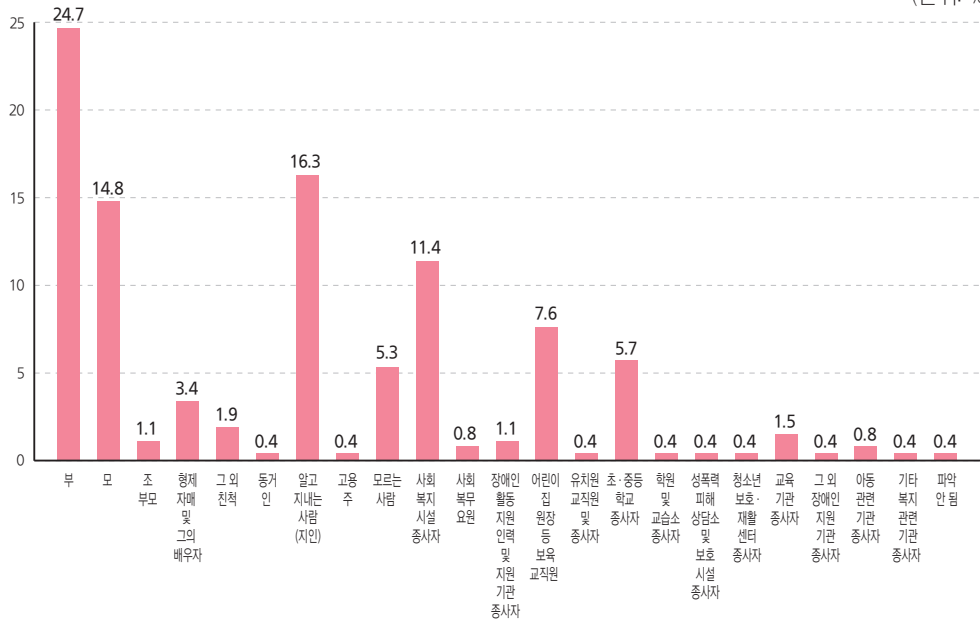
[표 5-27]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단위: 건, %)

관계		건수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부	65	24.7
	모	39	14.8
	조부모	3	1.1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9	3.4
	그 외 친척	5	1.9
	소계	121	46.0
타인	동거인	1	0.4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43	16.3
	고용주	1	0.4
	모르는 사람	14	5.3
	소계	59	22.4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0	11.4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	2	0.8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3	1.1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20	7.6
	유치원 교직원 및 종사자	1	0.4
	초·중등학교 종사자	15	5.7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	0.4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1	0.4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1	0.4
	소계	74	28.1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4	1.5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	0.4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2	0.8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1	0.4
	소계	8	3.0
파악 안 됨		1	0.4
계		263	100.0

[그림 5-14]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단위: %)



## 라. 장애아동 학대 발생현황

### 1) 학대 발생장소

장애아동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3.3%(114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교육기관 24.7%(65건), 장애인거주시설 10.6%(28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6.1%(16건)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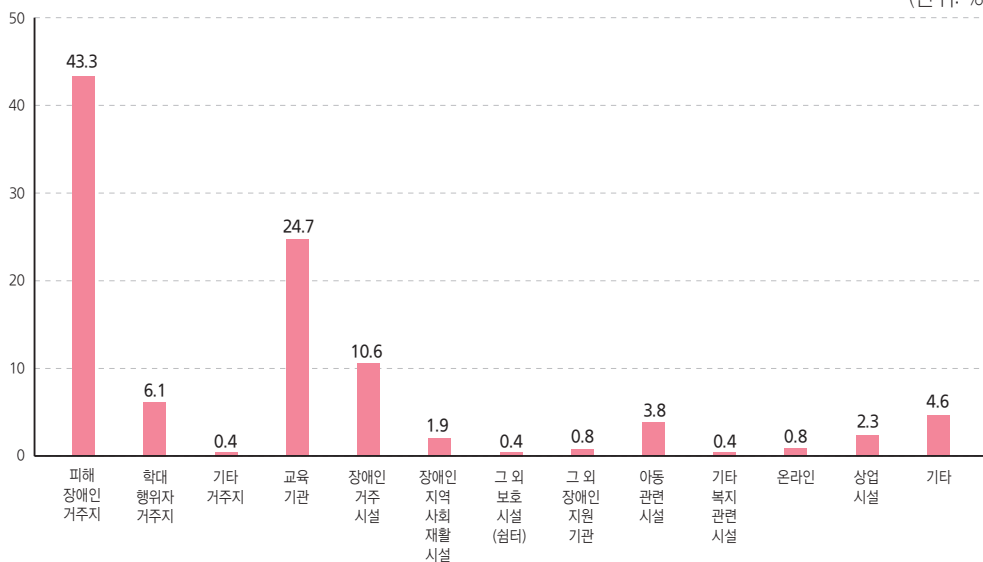
[표 5-28] 장애아동 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

발생장소		건수	비율
피해장애인 거주지		114	43.3
학대행위자 거주지		16	6.1
기타 거주지		1	0.4
교육기관		65	24.7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28	10.6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5	1.9
	소계	33	12.5
그 외 보호시설(쉼터)		1	0.4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2	0.8
아동관련시설		10	3.8
기타 복지관련시설		1	0.4
온라인		2	0.8
상업시설		6	2.3
기타		12	4.6
계		263	100.0

[그림 5-15] 장애아동 학대 발생장소

(단위: %)



2) 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장애아동 학대의 지속기간과 발생빈도를 보면 우선,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인 53.6%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사례는 77.9%로 전체 학대사례(1년 미만 62.1%)보다 지속기간이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발생빈도 역시 1~2회가 45.2%로 가장 많았다.

장애아동 학대는 장애인학대 대응 체계와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함께 대응하고 있고, 아동 학대에 대해 국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빨리 발견되기 때문에 학대의 지속기간이나 빈도가 전체 장애인학대사례에 비해 짧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다만, 지속기간이 짧더라도 발생빈도가 거의 매일인 사례가 11.8%라는 점은 학대 대응 체계가 발견해내지 못하는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5-29] 장애아동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단위: 건, %)

구분		발생빈도											
		거의 매일		10회 이상		10회 미만		5회 미만		1~2회		계	
지속기간	3개월 미만	3	1.1	2	0.8	7	2.7	23	8.7	106	40.3	141	53.6
	3~6개월 미만	17	6.5	6	2.3	3	1.1	8	3.0	9	3.4	43	16.3
	6~12개월 미만	1	0.4	11	4.2	4	1.5	1	0.4	4	1.5	21	8.0
	1~3년 미만	8	3.0	20	7.6	15	5.7	4	1.5	-	-	47	17.9
	3~5년 미만	1	0.4	5	1.9	-	-	-	-	-	-	6	2.3
	5~10년 미만	-	-	2	0.8	-	-	-	-	-	-	2	0.8
	10년 이상	1	0.4	1	0.4	1	0.4	-	-	-	-	3	1.1
계		31	11.8	47	17.9	30	11.4	36	13.7	119	45.2	263	100.0

## 마. 장애아동 학대유형

### 1) 장애아동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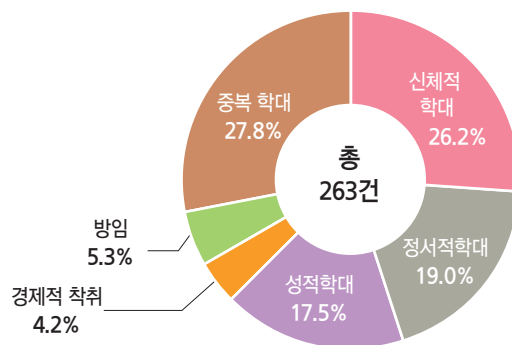
장애아동 학대유형은 중복 학대 27.8%(73건), 신체적 학대 26.2%(69건), 정서적 학대 19.0%(50건), 성적 학대 17.5%(46건), 방임 5.3%(14건), 경제적 착취 4.2%(11건)로 나타났다. 유기는 0건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중복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은 감소하였고, 경제적 착취,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증가하였다.

[표 5-30] 장애아동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69	26.2
정서적 학대	50	19.0
성적 학대	46	17.5
경제적 착취	11	4.2
방임	14	5.3
중복 학대	73	27.8
계	263	100.0

[그림 5-16] 장애아동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 장애아동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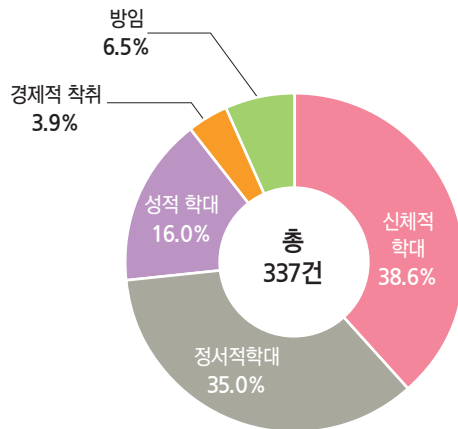
장애아동 학대사례 총 263건 중 아동이 중복하여 경험한 학대를 각각의 학대유형에 포함하면 총 337건이다. 신체적 학대가 38.6%(130건)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35.0%(118건), 성적 학대 16.0%(54건), 방임 6.5%(22건), 경제적 착취 3.9%(13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1] 장애아동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130	38.6
정서적 학대	118	35.0
성적 학대	54	16.0
경제적 착취	13	3.9
방임	22	6.5
계	337	100.0

[그림 5-17] 장애아동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바. 장애아동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장애아동 학대유형에서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사례 총 337건을 기준으로 장애아동 학대유형과 피해 장애인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 1)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성별

학대유형에 따라 피해 장애아동의 성별은 차이를 보였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에서는 남아의 피해 비율이 높았고, 성적 학대에서만 여아의 피해 비율이 높았다.

[표 5-32]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성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계	
남성	93	71.5	72	61.0	13	24.1	11	84.6	14	63.6	203	60.2
여성	37	28.5	46	39.0	41	75.9	2	15.4	8	36.4	134	39.8
계	130	100.0	118	100.0	54	100.0	13	100.0	22	100.0	337	100.0

### 2)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연령

장애아동 중 13~15세에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경제적 착취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방임만 3~6세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5-33] 학대유형별 피해 장애아동 연령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계	
0~2세	1	0.8	1	0.8	1	1.9	-	-	1	4.5	4	1.2
3~6세	21	16.2	23	19.5	1	1.9	-	-	6	27.3	51	15.1
7~9세	28	21.5	17	14.4	5	9.3	-	-	4	18.2	54	16.0
10~12세	30	23.1	20	16.9	11	20.4	4	30.8	2	9.1	67	19.9
13~15세	32	24.6	35	29.7	24	44.4	6	46.2	4	18.2	101	30.0
16~17세	18	13.8	22	18.6	12	22.2	3	23.1	5	22.7	60	17.8
계	130	100.0	118	100.0	54	100.0	13	100.0	22	100.0	337	100.0

### 3)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장애아동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타인,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파악 안 됨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학대행위자별로 살펴보면 부(父),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모(母),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초·중등학교 종사자 등의 순이었다.

학대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의 경우 가족 및 친인척(46.2%)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부(父)·모(母)(41.5%)가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14.6%),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11.5%)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정서적 학대의 행위자도 가족 및 친인척(42.4%)가 가장 많았고, 세부적으로 부(父)·모(母)(40.7%),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14.4%)·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14.4%)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성적 학대는 타인(64.8%)이 가장 많았고, 세부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38.9%), 모르는 사람(2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행위자는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76.9%)가 가장 많았고, 세부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76.9%)가 많았다. 방임의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90.9%)이 많았고, 모두 부모에 의해 행해졌다.

[표 5-34]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장애아동과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계	
가족 및 친인척	부	39	30.0	30	25.4	5	9.3	-	-	7	31.8	81	24.0
	모	16	11.5	18	15.3	2	3.7	1	7.7	13	59.1	49	14.5
	조부모	-	-	1	0.8	2	3.7	-	-	-	-	3	0.9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4	3.1	1	0.8	3	5.6	1	7.7	-	-	9	2.7
	그 외 친척	2	1.5	-	-	3	5.6	-	-	-	-	5	1.5
	소계	60	46.2	50	42.4	15	27.8	2	15.4	20	90.9	147	43.6
타인	동거인	1	0.8	1	0.8	1	1.9	-	-	-	-	3	0.9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5	11.5	17	14.4	21	38.9	1	7.7	-	-	54	16.0
	고용주	-	-	-	-	1	1.9	-	-	-	-	1	0.3
	모르는 사람	2	1.5	2	1.7	12	22.2	-	-	-	-	16	4.7
	소계	18	13.8	20	16.9	35	64.8	1	7.7	-	-	74	22.0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9	6.9	9	7.6	3	5.6	10	76.9	1	4.5	32	9.5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	2	1.5	-	-	-	-	-	-	-	-	2	0.6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3	2.3	1	0.8	-	-	-	-	-	-	4	1.2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19	14.6	17	14.4	-	-	-	-	1	4.5	37	11.0
	유치원 교직원 및 종사자	-	-	1	0.8	-	-	-	-	-	-	1	0.3
	초·중등학교 종사자	12	9.2	11	9.3	-	-	-	-	-	-	23	6.8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	0.8	-	-	-	-	-	-	-	-	1	0.3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	1	0.8	-	-	-	-	-	-	1	0.3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1	0.8	1	0.8	-	-	-	-	-	-	2	0.6
소계	47	36.2	41	34.7	3	5.6	10	76.9	2	9.1	103	30.6	
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2	1.5	3	2.5	-	-	-	-	-	-	5	1.5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	0.8	1	0.8	-	-	-	-	-	-	2	0.6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2	1.5	2	1.7	-	-	-	-	-	-	4	1.2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	1	0.8	-	-	-	-	-	-	1	0.3
	소계	5	3.8	7	5.9	-	-	-	-	-	-	12	3.6
본인	-	-	-	-	-	-	-	-	-	-	-	-	-
파악 안 됨	-	-	-	-	1	1.9	-	-	-	-	1	0.3	
계	130	100.0	118	100.0	54	100.0	13	100.0	22	100.0	337	100.0	

## 사.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조치

### 1) 응급조치

장애아동 학대사례 263건 중 응급조치는 14건(5.3%) 실시하였다. 이 중 심터를 이용한 사례는 13건(92.9%), 기타 장소 1건(7.1%)이었다.

[표 5-35] 피해 장애아동 응급조치

(단위: 건, %)

심터	기타	계
13	1	14
92.9	7.1	100.0

### 2) 피해 장애아동 지원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총 2,637회 이뤄졌다. 상담지원이 1,652회(62.6%)로 가장 많았고, 사법지원 479회(18.2%), 복지지원 227회(8.6%) 등의 순으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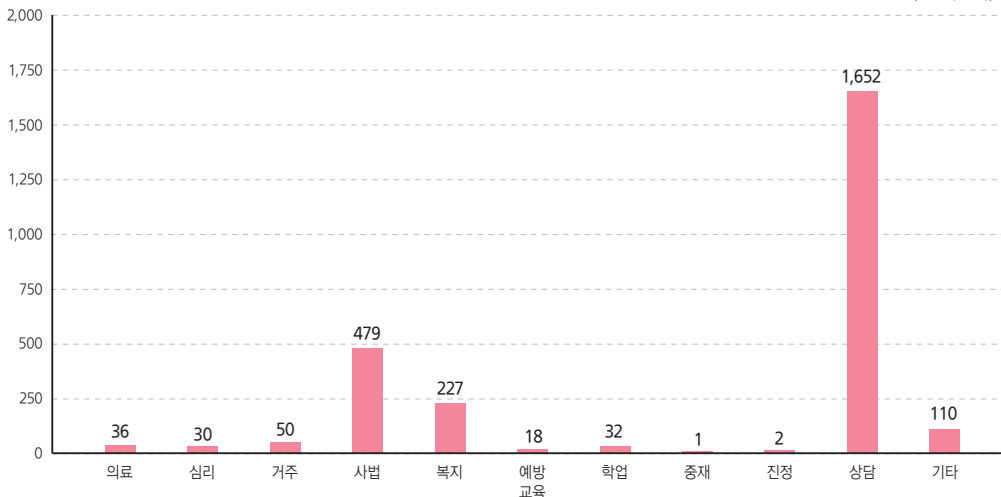
[표 5-36] 피해 장애아동 지원 유형

(단위: 회, %)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예방교육	학업	중재	진정	상담	기타	계
36	30	50	479	227	18	32	1	2	1,652	110	2,637
1.4	1.1	1.9	18.2	8.6	0.7	1.2	0.0	0.1	62.6	4.2	100.0

[그림 5-18] 피해 장애아동 지원 유형

(단위: 회)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사법지원은 총 479회 실시했으며, 이 중 사법지원을 위한 동행, 사법지원 관련자와의 협의 및 모니터링, 정보탐색 등의 기타지원이 321회(67.0%) 실시되었고, 절차지원 115회(24.0%), 법률상담 19회(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7] 피해 장애아동 사법지원 유형

(단위: 회, %)

고발	고소대리	수사의뢰	법률상담	절차지원	기타	계
7	2	15	19	115	321	479
1.5	0.4	3.1	4.0	24.0	67.0	100.0

### 3. 노동력 착취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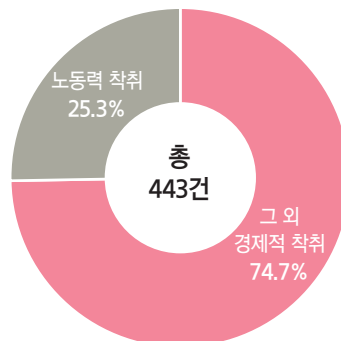
노동력 착취는 경제적 착취의 대표적 행위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가로채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3년 노동력 착취사례는 112건으로 이는 전체 학대사례(1,418건)의 7.9%에 해당한다. 경제적 착취 사례 443건 중 25.3%가 노동력 착취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전체 학대사례 1,186건 중 노동력 착취사례 52건)와 비교하면 115.4% 증가하였다.

[표 5-38] 노동력 착취 발생

(단위: 건, %)

경제적 착취			경제적 착취사례 중 노동력 착취	전체 장애인학대사례 중 노동력 착취
노동력 착취 포함	노동력 착취 미포함	계		
112	331	443	25.3	7.9

[그림 5-19] 노동력 착취 발생



## 가.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 1) 성별 및 연령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의 성별은 남성이 57.1%(64명), 여성이 42.9%(48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50대가 24.1%(27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0대 22.3%(25명), 20대 18.8%(21명), 30대 14.3%(16명), 60~64세 12.5%(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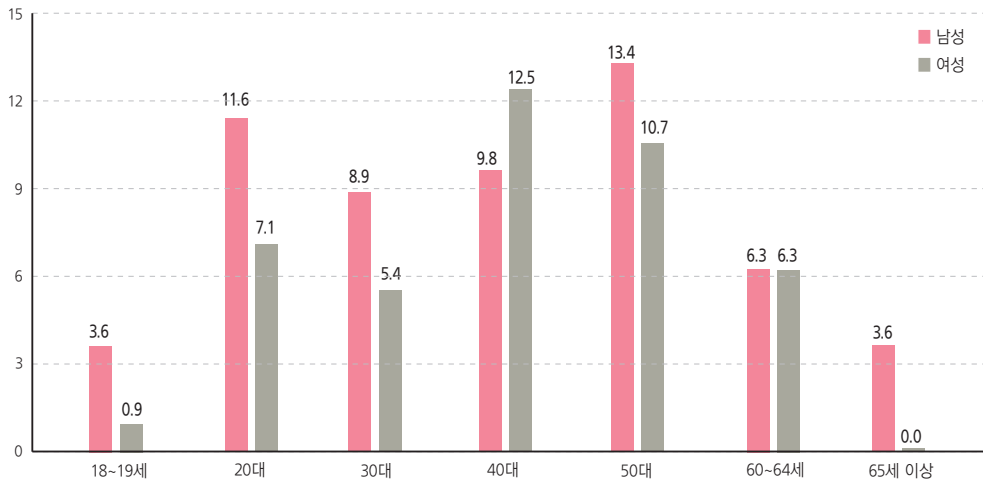
[표 5-39]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명, %)

구분	18~19세		20대 (20~29세)		30대 (30~39세)		40대 (40~49세)		50대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계	
남성	4	3.6	13	11.6	10	8.9	11	9.8	15	13.4	7	6.3	4	3.6	64	57.1
여성	1	0.9	8	7.1	6	5.4	14	12.5	12	10.7	7	6.3	-	-	48	42.9
계	5	4.5	21	18.8	16	14.3	25	22.3	27	24.1	14	12.5	4	3.6	112	100.0

[그림 5-2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



## 2) 장애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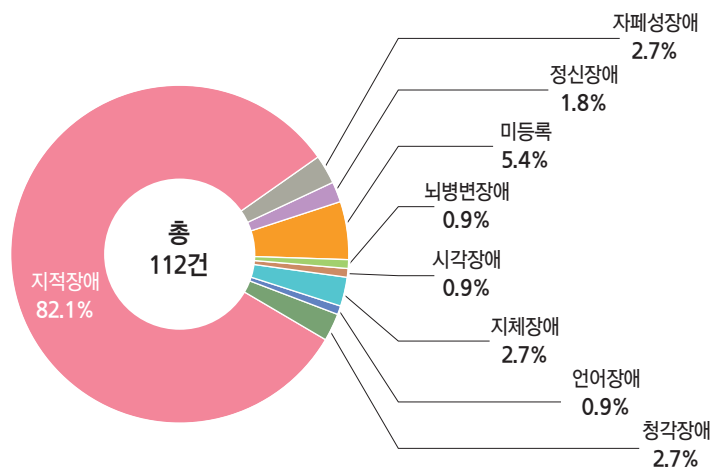
노동력 착취 피해자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82.1%(92건)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미등록 5.4%(6건), 지체장애·청각장애·자폐성장애가 각각 2.7%(3건)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노동력 착취 피해자의 장애유형과 비교하면 지적장애인이 대다수라는 점은 유사하지만 그 외 피해장애인은 주로 정신적 장애인이었던 것과는 달리 2023년의 경우 수는 적지만 다양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단위: 건, %)

장애유형	건수	비율
지체장애	3	2.7
뇌병변장애	1	0.9
시각장애	1	0.9
청각장애	3	2.7
언어장애	1	0.9
지적장애	92	82.1
자폐성장애	3	2.7
정신장애	2	1.8
미등록	6	5.4
계	112	100.0

[그림 5-2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 3) 거주유형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의 거주유형은 시설이 33.9%(38건), 재가가 66.1%(74건)로 나타났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는 전년도(29건)에 비해 31.0% 증가하였다.

[표 5-4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단위: 건, %)

재가		시설		계	
74	66.1	38	33.9	112	100.0

###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69.6%(78건), 비수급자 28.6%(32건), 차상위수급자 1.8%(2건)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전체 학대사례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61.2%)보다 8.4%p 높은 수치이다.

[표 5-42]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단위: 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비수급자		계	
78	69.6	2	1.8	32	28.6	112	100.0

## 나. 노동력 착취 행위자

###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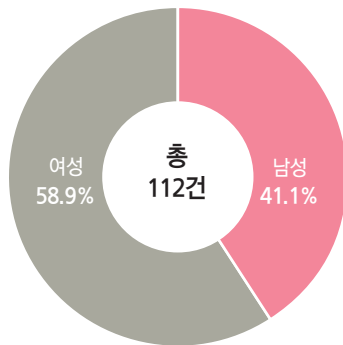
노동력 착취 행위자는 남성이 41.1%(46명), 여성이 58.9%(66명)로 나타났다.

[표 5-43] 노동력 착취 행위자 성별

(단위: 명, %)

남성		여성		계	
46	41.1	66	58.9	112	100.0

[그림 5-22] 노동력 착취 행위자 성별



## 2) 연령

노동력 착취 행위자는 60대가 50.0%(56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18.8%(21명), 40대 8.9%(10명), 20대 6.3%(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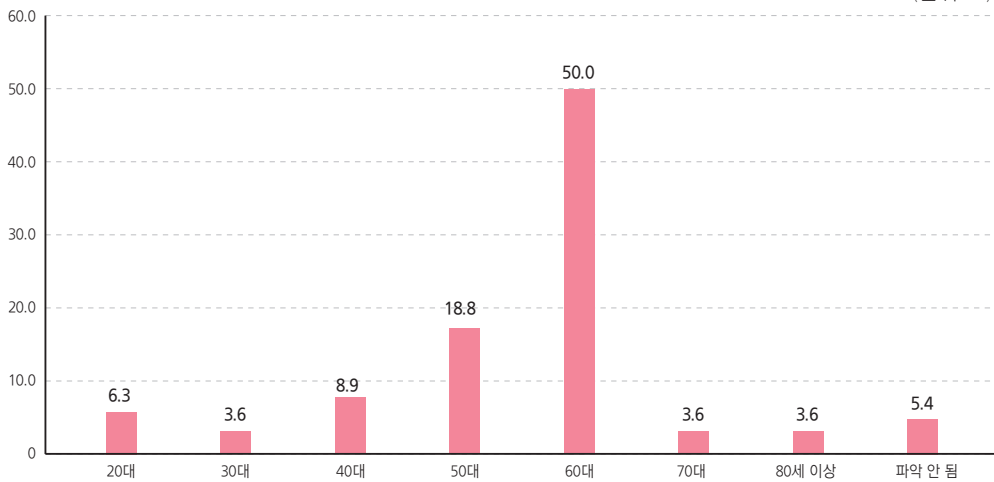
[표 5-44] 노동력 착취 행위자 연령

(단위: 명, %)

연령	건수	비율
20대(20~29세)	7	6.3
30대(30~39세)	4	3.6
40대(40~49세)	10	8.9
50대(50~59세)	21	18.8
60대(60~69세)	56	50.0
70대(70~79세)	4	3.6
80세 이상	4	3.6
파악 안 됨	6	5.4
계	112	100.0

[그림 5-23] 노동력 착취 행위자 연령

(단위: %)





### 3)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

노동력 착취의 행위자는 타인이 53.6%(60건)로 가장 많았고,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35.7%(40건), 가족 및 친인척 9.8%(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35.7%(40건)로 가장 많았고, 고용주 21.4%(24건),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19.6%(22건)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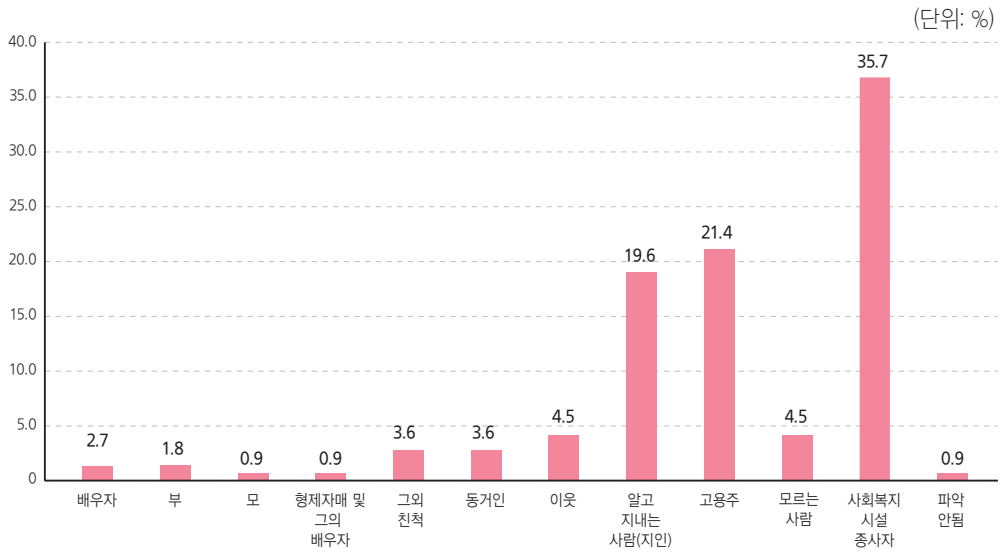
2023년에도 고용주에 의한 노동력 착취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노동력 착취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이용자에게 종사자의 돌봄 역할을 수행토록 하거나 치료나 프로그램 명목으로 부당한 노동력 착취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표 5-45] 노동력 착취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

(단위: 건, %)

관계		건수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3	2.7
	부	2	1.8
	모	1	0.9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0.9
	그 외 친척	4	3.6
	소계	11	9.8
타인	동거인	4	3.6
	이웃	5	4.5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22	19.6
	고용주	24	21.4
	모르는 사람	5	4.5
	소계	60	53.6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0	35.7
	소계	40	35.7
파악안됨		1	0.9
계		112	100.0

[그림 5-24] 노동력 착취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 다. 노동력 착취 발생현황

### 1)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는 장애인거주시설이 33.9%(38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직장(일하는 곳) 25.9%(29건), 학대행위자의 거주지 15.2%(17건)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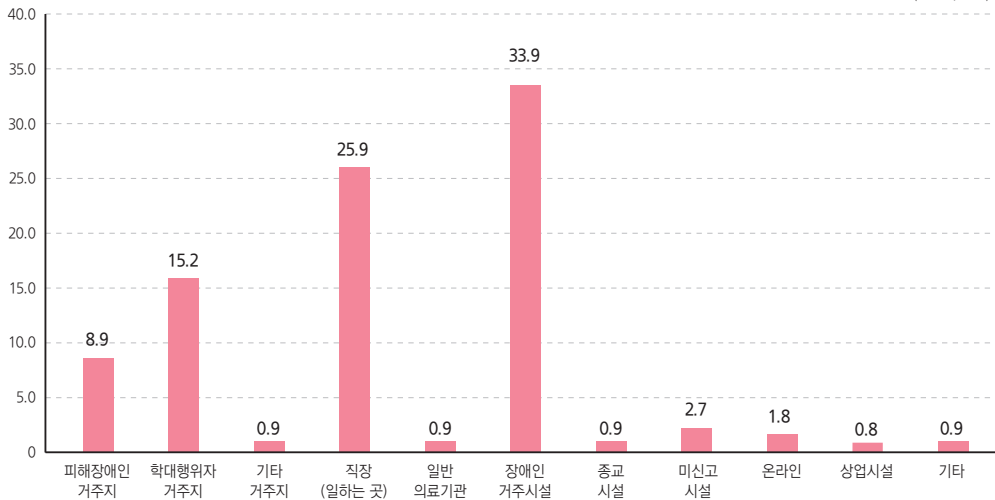
[표 5-46]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단위: 건, %)

발생장소		건수	비율
피해장애인 거주지		10	8.9
학대행위자 거주지		17	15.2
기타 거주지		1	0.9
직장(일하는 곳)		29	25.9
일반 의료기관		1	0.9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38	33.9
	소계	38	33.9
종교시설		1	0.9
미신고시설		3	2.7
온라인		2	1.8
상업시설		9	0.8
기타		1	0.9
계		112	100.0

[그림 5-25]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단위: %)



## 2)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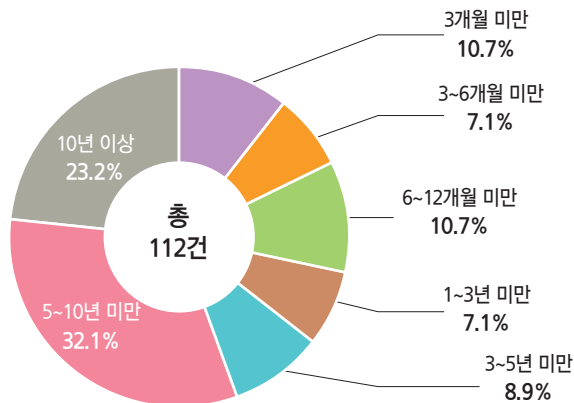
노동력 착취의 지속기간은 5~10년 미만인 사례가 32.1%(3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0년 이상 23.2%(26건), 3개월미만·6~12개월 미만 10.7%(12건) 등의 순이었다. 3년 이상 노동력 착취가 지속되는 사례는 64.2%(72건)로 전체 학대사례(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275건, 19.4%)보다 44.8%p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동력 착취가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5-47]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단위: 건, %)

지속기간	건수	비율
3개월 미만	12	10.7
3~6개월 미만	8	7.1
6~12개월 미만	12	10.7
1~3년 미만	8	7.1
3~5년 미만	10	8.9
5~10년 미만	36	32.1
10년 이상	26	23.2
계	112	100.0

[그림 5-26]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 라. 노동력 착취에 대한 조치

### 1) 응급조치

노동력 착취사례 총 112건에 대해 쉼터 이용 9건, 기타 1건 총 10건의 응급조치를 실시하였다.

[표 5-48]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응급조치

(단위: 건, %)

쉼터	기타	계
9	1	10
90.0	10.0	100.0

## 2)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1,499회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으며, 이 중 상담지원이 1,078회(71.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사법지원 208회(13.9%), 복지지원 93회(6.2%), 거주지원 69회(4.6%)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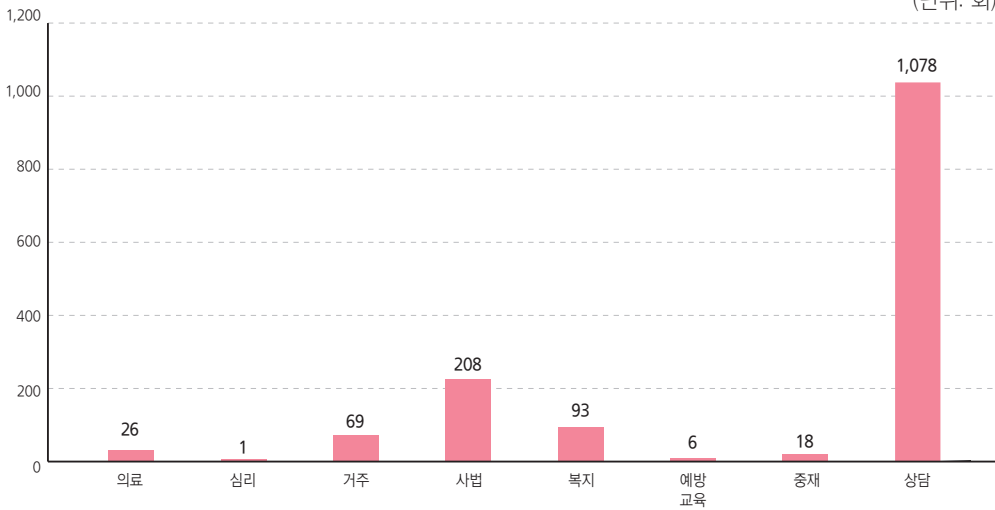
[표 5-49]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회, %)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예방교육	중재	상담	계
26	1	69	208	93	6	18	1,078	1,499
1.7	0.1	4.6	13.9	6.2	0.4	1.2	71.9	100.0

[그림 5-27]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회)



노동력 착취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실시한 사법지원은 총 208회로, 이 중 기타지원이 145회(69.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절차지원 34회(16.3%), 법률상담 11회(5.3%) 등의 순이었다.

[표 5-5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단위: 회, %)

고발	고소대리	수사익뢰	법률상담	절차지원	소송구조	노동청 진정	기타	계
7	1	3	11	34	3	4	145	208
3.4	0.5	1.4	5.3	16.3	1.4	1.9	69.7	100.0

## 4.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사례란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교육기관, 미신고시설 등에서 접수된 학대신고 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조사를 통해 장애인학대로 판단한 사례를 말한다.

2023년 12월 기준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은 1,529개소로 27,352명이 거주하고 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수어통역센터 등)은 1,536개소이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19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은 811개소이다<sup>9)</sup>

### 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 1)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전체 학대사례의 27.2%(385건)를 차지했다. 이 중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사례가 48.6%(187건)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기관 17.9%(69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8.6%(33건),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7.5%(29건), 미신고시설 5.2%(20건) 등의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29.8%, 354건)는 8.8% 증가했고 세부적으로 아동관련시설, 기타 복지관련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학대사례가 증가했다.

[표 5-51]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단위: 건, %)

시설유형	건수	비율
교육기관	69	17.9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187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3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
	소계	226
그 외 보호시설(쉼터)	1	0.3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29	7.5
정신요양시설	2	0.5
정신재활시설	3	0.8
아동관련시설	13	3.4
노인관련시설	8	2.1
기타 복지관련시설	14	3.6
미신고시설	20	5.2
계	385	100.0

9)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참조

## 2) 지역 및 기관별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지역별 집단이용시설의 장애인학대 현황을 보면 경기 42.3%(163건), 부산 11.7%(45건), 경남 8.1%(31건) 등의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경기(82건), 부산(10건)이 30건 이상 증가했으며, 강원(47건), 서울(46건), 경북(30건)이 20건 이상 감소하였다.

시설유형별 현황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기북부가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28건), 경기남부(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23년 12월 기준 전국 장애인거주시설과 거주 중인 장애인의 수는 경기도(319개 시설, 5,464명)가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249개 시설, 3,013명), 경상남도(97개 시설, 1,806명), 경상북도(92개 시설, 2,463명) 등의 순이다. 교육기관에서 일어난 학대는 경남(21건), 경기남부(17건), 세종(8건), 인천(7건)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경기남부(17건)가 가장 많았고, 대전·충남(5건)이 그 뒤를 이었다. 미신고시설에서 일어난 학대는 인천(10건)이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충남(5건) 순이었다.

[표 5-52] 지역 및 기관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단위: 건, %)

구분	교육기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 외 보호시설 (쉼터)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시설		정신 재활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관련 시설		미신고 시설		계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서울	3	0.8	9	2.3	1	0.3	-	-	-	-	-	-	-	-	-	-	-	-	-	-	-	-	-	-	13	3.4	
부산	2	0.5	28	7.3	3	0.8	-	-	-	-	-	-	-	-	-	-	-	-	-	-	-	12	3.1	-	-	45	11.7
대구	1	0.3	-	-	1	0.3	-	-	-	-	1	0.3	-	-	-	-	-	-	-	-	-	-	-	-	3	0.8	
인천	7	1.8	2	0.5	3	0.8	1	0.3	-	-	1	0.3	-	-	-	-	-	-	-	-	-	-	10	2.6	24	6.2	
광주	-	-	1	0.3	4	1.0	-	-	-	-	2	0.5	1	0.3	-	-	-	-	-	-	-	-	-	-	8	2.1	
대전	-	-	1	0.3	5	1.3	-	-	1	0.3	-	-	-	-	-	-	-	-	-	-	-	-	-	-	7	1.8	
울산	5	1.3	-	-	-	-	-	-	-	2	0.5	-	-	-	-	-	1	0.3	-	-	-	-	-	-	8	2.1	
세종	8	2.1	9	2.3	-	-	-	-	-	1	0.3	-	-	-	-	-	-	-	-	-	-	-	-	-	18	4.7	
경기	경기남부	9	2.3	17	4.4	6	1.6	3	0.8	-	-	13	3.4	-	-	-	5	1.3	1	0.3	1	0.3	-	-	55	14.3	
	경기북부	1	0.3	93	24.2	4	1.0	-	-	-	-	2	0.5	-	-	-	-	2	0.5	1	0.3	5	1.3	108	28.1		
	소계	10	2.6	110	28.6	10	2.6	3	0.8	-	-	15	3.9	-	-	-	5	1.3	3	0.8	2	0.5	5	1.3	163	42.3	
강원	1	0.3	4	1.0	-	-	-	-	-	-	-	-	-	-	-	-	-	-	-	-	-	-	-	-	5	1.3	
충북	충북	3	0.8	1	0.3	-	-	-	-	-	3	0.8	-	-	3	0.8	-	-	2	0.5	-	-	-	-	-	12	3.1
	충북북부	4	1.0	1	0.3	-	-	-	-	-	-	-	-	-	-	-	1	0.3	2	0.5	-	-	-	-	8	2.1	
	소계	7	1.8	2	0.5	-	-	-	-	-	3	0.8	-	-	3	0.8	1	0.3	4	1.0	-	-	-	-	20	5.2	
충남	2	0.5	-	-	5	1.3	1	0.3	-	-	-	-	-	-	-	-	1	0.3	-	-	-	-	5	1.3	14	3.6	
전북	-	-	2	0.5	-	-	-	-	-	2	0.5	-	-	-	-	-	-	1	0.3	-	-	-	-	-	5	1.3	
전남	1	0.3	-	-	-	-	-	-	-	1	0.3	1	0.3	-	-	2	0.5	-	-	-	-	-	-	-	5	1.3	
경북	1	0.3	3	0.8	1	0.3	-	-	-	1	0.3	-	-	1	0.3	-	-	-	-	-	-	-	-	-	7	1.8	
경남	21	5.5	9	2.3	-	-	-	-	-	-	-	-	-	-	-	1	0.3	-	-	-	-	-	-	-	31	8.1	
제주	-	-	7	1.8	-	-	1	0.3	-	-	-	-	-	-	-	1	0.3	-	-	-	-	-	-	-	9	2.3	
계	69	17.9	187	48.6	33	8.6	6	1.6	1	0.3	29	7.5	2	0.5	3	0.8	13	3.4	8	2.1	14	3.6	20	5.2	385	100.0	

## 나.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 1) 성별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보면 남성 64.9%(250명), 여성 35.1%(135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3]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성별

(단위: 명, %)

구분	교육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 외 보호시설 (쉼터)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시설		정신 재활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관련 시설		미신고 시설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남성	49	12.7	129	33.5	20	5.2	-	-	-	-	13	3.4	-	-	2	0.5	8	2.1	7	1.8	14	3.6	8	2.1	250	64.9
여성	20	5.2	58	15.1	13	3.4	6	1.6	1	0.3	16	4.2	2	0.5	1	0.3	5	1.3	1	0.3	-	-	12	3.1	135	35.1
계	69	17.9	187	48.6	33	8.6	6	1.6	1	0.3	29	7.5	2	0.5	3	0.8	13	3.4	8	2.1	14	3.6	20	5.2	385	100.0

### 2) 연령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17세 이하가 29.1%(112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20대가 18.2%(70명), 30대 15.8%(61명), 40대 13.8%(53명) 등의 순이었다.

시설유형을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30대 10.6%(41명), 40대 9.1%(35명), 20대 8.6%(33명), 17세 이하·50대 7.3%(28명) 등의 순이었다.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학대는 17세 이하가 16.9%(65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는 20대가 3.6%(14명)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에서는 20대가 3.4%(13명), 30대 1.6%(6명) 등의 순이었다. 미신고시설에서는 60~64세 1.6%(6명), 20대·40대 1.0%(4명) 등의 순이었다.

[표 5-54]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연령

(단위: 명, %)

구분	교육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 외 보호시설 (쉼터)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시설		정신 재활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관련 시설		미신고 시설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7세 이하	65	16.9	28	7.3	5	1.3	-	-	1	0.3	2	0.5	-	-	-	-	10	2.6	-	-	1	0.3	-	-	112	29.1
18~19세	2	0.5	7	1.8	-	-	-	-	-	-	2	0.5	-	-	-	-	1	0.3	-	-	-	-	-	-	12	3.1
20대 (20~29세)	1	0.3	33	8.6	14	3.6	3	0.8	-	-	13	3.4	-	-	-	-	2	0.5	-	-	-	-	4	1.0	70	18.2
30대 (30~39세)	-	-	41	10.6	6	1.6	2	0.5	-	-	6	1.6	2	0.5	1	0.3	-	-	-	-	1	0.3	2	0.5	61	15.8
40대 (40~49세)	1	0.3	35	9.1	4	1.0	1	0.3	-	-	1	0.3	-	-	1	0.3	-	-	-	-	6	1.6	4	1.0	53	13.8
50대 (50~59세)	-	-	28	7.3	1	0.3	-	-	-	-	2	0.5	-	-	1	0.3	-	-	1	0.3	4	1.0	3	0.8	40	10.4
60~64세	-	-	11	2.9	2	0.5	-	-	-	-	1	0.3	-	-	-	-	-	-	3	0.8	-	-	6	1.6	23	6.0
65세 이상	-	-	4	1.0	1	0.3	-	-	-	-	2	0.5	-	-	-	-	-	-	4	1.0	2	0.5	1	0.3	14	3.6
계	69	17.9	187	48.6	33	8.6	6	1.6	1	0.3	29	7.5	2	0.5	3	0.8	13	3.4	8	2.1	14	3.6	20	5.2	385	100.0

### 3) 장애유형 및 정도

집단이용시설 피해자의 장애유형을 보면 지적장애가 69.1%(266건)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장애 14.0%(54건), 뇌병변장애 4.7%(18건), 정신장애 3.4%(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장애가 86.5%(33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지적장애의 비율(65.5%)은 증가했고, 뇌병변장애(8.8%), 자폐성장애(12.7%)의 비율은 감소했다.

[표 5-55]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단위: 건, %)

구분	교육 기관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 외 보호시설 (쉼터)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 시설		정신 재활 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관련 시설		미신고 시설		계	
지체장애	2	0.5	3	0.8	1	0.3	-	-	-	-	3	0.8	-	-	-	-	-	-	2	0.5	-	-	-	-	11	2.9
뇌병변장애	2	0.5	11	2.9	3	0.8	-	-	-	-	1	0.3	-	-	-	-	-	-	1	0.3	-	-	-	-	18	4.7
시각장애	3	0.8	2	0.5	1	0.3	-	-	-	-	-	-	-	-	-	-	-	-	-	-	-	-	-	-	6	1.6
청각장애	1	0.3	1	0.3	-	-	1	0.3	-	-	-	-	-	-	-	-	-	-	-	-	-	-	-	-	3	0.8
언어장애	1	0.3	1	0.3	-	-	-	-	-	-	-	-	-	-	-	-	1	0.3	-	-	-	-	-	-	3	0.8
지적장애	36	9.4	149	38.7	17	4.4	4	1.0	1	0.3	21	5.5	2	0.5	-	-	11	2.9	5	1.3	9	2.3	11	2.9	266	69.1
자폐성장애	18	4.7	19	4.9	8	2.1	1	0.3	-	-	3	0.8	-	-	-	-	1	0.3	-	-	1	0.3	3	0.8	54	14.0
정신장애	-	-	1	0.3	1	0.3	-	-	-	-	-	-	-	-	3	0.8	-	-	-	-	3	0.8	5	1.3	13	3.4
미등록	6	1.6	-	-	2	0.5	-	-	-	-	1	0.3	-	-	-	-	-	-	-	-	1	0.3	1	0.3	11	2.9
계	69	17.9	187	48.6	33	8.6	6	1.6	1	0.3	29	7.5	2	0.5	3	0.8	13	3.4	8	2.1	14	3.6	20	5.2	385	100.0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의 장애정도는 모든 시설 유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높았다.

[표 5-56]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단위: 건, %)

구분	교육 기관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 외 보호시설 (쉼터)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 시설		정신 재활 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관련 시설		미신고 시설		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62	16.6	184	49.2	31	8.3	6	1.6	1	0.3	28	7.5	2	0.5	3	0.8	13	3.5	8	2.1	13	3.5	19	5.1	370	98.9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	1	0.3	3	0.8	-	-	-	-	-	-	-	-	-	-	-	-	-	-	-	-	-	-	-	-	4	1.1
계	63	16.8	187	50.0	31	8.3	6	1.6	1	0.3	28	7.5	2	0.5	3	0.8	13	3.5	8	2.1	13	3.5	19	5.1	374	100.0

## 다.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신고자 유형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는 비신고의무자(67.8%, 261건)의 신고율이 신고의무자(32.2%, 124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신고자 유형을 보면 비신고의무에 해당하는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가 31.7%(122건)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23.6%(91건), 타인 8.6%(33건), 부모·경찰공무원이 각각 7.0%(27건)로 뒤를 이었으며 피해장애인 본인의 신고는 2.9%(11건)에 불과했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학대사례는 비신고의무자인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가 24.7%(9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3.2%(51건), 경찰공무원 2.9%(11건), 타인 2.1%(8건) 등의 순이었다. 교육기관 학대사례의 신고자는 타인 4.2%(16건)로 가장 많았고, 부모 3.9%(15건), 초·중등학교 종사자 3.1%(12건) 등이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학대사례의 신고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9%(19건)으로 가장 많았다.

[표 5-57] 집단이용시설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교육 기관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 외 보호시설 (쉼터)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 시설		정신 재활 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관련 시설		미신고 시설		계		
신고의무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	0.3	3	0.8	1	0.3	1	0.3	-	-	-	-	-	-	-	-	-	-	-	-	-	-	9	2.3	15	3.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	0.5	51	13.2	19	4.9	5	1.3	-	-	9	2.3	-	-	1	0.3	-	-	2	0.5	2	0.5	-	-	91	23.6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지원기관 종사자	-	-	-	-	-	-	-	-	-	-	1	0.3	-	-	-	-	-	-	-	-	-	-	-	-	1	0.3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1	0.3	-	-	-	-	-	-	-	-	-	-	-	-	-	-	-	-	-	-	-	-	-	-	1	0.3	
	초·중등학교 종사자	12	3.1	-	-	-	-	-	-	-	-	-	-	-	-	-	-	1	0.3	-	-	-	-	-	-	13	3.4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2	0.5	-	-	-	-	-	-	-	-	-	-	-	-	-	-	-	-	-	-	-	-	-	-	2	0.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	-	-	-	-	-	-	-	-	-	1	0.3	-	-	-	-	-	-	-	-	-	-	-	-	1	0.3	
	소계	18	4.7	54	14.0	20	5.2	6	1.6	-	-	11	2.9	-	-	1	0.3	1	0.3	2	0.5	2	0.5	9	2.3	124	32.2	
비신고의무자	본인	2	0.5	4	1.0	-	-	-	-	-	-	4	1.0	-	-	1	0.3	-	-	-	-	-	-	-	-	11	2.9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	-	-	-	-	-	-	-	-	-	-	-	-	-	-	-	-	-	1	0.3	-	-	-	-	1	0.3
		부모	15	3.9	2	0.5	4	1.0	-	-	-	-	2	0.5	-	-	-	-	4	1.0	-	-	-	-	-	-	27	7.0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	1	0.3	-	-	-	-	-	-	-	-	-	-	-	-	-	-	-	-	-	-	-	-	1	0.3
		그 외 친척	1	0.3	1	0.3	-	-	-	-	-	-	-	-	-	-	-	-	1	0.3	-	-	-	-	-	-	3	0.8
		소계	16	4.2	4	1.0	4	1.0	-	-	-	-	2	0.5	-	-	-	-	5	1.3	1	0.3	-	-	-	-	32	8.3
	유관기관 종사자	일반공무원	-	-	2	0.5	-	-	-	-	-	-	2	-	-	-	1	0.3	-	-	-	-	-	-	-	-	5	1.3
		경찰공무원	6	1.6	11	2.9	1	0.3	-	-	-	-	3	0.8	-	-	-	-	5	1.3	1	0.3	-	-	-	-	27	7.0
		공공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	-	-	-	-	-	-	-	1	0.3	1	0.3
		교육기관 종사자	4	1.0	-	-	-	-	-	-	-	-	-	-	-	-	-	-	-	-	-	-	-	-	-	-	4	1.0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종사자		7	1.8	95	24.7	3	0.8	-	-	-	-	5	1.3	-	-	-	-	-	-	2	0.5	-	-	10	2.6	122	31.7	
아동관련 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	-	1	0.3	-	-	-	-	-	-	1	0.3	
노인관련 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	-	-	-	2	0.5	-	-	-	-	2	0.5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	4	1.0	-	-	-	-	-	-	-	-	-	-	-	-	1	0.3	-	-	12	3.1	-	-	17	4.4	
소계		17	4.4	112	29.1	4	1.0	-	-	-	-	10	2.6	-	-	1	0.3	7	1.8	5	1.3	12	3.1	11	2.9	179	46.5	
타인	16	4.2	8	2.1	5	1.3	-	-	-	-	2	0.5	2	0.5	-	-	-	-	-	-	-	-	-	-	33	8.6		
파악 안 됨	-	-	5	1.3	-	-	-	-	1	0.3	-	-	-	-	-	-	-	-	-	-	-	-	-	-	6	1.6		
소계	51	13.2	133	34.5	13	3.4	-	-	1	0.3	18	4.7	2	0.5	2	0.5	12	3.1	6	1.6	12	3.1	11	2.9	261	67.8		
계	69	17.9	187	48.6	33	8.6	6	1.6	1	0.3	29	7.5	2	0.5	3	0.8	13	3.4	8	2.1	14	3.6	20	5.2	385	100.0		

## 라. 집단이용시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집단이용시설의 학대행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59.0%(227건)로 가장 많았고,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이 16.1%(62건),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5.2%(20건)로 그 뒤를 이었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의 학대행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43.1%(166건)로 가장 많았고, 교육기관의 학대행위자는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6.8%(26건)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4.4%(17건)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의 학대행위자 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2.9%(11건)로 가장 많았다.

[표 5-58] 집단이용시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과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교육 기관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 외 보호시설 (쉼터)	그 외 장애인 자원기관	정신 요양 시설	정신 재활 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관련 시설	미신고 시설	계													
가족 및 친인척	부	-	-	-	-	-	-	-	-	-	-	-	-	1	0.3												
	소계	-	-	-	-	-	-	-	-	-	-	-	-	1	0.3												
타인	동거인	-	-	9	2.3	-	-	-	-	-	-	-	-	2	0.5	3	0.8	14	3.6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26	6.8	5	1.3	9	2.3	6	1.6	-	-	4	1.0	2	0.5	3	0.8	2	0.5	-	-	5	1.3	62	16.1		
	모르는 사람	-	-	3	0.8	1	0.3	-	-	-	-	2	0.5	-	-	-	-	1	0.3	-	-	-	-	-	-	7	1.8
	소계	26	6.8	17	4.4	10	2.6	6	1.6	-	-	6	1.6	2	0.5	3	0.8	3	0.8	2	0.5	-	-	8	2.1	83	21.6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	166	43.1	17	4.4	-	-	11	2.9	-	-	-	-	4	1.0	4	1.0	14	3.6	11	2.9	227	59.0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무원)	2	0.5	3	0.8	2	0.5	-	-	-	-	-	-	-	-	-	-	-	-	-	-	-	-	-	7	1.8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1	0.3	1	0.3	-	-	-	-	4	1.0	-	-	-	-	-	-	1	0.3	-	-	-	-	-	7	1.8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20	5.2	-	-	-	-	-	-	-	-	-	-	-	-	-	-	-	-	-	-	-	-	-	20	5.2	
	유치원 교직원 및 종사자	1	0.3	-	-	-	-	-	-	-	-	-	-	-	-	-	-	-	-	-	-	-	-	-	1	0.3	
	초·중등학교 종사자	16	4.2	-	-	-	-	-	-	-	-	-	-	-	-	-	-	-	-	-	-	-	-	-	16	4.2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	-	-	-	-	-	-	-	-	-	-	-	-	1	0.3	-	-	-	-	-	-	1	0.3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	-	-	-	-	-	1	0.3	-	-	-	-	-	-	-	-	-	-	-	-	-	-	1	0.3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	-	-	1	0.3	-	-	-	-	-	-	-	-	-	-	-	-	-	-	-	-	-	1	0.3	
	장기요양요원	-	-	-	-	-	-	-	-	-	-	-	-	-	-	-	-	1	0.3	-	-	-	-	-	1	0.3	
소계	40	10.4	170	44.2	20	5.2	-	-	1	0.3	15	3.9	-	-	-	-	5	1.3	6	1.6	14	3.6	11	2.9	282	73.2	
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종사자	3	0.8	-	-	-	-	-	-	-	-	-	-	-	-	1	0.3	-	-	-	-	-	-	-	4	1.0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	-	-	-	3	0.8	-	-	-	7	1.8	-	-	-	-	-	-	-	-	-	-	1	0.3	11	2.9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3	0.8	-	-	-	-	-	-	-	3	0.8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	-	-	-	-	-	-	-	-	-	-	-	-	1	0.3	-	-	-	-	-	-	-	1	0.3	
	소계	3	0.8	-	-	3	0.8	-	-	-	-	-	-	-	-	5	1.3	-	-	-	-	-	-	1	0.3	19	4.9
계	69	17.9	187	48.6	33	8.6	6	1.6	1	0.3	29	7.5	2	0.5	3	0.8	13	3.4	8	2.1	14	3.6	20	5.2	385	100.0	

### 마.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학대 지속기간

집단이용시설의 학대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이 34.0%(13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3년 미만 23.1%(89건), 5~10년 미만 11.2%(43건), 3~6개월 미만 10.4%(40건)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다른 유형의 시설보다 3년 이상 피해가 지속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10년 미만의 사례가 많았다. 교육기관의 경우 학대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이 많았으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과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역시 1년 이내의 단기간 학대가 지속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9] 집단이용시설 학대 지속기간

(단위: 건, %)

구분	교육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 외 보호시설 (쉼터)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시설		정신 재활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관련 시설		미신고 시설		계	
3개월 미만	27	7.0	43	11.2	28	7.3	5	1.3	-	-	11	2.9	-	-	2	0.5	8	2.1	5	1.3	2	0.5	-	-	131	34.0
3~6개월 미만	22	5.7	10	2.6	-	-	-	-	-	-	6	1.6	-	-	1	0.3	1	0.3	-	-	-	-	-	-	40	10.4
6~12개월 미만	10	2.6	8	2.1	2	0.5	1	0.3	1	0.3	8	2.1	-	-	-	-	1	0.3	1	0.3	-	-	-	-	32	8.3
1~3년 미만	10	2.6	61	15.8	3	0.8	-	-	-	-	-	-	2	0.5	-	-	1	0.3	-	-	12	3.1	-	-	89	23.1
3~5년 미만	-	-	7	1.8	-	-	-	-	-	-	2	0.5	-	-	-	-	2	0.5	-	-	-	-	5	1.3	16	4.2
5~10년 미만	-	-	31	8.1	-	-	-	-	-	-	2	0.5	-	-	-	-	-	-	2	0.5	-	-	8	2.1	43	11.2
10년 이상	-	-	27	7.0	-	-	-	-	-	-	-	-	-	-	-	-	-	-	-	-	-	-	7	1.8	34	8.8
계	69	17.9	187	48.6	33	8.6	6	1.6	1	0.3	29	7.5	2	0.5	3	0.8	13	3.4	8	2.1	14	3.6	20	5.2	385	100.0

## 바.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 1)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집단이용시설의 장애인학대 유형은 경제적 착취가 27.5%(106건)로 가장 많았는데 전년도(10.7%, 38건)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중복학대 25.5%(98건), 신체적 학대 14.8%(57건), 성적 학대 13.0%(50건), 정서적 학대 10.6%(41건) 그리고 방임은 8.6%(33건)이었다.

전체 장애인학대 유형이 중복 학대(25.3%), 경제적 착취(23.2%), 신체적 학대(20.5%), 성적 학대(15.2%), 정서적 학대(10.6%), 방임(5.1%) 순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경제적 착취가 높게 나타나면서 한 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발생하는 중복 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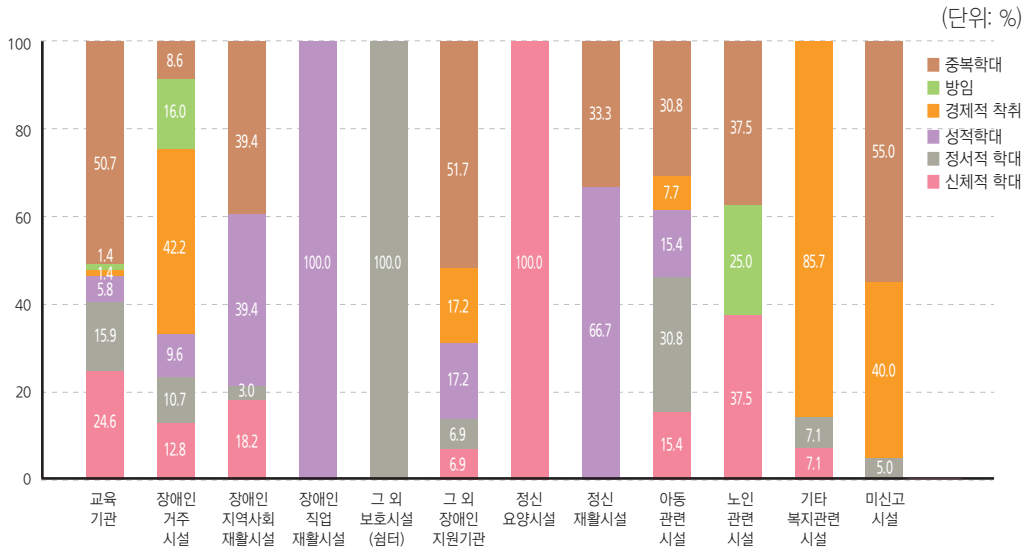
시설유형별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경제적 착취가 42.2%(79건)로 가장 많았고, 방임 16.0%(30건), 신체적 학대 12.8%(2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관은 중복 학대 50.7%(35건), 신체적 학대 24.6%(17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중복 학대· 성적 학대가 각각 39.4%(13건), 신체적 학대가 18.2%(6건) 등의 순이었다.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가 각각 17.2%(5건)으로 나타났다.

[표 5-60]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구분	교육 기관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 외 보호시설 (쉼터)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 시설		정신 재활 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관련 시설		미신고 시설		계	
신체적 학대	17	24.6	24	12.8	6	18.2	-	-	-	-	2	6.9	2	100.0	-	-	2	15.4	3	37.5	1	7.1	-	-	57	14.8
정서적 학대	11	15.9	20	10.7	1	3.0	-	-	1	100.0	2	6.9	-	-	-	-	4	30.8	-	-	1	7.1	1	5.0	41	10.6
성적 학대	4	5.8	18	9.6	13	39.4	6	100.0	-	-	5	17.2	-	-	2	66.7	2	15.4	-	-	-	-	-	-	50	13.0
경제적 착취	1	1.4	79	42.2	-	-	-	-	-	-	5	17.2	-	-	-	-	1	7.7	-	-	12	85.7	8	40.0	106	27.5
방임	1	1.4	30	16.0	-	-	-	-	-	-	-	-	-	-	-	-	-	-	2	25.0	-	-	-	-	33	8.6
중복학대	35	50.7	16	8.6	13	39.4	-	-	-	-	15	51.7	-	-	1	33.3	4	30.8	3	37.5	-	-	11	55.0	98	25.5
계	69	100.0	187	100.0	33	100.0	6	100.0	1	100.0	29	100.0	2	100.0	3	100.0	13	100.0	8	100.0	14	100.0	20	100.0	385	100.0

[그림 5-28]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2)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이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를 각각의 학대유형으로 보면 총 515건이다.

집단이용시설의 장애인학대 유형에서는 신체적 학대가 28.5%(147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26.2%(135건), 경제적 착취 24.3%(125건), 성적 학대 11.5%(59건), 방임 9.5%(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장애인학대 유형이 신체적 학대(30.8%), 정서적 학대(24.8%), 경제적 착취(23.9%), 성적 학대(14.1%), 방임(6.4%) 순으로 나타난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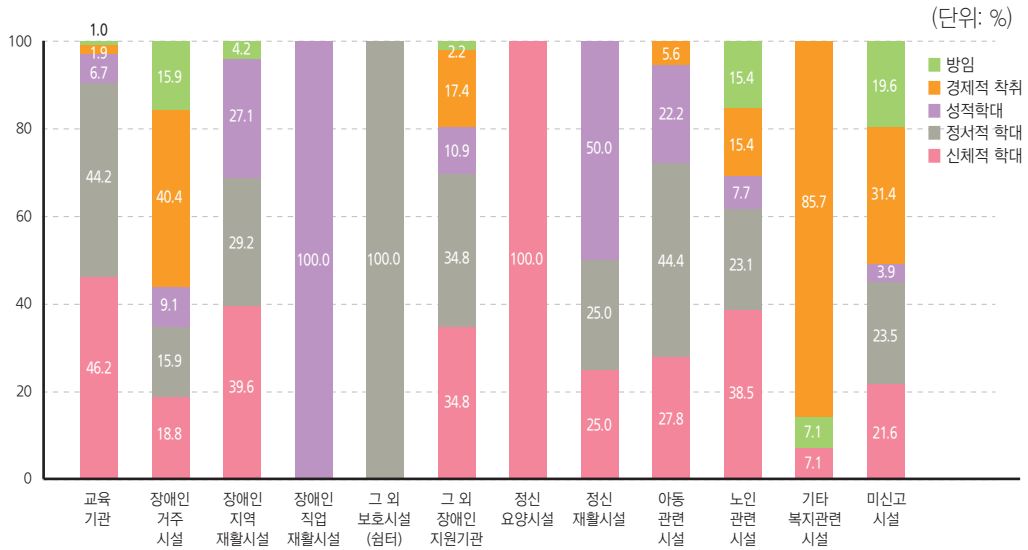
시설유형별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경제적 착취 40.4%(84건), 신체적 학대 18.8%(39건), 정서적 학대·방임이 각각 15.9%(33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기관의 경우 신체적 학대가 46.2%(48건)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가 44.2%(46건)로 그 뒤를 이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도 신체적 학대 39.6%(19건), 정서적 학대 29.2%(14건) 등의 순이었으며,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은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가 각각 34.8%(16건)로 높게 나타났다.

[표 5-61]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구분	교육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 외 보호시설 (쉼터)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시설		정신 재활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관련 시설		미신고 시설		계	
신체적 학대	48	46.2	39	18.8	19	39.6	-	-	-	-	16	34.8	2	100.0	1	25.0	5	27.8	5	38.5	1	7.1	11	21.6	147	28.5
정서적 학대	46	44.2	33	15.9	14	29.2	-	-	1	100.0	16	34.8	-	-	1	25.0	8	44.4	3	23.1	1	7.1	12	23.5	135	26.2
성적 학대	7	6.7	19	9.1	13	27.1	6	100.0	-	-	5	10.9	-	-	2	50.0	4	22.2	1	7.7	-	-	2	3.9	59	11.5
경제적 착취	2	1.9	84	40.4	-	-	-	-	-	-	8	17.4	-	-	-	-	1	5.6	2	15.4	12	85.7	16	31.4	125	24.3
방임	1	1.0	33	15.9	2	4.2	-	-	-	-	1	2.2	-	-	-	-	-	-	2	15.4	-	-	10	19.6	49	9.5
계	104	100.0	208	100.0	48	100.0	6	100.0	1	100.0	46	100.0	2	100.0	4	100.0	18	100.0	13	100.0	14	100.0	51	100.0	515	100.0

[그림 5-29]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사.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 1)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로 보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이 56.0%(116건)로 가장 많았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5.1%(52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7.2%(15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1.9%(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62.6%, 124건)와 마찬가지로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이 가장 많았으나 사례건수와 비율은 줄었다. 또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사례는 전년도(109건) 보다 1.8%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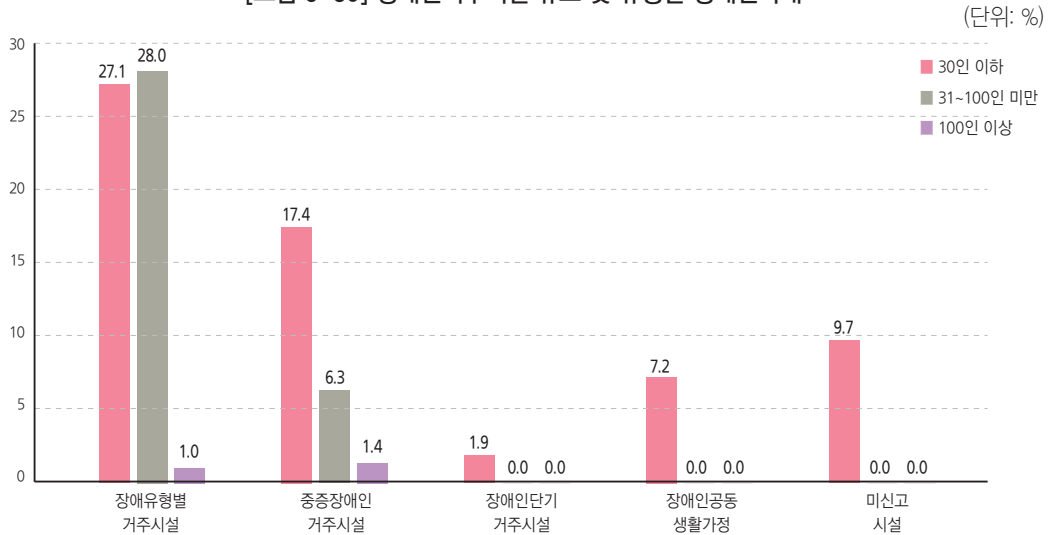
장애인거주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30인 이하 시설 사례가 63.3%(131건)로 가장 많았으며, 31인~100인 미만 시설 34.3%(71건), 100인 이상 시설 2.4%(5건) 순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31인~100인 미만 시설 사례(52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2]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단위: 건, %)

구분		30인 이하		31인~100인 미만		100인 이상		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지체장애인	4	1.9	1	0.5	-	-	5	2.4
	지적장애인	52	25.1	57	27.5	2	1.0	111	53.6
	소계	56	27.1	58	28.0	2	1.0	116	56.0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36	17.4	13	6.3	3	1.4	52	25.1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4	1.9	-	-	-	-	4	1.9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5	7.2	-	-	-	-	15	7.2
계		111	53.6	71	34.3	5	2.4	187	90.3
미신고시설		20	9.7	-	-	-	-	20	9.7
총계		131	63.3	71	34.3	5	2.4	207	100.0

[그림 5-30]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2)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운영주체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직영 및 위탁)와 민간(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개인)으로 구분된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주체별 장애인학대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시설이 72.2%(135건)로 가장 많았고, 개인시설 19.3%(36건), 기타법인시설 8.6%(16건)로 나타났다.

[표 5-6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주체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단위: 건, %)

구분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개인		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지체장애인	1	0.5	4	2.1	-	-	5	2.7
	지적장애인	79	42.2	-	-	32	17.1	111	59.4
	소계	80	42.8	4	2.1	32	17.1	116	62.0
중증장애인거주시설		47	25.1	5	2.7	-	-	52	27.8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	1.1	2	1.1	-	-	4	2.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6	3.2	5	2.7	4	2.1	15	8.0
계		135	72.2	16	8.6	36	19.3	187	100.0

### 3)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례는 208건이며 이 중 피해장애인이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유형을 각각의 학대 유형으로 보면 총 259건이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유형은 경제적 착취,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6.2%(16건)로 가장 많았고,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이 5.8%(15건)로 그 뒤를 이었다. 정서적 학대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이 6.9%(18건)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시설이 4.6%(12건)로 그 뒤를 이었다. 성적 학대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이 4.6%(12건)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이 17.0%(44건), 방임 역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이 10.8%(28건)로 가장 많았다.

[표 5-64]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계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지체장애인	1	0.4	4	1.5	-	-	-	-	-	-	5	1.9
	지적장애인	15	5.8	18	6.9	12	4.6	44	17.0	28	10.8	117	45.2
	소계	16	6.2	22	8.5	12	4.6	44	17.0	28	10.8	122	47.1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6	6.2	4	1.5	6	2.3	27	10.4	5	1.9	58	22.4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3	1.2	2	0.8	-	-	-	-	-	-	5	1.9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4	1.5	5	1.9	1	0.4	13	5.0	-	-	23	8.9
계		39	15.1	33	12.7	19	7.3	84	32.4	33	12.7	208	80.3
미신고시설		11	4.2	12	4.6	2	0.8	16	6.2	10	3.9	51	19.7
총계		50	19.3	45	17.4	21	8.1	100	38.6	43	16.6	259	100.0



## 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조치

### 1) 응급조치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에 대한 응급조치는 총 17건 이루어졌으며 쉼터(7건), 거주시설(8건), 기타(2건) 장소를 이용했다.

[표 5-65]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응급조치

(단위: 건, %)

구분	교육 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 외 보호시설 (쉼터)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요양시설	정신 재활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관련 시설	미신고 시설	계		
쉼터	-	-	2	11.8	-	-	-	-	-	-	-	5	29.4	7	41.2
거주시설	-	-	-	-	-	-	-	-	-	-	-	8	47.1	8	47.1
기타	-	-	-	-	-	-	-	-	-	-	-	2	11.8	2	11.8
계	-	-	2	11.8	-	-	-	-	-	-	-	15	88.2	17	100.0

### 2)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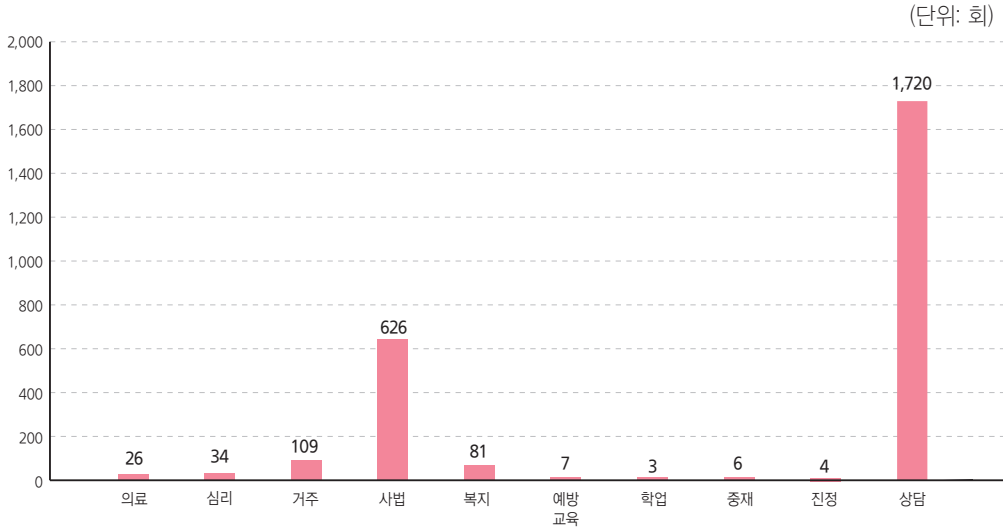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2,616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다. 상담지원이 1,720회(65.7%)로 가장 많았고, 사법지원 626회(23.9%), 거주지원 109회(4.2%), 복지지원 81회(3.1%), 심리지원 34회(1.3%) 등의 순이었다.

[표 5-66]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회, %)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예방교육	학업	중재	진정	상담	계
26	34	109	626	81	7	3	6	4	1,720	2,616
1.0	1.3	4.2	23.9	3.1	0.3	0.1	0.2	0.2	65.7	100.0

[그림 5-31]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은 총 626회 실시하였다. 기타지원을 제외하고 절차지원이 159회 (25.4%)로 가장 많았고, 수사외뢰 55회(8.8%), 고발 31회(5.0%), 법률상담 23회(3.7%) 실시하였다.

[표 5-67]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단위: 회, %)

구분	교육 기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 외 보호시설 (쉼터)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정신 재활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복지관련 시설		미신고 시설		계	
	회	%	회	%	회	%	회	%	회	%	회	%	회	%	회	%	회	%	회	%	회	%	회	%
고발	1	0.2	16	2.6	11	1.8	1	0.2	-	-	2	0.3	-	-	-	-	-	-	-	-	-	-	31	5.0
고소대리	-	-	4	0.6	-	-	-	-	-	-	2	0.3	-	-	-	-	-	-	-	-	-	-	6	1.0
수사외뢰	4	0.6	28	4.5	3	0.5	-	-	-	-	3	0.5	-	-	-	-	2	0.3	12	1.9	3	0.5	55	8.8
법률상담	15	2.4	1	0.2	1	0.2	-	-	-	-	4	0.6	1	0.2	1	0.2	-	-	-	-	-	-	23	3.7
절차지원	100	16.0	18	2.9	11	1.8	1	0.2	2	0.3	2	0.3	1	0.2	1	0.2	2	0.3	-	-	21	3.4	159	25.4
소송구조	-	-	-	-	-	-	-	-	-	-	2	0.3	-	-	-	-	-	-	-	-	-	-	2	0.3
후견인 선임	-	-	-	-	-	-	-	-	-	-	2	0.3	-	-	-	-	-	-	-	-	-	-	2	0.3
기타	162	25.9	84	13.4	25	4.0	3	0.5	-	-	27	4.3	-	-	5	0.8	3	0.5	14	2.2	25	4.0	348	55.6
계	282	45.0	151	24.1	51	8.1	5	0.8	2	0.3	44	7.0	2	0.3	7	1.1	7	1.1	26	4.2	49	7.8	626	100.0

## 5. 재학대 사례

### 가. 재학대 피해장애인

#### 1) 성별 및 연령

재학대 피해 장애인의 성별은 여성이 75명(58.6%), 남성이 53명(41.4%)으로 여성이 1.4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애인의 연령은 20대가 49명(38.3%)으로 가장 많았고, 17세 이하 24명(18.8%), 30대 21명(1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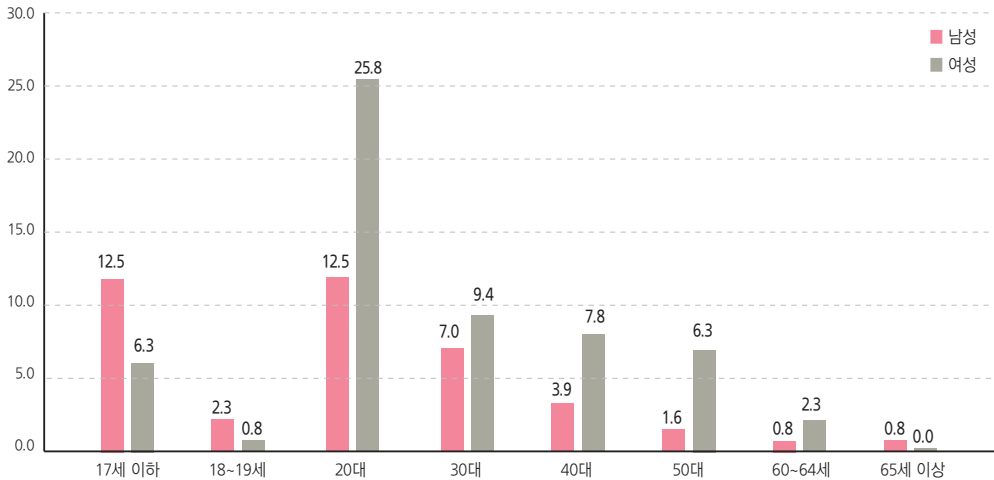
[표 5-68] 재학대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명, %)

구분	19세 이하				20대 (20~29세)		30대 (30~39세)		40대 (40~49세)		50대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계	
	17세 이하	18~19세	18~19세	18~19세	17세 이하	18~19세	17세 이하	18~19세	17세 이하	18~19세	17세 이하	18~19세	17세 이하	18~19세	17세 이하	18~19세	17세 이하	18~19세
남성	16	12.5	3	2.3	16	12.5	9	7.0	5	3.9	2	1.6	1	0.8	1	0.8	53	41.4
여성	8	6.3	1	0.8	33	25.8	12	9.4	10	7.8	8	6.3	3	2.3	-	-	75	58.6
계	24	18.8	4	3.1	49	38.3	21	16.4	15	11.7	10	7.8	4	3.1	1	0.8	128	100.0

[그림 5-32] 재학대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



## 2) 장애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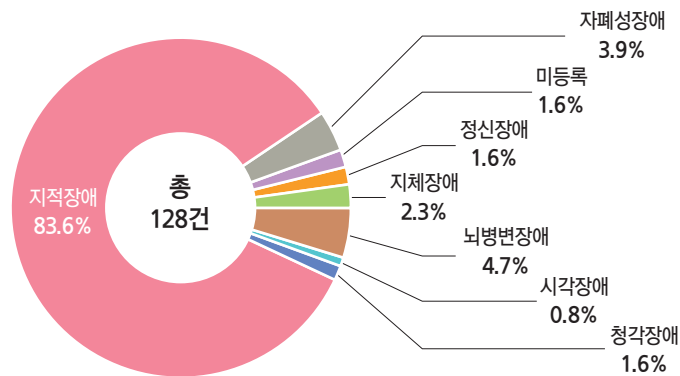
재학대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83.6%(107건)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학대사례의 지적장애의 비율(67.3%)보다 16.3%p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뇌병변장애 4.7%(6건), 자폐성장애 3.9%(5건), 지체장애 2.3%(3건) 등의 순이었으며, 전체 학대사례와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높았다.

[표 5-69] 재학대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단위: 건, %)

장애유형	건수	비율
지체장애	3	2.3
뇌병변장애	6	4.7
시각장애	1	0.8
청각장애	2	1.6
지적장애	107	83.6
자폐성장애	5	3.9
정신장애	2	1.6
미등록	2	1.6
계	128	100.0

[그림 5-33] 재학대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 3) 거주유형

재학대 피해장애인의 거주형태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재가와 시설로 나뉜다. 시설이라 함은 다수가 집단으로 거주하고, 관리자가 있는 주거형태로 사회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혹은 생활시설, 미신고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재가라 함은 시설에서 거주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고 당시 재학대 피해장애인이 재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는 85.9%(110건)이었고,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는 14.1%(18건)이었다.

[표 5-70] 재학대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단위: 건, %)

재가		시설		계	
110	85.9	18	14.1	128	100.0

###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재학대 피해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68.0%(87건)로 가장 많았으며, 비수급자가 30.5%(39건), 차상위수급자는 1.6%(2건)이었다. 이는 전체 학대사례와 마찬가지로 수급자 가정에서 재학대 사례가 더 많았음을 보여준다. 수급자일 경우 사회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이 장애인이 있는 수급자 가정에 대한 학대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학대 상황 발생 시 신고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5-71] 재학대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단위: 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비수급자	계
87	2	39	128
68.0	1.6	30.5	100.0

## 나. 재학대 행위자

###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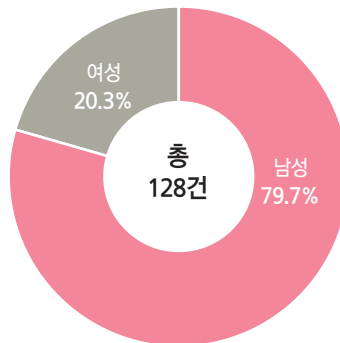
재학대 학대행위자의 성별은 남성이 79.7%(102명), 여성이 20.3%(26명)로 전체 학대사례(남성 69.9%, 여성 30.1%)와 비교하면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표 5-72] 재학대 행위자 성별

(단위: 명, %)

남성		여성		계	
102	79.7	26	20.3	128	100.0

[그림 5-34] 재학대 행위자 성별



## 2) 연령

재학대 행위자의 연령은 40대가 20.3%(26명)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18.0%(23명), 60대 14.1%(1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19세 이하인 미성년자가 행위자인 경우도 8.6%(11명)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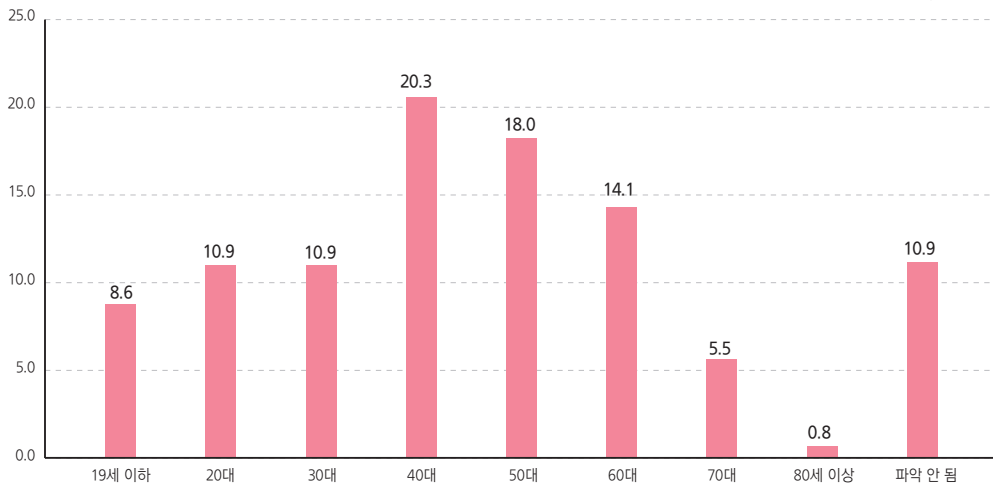
[표 5-73] 재학대 행위자 연령

(단위: 명, %)

연령	명수	비율
19세 이하	11	8.6
20대(20~29세)	14	10.9
30대(30~39세)	14	10.9
40대(40~49세)	26	20.3
50대(50~59세)	23	18.0
60대(60~69세)	18	14.1
70대(70~79세)	7	5.5
80세 이상	1	0.8
파악 안 됨	14	10.9
계	128	100.0

[그림 5-35] 재학대 행위자 연령

(단위: %)



### 3)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

재학대 행위자는 부(父)·모(母)가 27.4%(35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25.8%(33건), 모르는 사람 10.9%(1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학대행위자와 재학대 피해장애인의 관계를 보면 타인 46.1%(59건), 가족 및 친인척 41.4%(53건),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11.7%(15건) 순이었다.

재학대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와 같이 타인의 비율이 가족 및 친인척 및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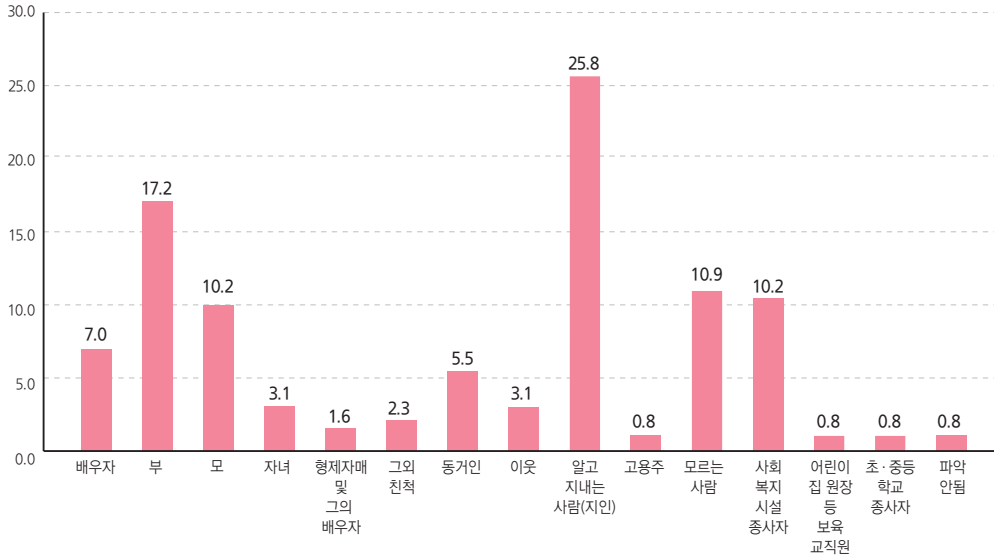
[표 5-74]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

(단위: 건, %)

관계		건수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9	7.0
	부	22	17.2
	모	13	10.2
	자녀	4	3.1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1.6
	그 외 친척	3	2.3
	소계	53	41.4
타인	동거인	7	5.5
	이웃	4	3.1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33	25.8
	고용주	1	0.8
	모르는 사람	14	10.9
	소계	59	46.1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3	10.2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1	0.8
	초·중등학교 종사자	1	0.8
	소계	15	11.7
파악 안 됨		1	0.8
계		128	100

[그림 5-36]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단위: %)



## 다. 재학대 발생현황

### 1) 재학대 발생장소

재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53.9%(69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학대행위자 거주지 9.4%(12건), 상업시설 7.8%(10건), 장애인거주시설 7.0%(9건)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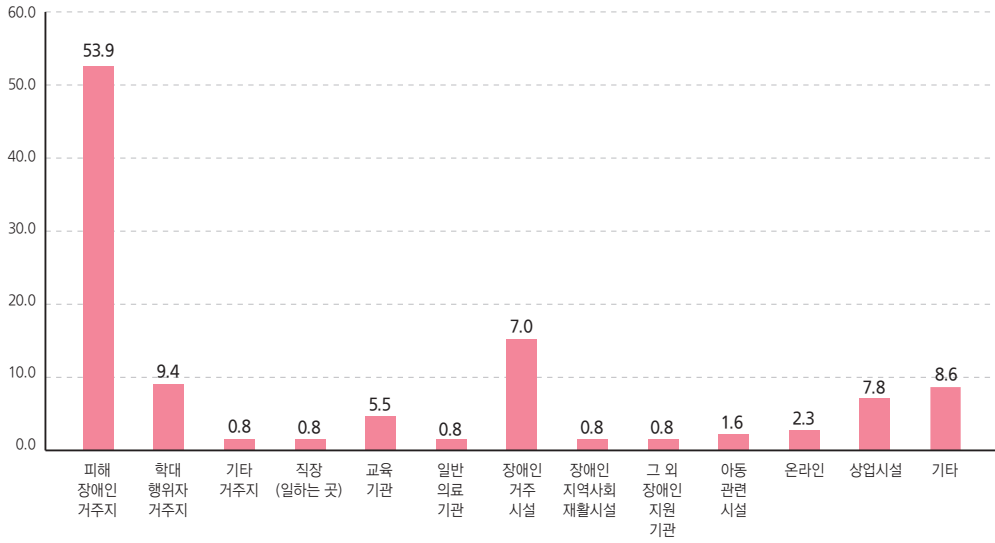
[표 5-75] 재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

발생장소		건수	비율
피해장애인 거주지		69	53.9
학대행위자 거주지		12	9.4
기타 거주지		1	0.8
직장(일하는 곳)		1	0.8
교육기관		7	5.5
일반 의료기관		1	0.8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9	7.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	0.8
	소계	10	7.8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1	0.8
아동관련시설		2	1.6
온라인		3	2.3
상업시설		10	7.8
기타		11	8.6
계		128	100.0

[그림 5-37] 재학대 발생장소

(단위: %)



## 2) 재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재학대의 지속기간과 발생빈도를 보면 우선,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이 50.8%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사례는 75.8%로 전체 학대사례(3개월 미만 45.1%, 1년 미만 64.9%)의 지속기간보다 단기간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발생빈도 역시 1~2회가 39.1%로 가장 많았다.

[표 5-76] 재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단위: 건, %)

구분		발생빈도											
		거의 매일		10회 이상		10회 미만		5회 미만		1~2회		계	
지속기간	3개월 미만	-	-	4	3.1	7	5.5	9	7.0	45	35.2	65	50.8
	3~6개월 미만	-	-	4	3.1	5	3.9	4	3.1	2	1.6	15	11.7
	6~12개월 미만	2	1.6	7	5.5	1	0.8	4	3.1	3	2.3	17	13.3
	1~3년 미만	5	3.9	8	6.3	2	1.6	7	5.5	-	-	22	17.2
	3~5년 미만	-	-	-	-	-	-	1	0.8	-	-	1	0.8
	5~10년 미만	3	2.3	2	1.6	-	-	-	-	-	-	5	3.9
	10년 이상	2	1.6	1	0.8	-	-	-	-	-	-	3	2.3
계		12	9.4	26	20.3	15	11.7	25	19.5	50	39.1	128	100.0

## 라 재학대 학대유형

### 1) 재학대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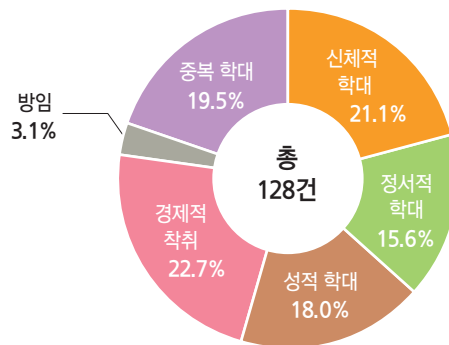
재학대 학대유형은 경제적 착취 22.7%(29건), 신체적 학대 21.1%(27건), 중복 학대 19.5%(25건), 성적 학대 18.0%(23건), 정서적 학대 15.6%(20건), 방임 3.1%(4건)으로 나타났으며, 유기는 없었다.

[표 5-77] 재학대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27	21.1
정서적 학대	20	15.6
성적 학대	23	18.0
경제적 착취	29	22.7
방임	4	3.1
중복 학대	25	19.5
계	128	100.0

[그림 5-38] 재학대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 재학대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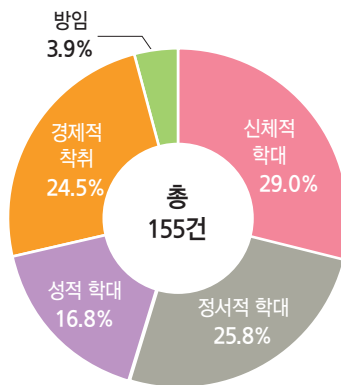
재학대 사례 총 128건 중 아동이 중복하여 경험한 학대를 각각의 학대유형에 포함하면 총 155건이다. 신체적 학대가 29.0%(45건)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25.8%(40건), 경제적 착취 24.5%(38건), 성적 학대 16.8%(26건), 방임 3.9%(6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5-78] 재학대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45	29.0
정서적 학대	40	25.8
성적 학대	26	16.8
경제적 착취	38	24.5
방임	6	3.9
계	155	100.0

[그림 5-39] 재학대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마. 재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치

### 1) 응급조치

재학대 사례 128건 중 응급조치는 18건(14.1%) 실시하였으며 모두 심터를 이용하였다.

[표 5-79] 재학대 피해장애인 응급조치

(단위: 건, %)

심터	계
18	18
100.0	100.0

## 2) 재학대 피해장애인 지원

재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총 2,152회 이뤄졌다. 상담지원이 1,376(63.9%)로 가장 많았고, 사법지원 309회(14.4%), 복지지원 182회(8.5%) 등의 순으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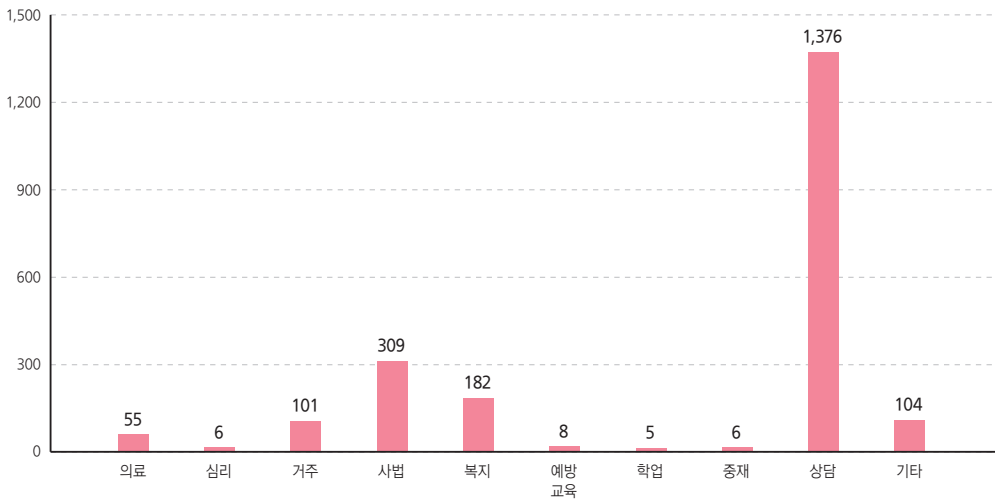
[표 5-80] 재학대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회, %)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예방교육	학업	중재	상담	기타	계
55	6	101	309	182	8	5	6	1,376	104	2,152
2.6	0.3	4.7	14.4	8.5	0.4	0.2	0.3	63.9	4.8	100.0

[그림 5-40] 재학대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회)



재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은 총 309회 실시했으며, 이 중 기타지원 210회(68.0%), 절차지원 69회(22.3%), 고발 13회(4.2%) 등의 순으로 실시하였다.

[표 5-81] 재학대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단위: 회, %)

고발	고소대리	수사의뢰	법률상담	절차지원	소송구조	기타	계
13	3	2	11	69	1	210	309
4.2	1.0	0.6	3.6	22.3	0.3	68.0	100.0



# 6

## 일반사례 현황

---

1. 일반사례 유형
2. 지역 및 기관별 일반사례 유형
3. 차별사례 현황



## 제6장

## 일반사례 현황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의심사례 외에 차별, 정보문의, 불만·민원 등의 일반사례를 접수한다. 일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업무 외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차별, 장애인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1. 일반사례 유형

2023년 신고접수된 일반사례는 2,528건으로 전체 신고(5,497건)의 46.0%를 차지했다. 일반사례 유형을 보면 정보문의가 1,478건(58.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특정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례 605건(23.9%), 불만 및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 245건(9.7%), 장애인차별 사례 200건(7.9%)이었다.

[표 6-1] 일반사례 유형

(단위: 건, %)

차별	정보문의	불만·민원	기타	계
200	1,478	245	605	2,528
7.9	58.5	9.7	23.9	100.0

## 2. 지역 및 기관별 일반사례 유형

지역 및 기관별 일반사례의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서울이 697건(27.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경기 485건(19.2%), 부산 186건(7.4%), 대구 151건(6.0%) 등의 순이었다.

[표 6-2] 지역 및 기관별 일반사례 유형

(단위: 건, %)

구분	차별		정보문의		불만·민원		기타		계		
서울	22	11.0	507	34.3	37	15.1	131	21.7	697	27.6	
부산	4	2.0	137	9.3	15	6.1	30	5.0	186	7.4	
대구	5	2.5	127	8.6	16	6.5	3	0.5	151	6.0	
인천	10	5.0	64	4.3	20	8.2	23	3.8	117	4.6	
광주	5	2.5	22	1.5	13	5.3	21	3.5	61	2.4	
대전	1	0.5	43	2.9	6	2.4	47	7.8	97	3.8	
울산	1	0.5	18	1.2	10	4.1	23	3.8	52	2.1	
세종	2	1.0	18	1.2	10	4.1	14	2.3	44	1.7	
경기	경기남부	63	31.5	119	8.1	34	13.9	115	19.0	331	13.1
	경기북부	37	18.5	77	5.2	9	3.7	31	5.1	154	6.1
	소계	100	50.0	196	13.3	43	17.6	146	24.1	485	19.2
강원	1	0.5	83	5.6	9	3.7	5	0.8	98	3.9	
충북	충북	10	5.0	60	4.1	4	1.6	18	3.0	92	3.6
	충북북부	2	1.0	24	1.6	1	0.4	7	1.2	34	1.3
	소계	12	6.0	84	5.7	5	2.0	25	4.1	126	5.0
충남	4	2.0	62	4.2	5	2.0	9	1.5	80	3.2	
전북	8	4.0	42	2.8	22	9.0	26	4.3	98	3.9	
전남	10	5.0	12	0.8	9	3.7	23	3.8	54	2.1	
경북	2	1.0	14	0.9	-	-	8	1.3	24	0.9	
경남	11	5.5	14	0.9	7	2.9	59	9.8	91	3.6	
제주	2	1.0	35	2.4	18	7.3	12	2.0	67	2.7	
계	200	100.0	1,478	100.0	245	100.0	605	100.0	2,528	100.0	

### 3. 차별사례 현황

#### 가. 차별사례 유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차별과 관련된 사례를 접수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차별금지 영역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한다. 세부유형으로는 고용, 교육,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교통수단, 정보접근·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 사법·행정, 참정권, 기타(모·부성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가 있다.

2023년 접수된 차별사례는 200건으로 전년도(182건)보다 9.9% 증가하였다. 세부유형을 보면 기타사례 37건(18.5%), 고용 36건(18.0%), 재화·용역일반사례 30건(15.0%), 사법·행정사례 22건(11.0%) 등의 순이었다.

[표 6-3] 차별사례 유형

(단위: 건, %)

고용	교육	재화· 용역 일반	보험· 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 예술·체육	사법·행정	참정권	기타	계
36	19	30	11	16	17	5	7	22	-	37	200
18.0	9.5	15.0	5.5	8.0	8.5	2.5	3.5	11.0	-	18.5	100.0

## 나. 차별사례 지원결과

차별사례가 접수되면 사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데 세부적으로 개선요구(행정처분 요구 포함), 고발·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소송구조, 조정·중재, 정보 제공, 조사 중 해결, 정서적 지지, 타기관 및 자원 연계, 당사자 대응포기, 기타, 지원 대상 아님 등으로 나뉜다.

차별사례 200건에 대한 지원결과를 보면 정보제공이 39건(19.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조정·중재 21건(10.5%), 당사자 대응포기 19건(9.5%),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18건(9.0%) 등의 순이었다. 진행 중인 사례는 26건(13.0%)이었다.

[표 6-4] 차별사례 지원결과

(단위: 건, %)

처리결과	건수	비율
개선요구(행정처분 요구 포함)	12	6.0
고발·수사의뢰	—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9	4.5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18	9.0
소송구조	—	—
조정·중재	21	10.5
정보 제공	39	19.5
조사 중 해결	17	8.5
정서적 지지	9	4.5
타기관 및 자원 연계	7	3.5
당사자 대응포기	19	9.5
기타	13	6.5
지원 대상 아님	10	5.0
진행 중	26	13.0
계	200	100.0





# 7

## 연도별 장애인학대 현황

---

1. 연도별 신고접수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3.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4. 연도별 학대행위자
5. 연도별 장애인학대유형
6. 연도별 재학대



## 제7장

## 연도별 장애인학대 현황

본 장에서는 지난 6개년의 장애인학대 현황 중 주요 항목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 1. 연도별 신고접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5년 6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2017년 1월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었고, 그해 하반기에 17개 시·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실질적인 장애인학대 신고 및 대응, 피해자 지원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대비 2023년 전체 신고는 50.3% 증가하였다. 특히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018년에 비해 2023년 61.8% 증가하였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발견율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회복에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노력 그리고 다양한 정책 개발과 함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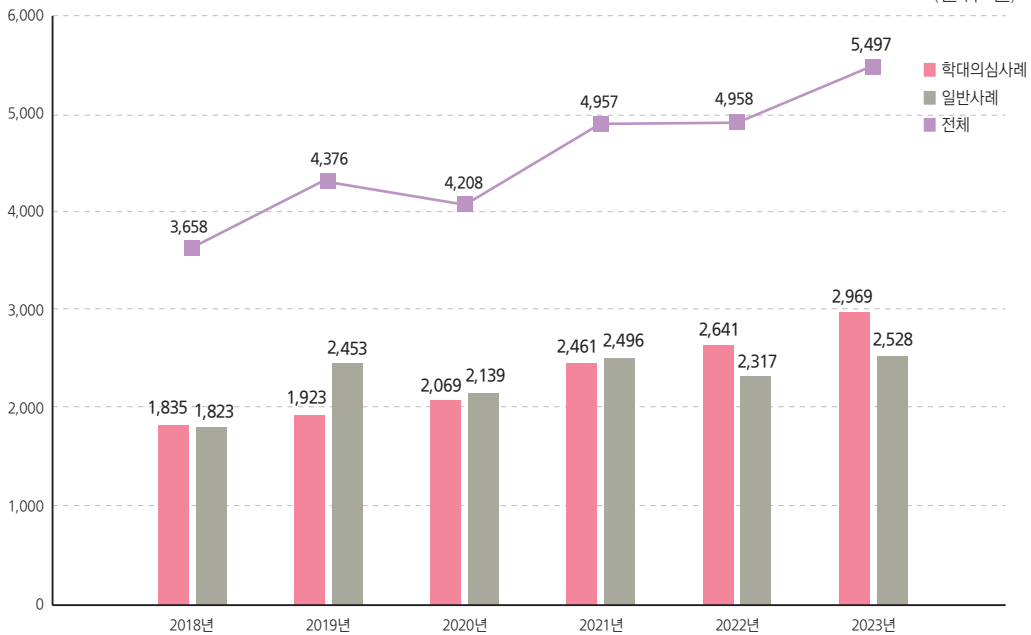
[표 7-1] 연도별 신고접수

(단위: 건, %)

구분	학대의심사례		증감율	일반사례		증감율	계	증감율	
2018년	1,835	50.2	-	1,823	49.8	-	3,658	100.0	-
2019년	1,923	43.9	4.8	2,453	56.1	34.6	4,376	100.0	19.6
2020년	2,069	49.2	7.6	2,139	50.8	▲12.8	4,208	100.0	▲3.8
2021년	2,461	49.6	18.9	2,496	50.4	16.7	4,957	100.0	17.8
2022년	2,641	53.3	7.3	2,317	46.7	▲7.2	4,958	100.0	-
2023년	2,969	54.0	12.4	2,528	46.0	9.1	5,497	100.0	10.9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단위: 건)



##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신고자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2019년·2022년은 증가, 2018년·2021년·2023년은 감소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매년 신고 건수가 소폭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 2018년 가장 높은 신고 건수를 보였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신고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 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2021년 6월 30일부터 신고의무자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1년에 1회 신고의무자 교육 수강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율에 비해 낮으나 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가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12.2% 증가하여 신고의무자 교육의 효과가 드러난 것으로 보였으나 2023년도에 신고율이 7.2% 감소하여 신고의무자 교육 도입으로 인한 컨벤션 효과처럼 보인다. 향후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에 대해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본인 신고율로 2018년 10.6%(194건)이었으나 2023년 17.9%(530건)로 173.2%의 증가율을 보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자료를 배포하였으며, 특히 학대 고위험군으로 볼 수 있는 발달장애인 대상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읽기 쉬운 교육 자료들을 제작한 바 있다. 그 외 누구나 읽기 쉬운 형태의 자료들이 다른 기관들에서 제작되었고, 이는 당사자가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런 환경의 영향으로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 당사자를 둘러싼 누군가의 신고도 필요하지만, 피해를 본 당사자가 직접 피해를 인지하고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학대 예방, 인권 교육자료가 제작되어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본인 신고 17.9%를 제외한 82.1%는 본인 외 신고자이므로 이들이 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학대에 대해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표 7-2] 연도별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421	22.9	308	16.0	185	8.9	195	7.9	205	7.8	156	5.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59	14.6	371	14.0	372	12.5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253	13.8	371	19.3	329	15.9	3	0.1	5	0.2	15	0.5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담당자	-	-	-	-	-	-	-	-	-	-	-	-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40	2.2	35	1.8	57	2.8	85	3.5	75	2.8	58	2.0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7	0.4	11	0.6	13	0.6	7	0.3	14	0.5	11	0.4
의료기사	-	-	1	0.1	1	0.0	-	-	-	-	-	-
응급구조사	-	-	-	-	-	-	-	-	-	-	-	-
119구급대의 대원	-	-	-	-	1	0.0	-	-	3	0.1	1	0.0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4	0.2	3	0.2	9	0.4	6	0.2	6	0.2	5	0.2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	-	-	-	-	-	-	-	1	0.0	-	-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	-	2	0.1	4	0.2	3	0.1	1	0.0	1	0.0
유치원 교직원 및 종사자	1	0.1	1	0.1	-	-	1	0.0	2	0.1	3	0.1
초·중등학교 교직원 등	33	1.8	41	2.1	69	3.3	57	2.3	-	-	-	-
초·중등학교 종사자									97	3.7	86	2.9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1	0.1	-	-	-	-	-	-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19	1.0	35	1.8	30	1.4	30	1.2	42	1.6	54	1.8
성매매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1	0.1	3	0.2	-	-	1	0.0	2	0.1	1	0.0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12	0.7	27	1.4	21	1.0	15	0.6	25	0.9	22	0.7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1	0.1	4	0.2	-	-	-	-	2	0.1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	-	2	0.1	-	-	-	-	-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2	0.1	-	-	-	-	5	0.2	2	0.1	1	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	-	-	2	0.1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4	0.2	6	0.3	2	0.1	1	0.0	3	0.1	2	0.1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	-	-	1	0.0	1	0.0	2	0.1	2	0.1
장기요양요원	4	0.2	9	0.5	4	0.2	2	0.1	2	0.1	5	0.2
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담당자									-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	-	-	-	-	-	-	-	5	0.2	5	0.2
소계	802	43.7	858	44.6	728	35.2	771	31.3	865	32.8	802	27.0

신  
고  
의  
무  
자

(단위: 건,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신 고 의 무 자	본인	194	10.6	162	8.4	274	13.2	325	13.2	435	16.5	530	17.9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248	13.5	247	12.8	9	0.4	7	0.3	18	0.7	18	0.6
		부모					97	4.7	144	5.9	171	6.5	211	7.1
		자녀					26	1.3	25	1.0	24	0.9	40	1.3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63	3.0	71	2.9	85	3.2	103	3.5
		그 외 친척					43	2.1	53	2.2	55	2.1	73	2.5
	유관 기관 종사자	일반공무원	408	22.2	379	19.7	50	2.4	108	4.4	85	3.2	70	2.4
		경찰공무원					141	6.8	248	10.1	176	6.7	254	8.6
		공공기관 종사자					20	1.0	11	0.4	11	0.4	13	0.4
		교육기관 종사자					16	0.8	8	0.3	10	0.4	15	0.5
		의료기관 종사자					6	0.3	3	0.1	7	0.3	10	0.3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294	14.2	316	12.8	328	12.4	421	14.2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16	0.8	10	0.4	10	0.4	14	0.5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36	1.7	22	0.9	18	0.7	15	0.5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50	2.4	57	2.3	81	3.1	59	2.0					
	타인	176	9.6	273	14.2	192	9.3	256	10.4	224	8.5	287	9.7	
	파악 안 됨	7	0.4	4	0.2	8	0.4	26	1.1	38	1.4	34	1.1	
	소계	1,033	56.3	1,065	55.4	1,341	64.8	1,690	68.7	1,776	67.2	2,167	73.0	
	계	1,835	100.0	1,923	100.0	2,069	100.0	2,461	100.0	2,641	100.0	2,969	100.0	

### 3.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학대피해자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67.3%)가 가장 많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폐성장애 역시 2018년 2.5%(22건)에서 2023년 6.6%(93건)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3년 전체 장애인구<sup>10)</sup>에서 지적장애는 8.7%, 자폐성장애는 1.6%임에도 이들이 학대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학대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전체 장애인구<sup>11)</sup>에서 지체장애(43.7%)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시각장애(9.4%)와 청각장애(16.4%) 학대피해자가 각각 2%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들에 대한 학대피해가 드러나지 않은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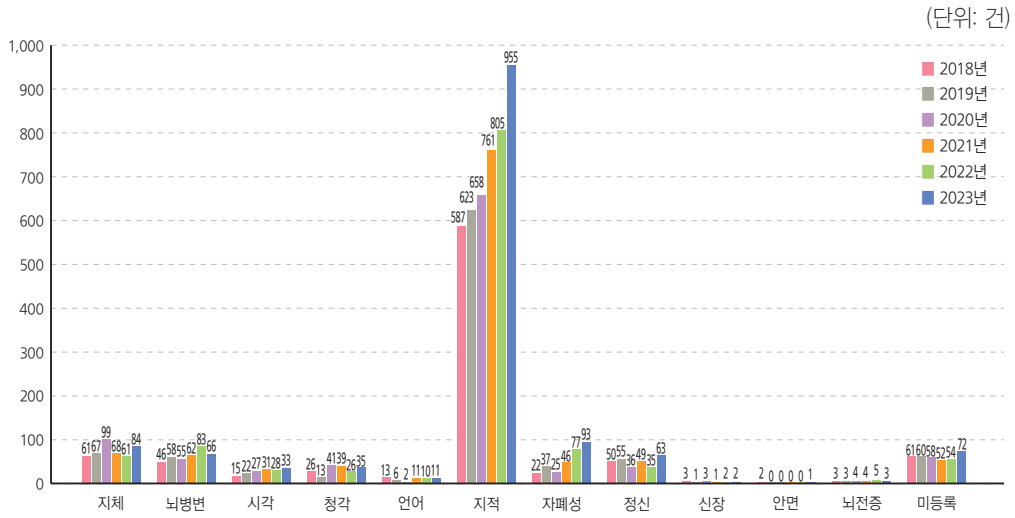
[표 7-3]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단위: 건, %)

장애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체장애	61	6.9	67	7.1	99	9.8	68	6.0	61	5.1	84	5.9
뇌병변장애	46	5.2	58	6.1	55	5.5	62	5.5	83	7.0	66	4.7
시각장애	15	1.7	22	2.3	27	2.7	31	2.8	28	2.4	33	2.3
청각장애	26	2.9	13	1.4	41	4.1	39	3.5	26	2.2	35	2.5
언어장애	13	1.5	6	0.6	2	0.2	11	1.0	10	0.8	11	0.8
지적장애	587	66.0	623	65.9	658	65.3	761	67.7	805	67.9	955	67.3
자폐성장애	22	2.5	37	3.9	25	2.5	46	4.1	77	6.5	93	6.6
정신장애	50	5.6	55	5.8	36	3.6	49	4.4	35	3.0	63	4.4
신장장애	3	0.3	1	0.1	3	0.3	1	0.1	2	0.2	2	0.1
심장장애	-	-	-	-	-	-	-	-	-	-	-	-
호흡기장애	-	-	-	-	-	-	-	-	-	-	-	-
간장애	-	-	-	-	-	-	-	-	-	-	-	-
안면장애	2	0.2	-	-	-	-	-	-	-	-	1	0.1
장루·요루장애	-	-	-	-	-	-	-	-	-	-	-	-
뇌전증장애	3	0.3	3	0.3	4	0.4	4	0.4	5	0.4	3	0.2
미등록	61	6.9	60	6.3	58	5.8	52	4.6	54	4.6	72	5.1
계	889	100.0	945	100.0	1,008	100.0	1,124	100.0	1,186	100.0	1,418	100.0

10), 11) 2023년 12월 말 기준 등록장애인구 2,641,896명(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2023.12.31 기준).

[그림 7-2] 연도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 4. 연도별 학대행위자

장애를 가진 사람은 가족, 주변인, 기관종사자 등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로 부터 학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및 친인척이 학대행위자인 경우는 2018년 30.5%(271건)에서 2023년 35.0%(497건)로 83.4% 증가했다. 타인이 학대행위자인 경우 2022년 감소하였으나 2023년 다시 증가하며, 여전히 많은 수(39.9%, 566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의 비율은 학대행위자 개별 유형에서 20%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에 대한 교육 외에 학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 및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언론을 통해 접하는 장애인학대 사건들에서 학대행위가 장애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거나 초범이라는 이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행위자의 처벌수위가 낮거나 유예되는 사례는 지속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로 장애인학대의 근절을 꾀하는 동시에 다시금 이들이 학대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대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는 노력은 앞으로의 장애인학대 예방 정책에 빠질 수 없다. 가족 및 친인척, 타인, 기관종사자 등 장애인과 가까운 주변사람들이 더 이상 학대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7-4]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 의 관계

(단위: 건, %)

관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52	5.8	40	4.2	63	6.3	78	6.9	75	6.3	100	7.1
	부	115	12.9	113	12.0	90	8.9	134	11.9	125	10.5	143	10.1
	모					66	6.5	70	6.2	87	7.3	92	6.5
	조부모	7	0.8	4	0.4	3	0.3	7	0.6	7	0.6	9	0.6
	자녀	13	1.5	13	1.4	23	2.3	22	2.0	37	3.1	41	2.9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53	6.0	42	4.4	54	5.4	50	4.4	62	5.2	72	5.1
	그 외 친척	31	3.5	41	4.3	32	3.2	46	4.1	39	3.3	40	2.8
	소계	271	30.5	253	26.8	331	32.8	407	36.2	432	36.4	497	35.0
타인	동거인	26	2.9	44	4.7	49	4.9	69	6.1	33	2.8	56	3.9
	이웃	45	5.1	36	3.8	38	3.8	29	2.6	30	2.5	46	3.2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93	10.5	173	18.3	203	20.1	235	20.9	244	20.6	297	20.9
	고용주	58	6.5	48	5.1	62	6.2	33	2.9	24	2.0	29	2.0
	모르는 사람	42	4.7	64	6.8	68	6.7	66	5.9	94	7.9	138	9.7
	소계	264	29.7	365	38.6	420	41.7	432	38.4	425	35.8	566	39.9

관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고 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	-	-	-	-	-	-	-	1	0.1
	장애인거주시설	205	23.1	198	21.0	157	15.6	137	12.2	184	15.5	184	13.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74	8.3	69	7.3	17	1.7	15	1.3	36	3.0	19	1.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	0.6	58	5.2	2	0.2	2	0.1
	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					-	-	1	0.1	-	-	-	-
	그 외 사회복지시설	-	-	-	-	15	1.5	5	0.4	5	0.4	29	2.0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	-	-	-	-	-	-	-	8	0.7	8	0.6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70	7.9	54	5.7	17	1.7	17	1.5	24	2.0	26	1.8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9	0.9	1	0.1	2	0.2	5	0.4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	-	-	-	1	0.1	-	-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					2	0.2	5	0.4	6	0.5	20	1.4
	유치원 교직원 및 종사자					-	-	-	-	1	0.1	1	0.1
	초·중등학교 교직원 등					13	1.3	13	1.2	-	-	-	-
	초·중등학교 종사자					-	-	-	-	28	2.4	16	1.1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	-	1	0.1	-	-	1	0.1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	1	0.1	-	-	1	0.1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	-	-	-	-	1	0.1
	장기요양요원					1	0.1	4	0.4	1	0.1	2	0.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	-	-	-	6	0.5	-	-
소계	237					23.5	258	23.0	304	25.6	316	22.3	
신고 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	일반공무원					-	-	-	-	1	0.1	-	-
	경찰공무원	1	0.1	-	-	-	-	1	0.1				
	교육기관 종사자	11	1.1	2	0.2	1	0.1	4	0.3				
	의료기관 종사자	1	0.1	1	0.1	1	0.1	6	0.4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	0.1	12	1.1	8	0.7	15	1.1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	-	2	0.2	1	0.1	3	0.2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	-	1	0.1	-	-	-	-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	3	0.3	4	0.3	2	0.1				
소계	349	39.3	321	34.0	14	1.4	21	1.9	16	1.3	31	2.2	
본인	-	-	-	-	2	0.2	1	0.1	2	0.2	2	0.1	
파악 안 됨	5	0.6	6	0.6	4	0.4	5	0.4	7	0.6	6	0.4	
계	889	100.0	945	100.0	1,008	100.0	1,124	100.0	1,186	100.0	1,418	100.0	

## 5. 연도별 장애인학대유형

### 가.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중복 학대가 매년 2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학대가 하나의 학대 행위만 발생하기보다 여러 학대 행위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학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을 통한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경제적 착취의 경우도 매년 2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다 2022년 한 해 15.7%로 떨어진 후 2023년 23.2%로 전년도에 비해 76.8%가 증가하였는데, 경제적 착취 중 노동력 착취의 경우 3년 이상 지속기간이 전체 지속기간의 64.2%를 차지함으로 경제적 착취의 장기간 지속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예방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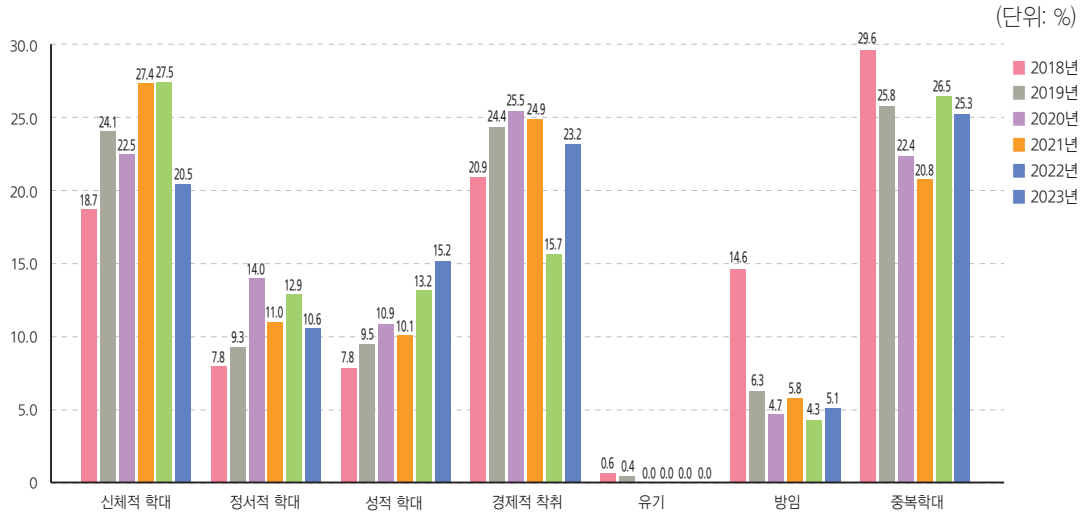
그 외 학대유형에서는 성적 학대의 경우 전체 장애인학대 유형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38.5% 증가하였다.

[표 7-5]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체적 학대	166	18.7	228	24.1	227	22.5	308	27.4	326	27.5	291	20.5
정서적 학대	70	7.9	88	9.3	141	14.0	124	11.0	153	12.9	151	10.6
성적 학대	69	7.8	90	9.5	110	10.9	113	10.1	156	13.2	216	15.2
경제적 착취	186	20.9	231	24.4	257	25.5	280	24.9	186	15.7	329	23.2
유기	5	0.6	4	0.4	-	-	-	-	-	-	-	-
방임	130	14.6	60	6.3	47	4.7	65	5.8	51	4.3	72	5.1
중복 학대	263	29.6	244	25.8	226	22.4	234	20.8	314	26.5	359	25.3
계	889	100.0	945	100.0	1,008	100.0	1,124	100.0	1,186	100.0	1,418	100.0

[그림 7-3]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 나.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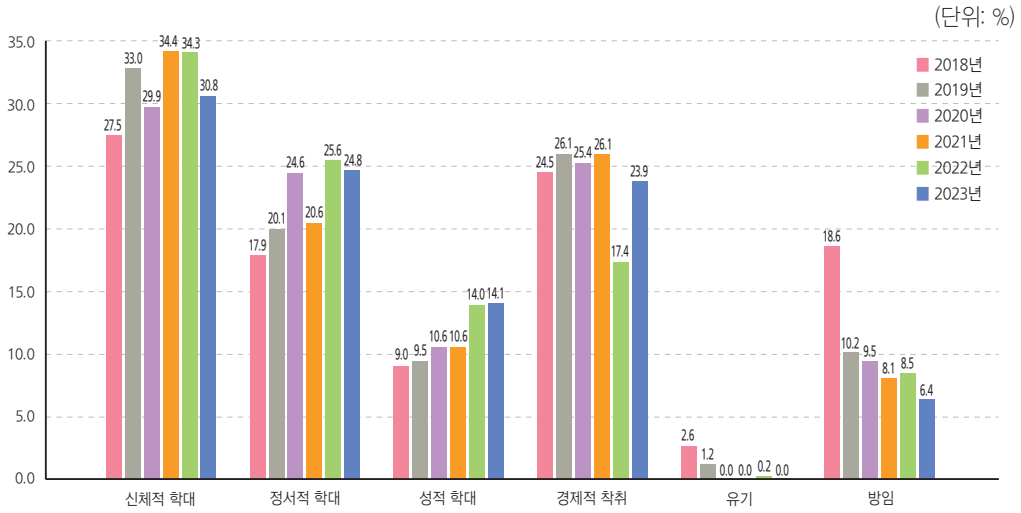
중복 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학대유형에서 신체적 학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021년까지는 경제적 착취였으나 2022년과 2023년은 정서적 학대로 나타났다. 중복 학대를 별도로 구분할 경우 정서적 학대는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중복 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경우 정서적 학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정서적 학대가 다른 학대와 함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제적 착취는 2022년 대비 2023년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학대유형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7-6]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체적 학대	339	27.5	415	33.0	378	29.9	482	34.4	538	34.3	572	30.8
정서적 학대	221	17.9	253	20.1	311	24.6	289	20.6	401	25.6	460	24.8
성적 학대	111	9.0	119	9.5	134	10.6	149	10.6	219	14.0	261	14.1
경제적 착취	302	24.5	328	26.1	321	25.4	366	26.1	273	17.4	443	23.9
유기	32	2.6	15	1.2	-	-	-	-	3	0.2	-	-
방임	229	18.6	128	10.2	120	9.5	114	8.1	133	8.5	119	6.4
계	1,234	100.0	1,258	100.0	1,264	100.0	1,400	100.0	1,567	100.0	1,855	100.0

[그림 7-4] 연도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 6. 연도별 재학대

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 개입종료되었다가 다시 신고접수되어 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재학대 사례’라고 한다. 재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49건에서 2023년 128건으로 증가하여, 3년 동안 약 2.6 배 증가했다. 재학대 비율도 함께 증가하여 2020년 4.9%에서 2023년 9.0%로 상승했으며, 이는 전체 학대 판정 사례 중 재학대 사례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재학대 사례는 학대 상황이 반복되는 환경적 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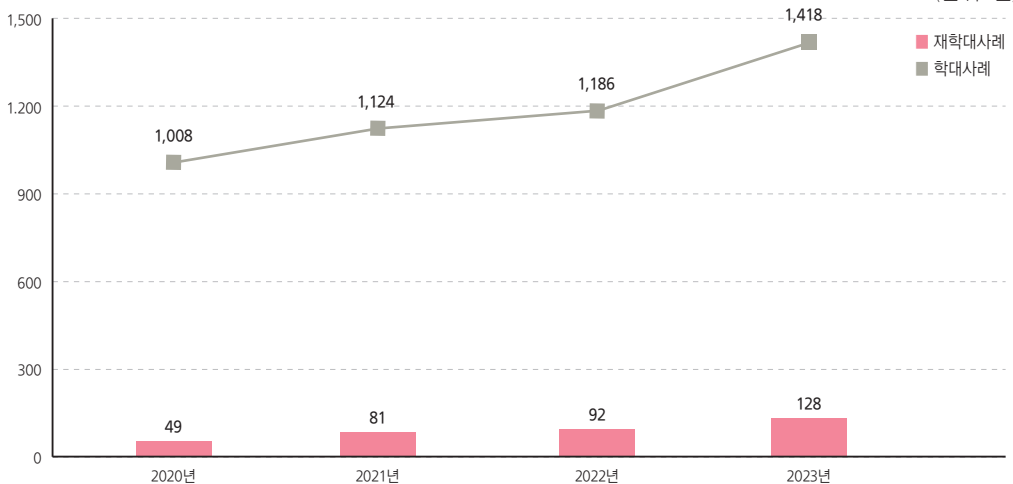
[표 7-7] 연도별 재학대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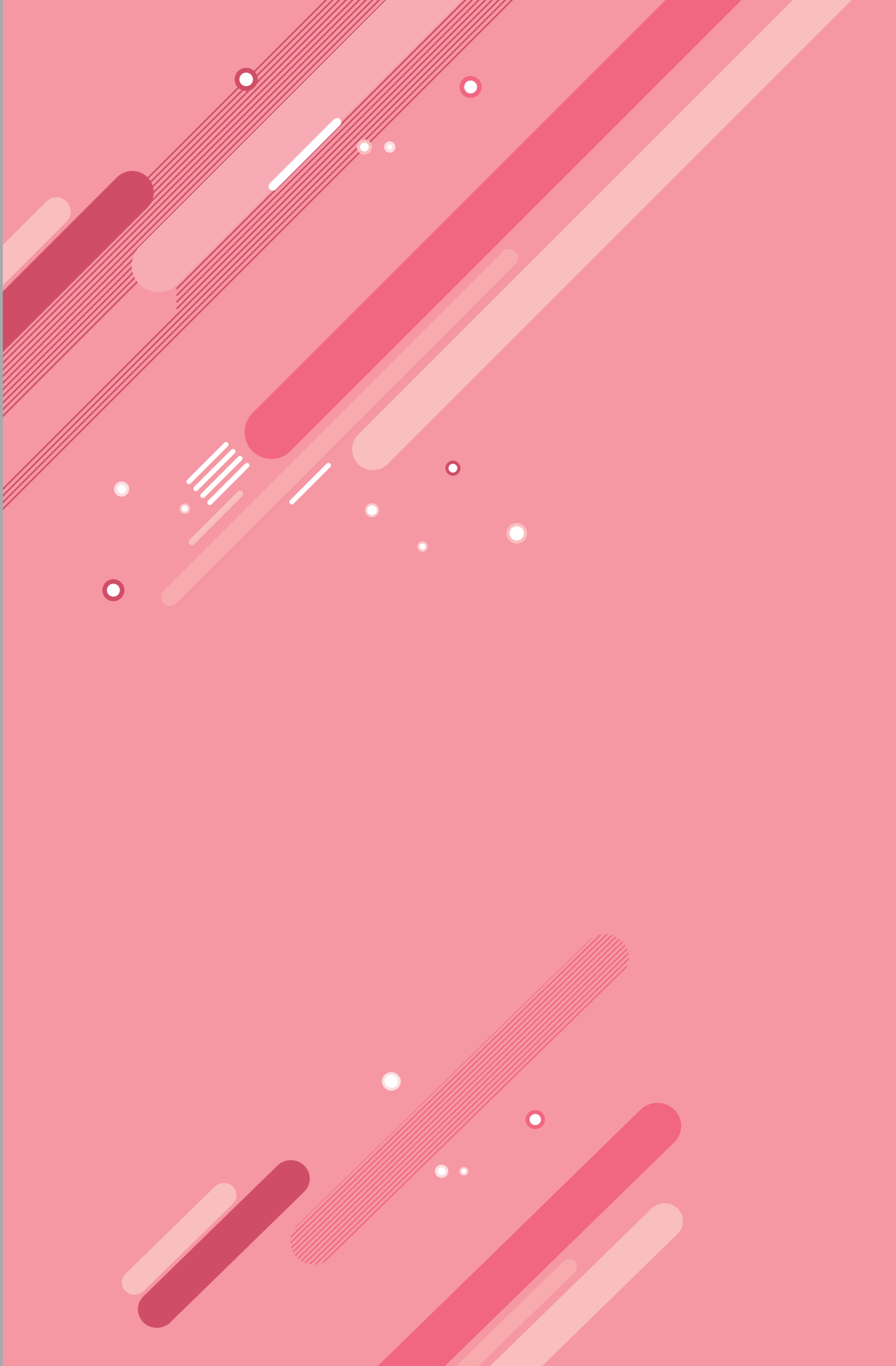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학대사례	1,008	1,124	1,186	1,418
재학대건수	49	81	92	128
학대사례 중 재학대 비율	4.9	7.2	7.8	9.0

[그림 7-5] 연도별 재학대

(단위: 건)









# 부록

---

1. 주요용어 설명
  2.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및 현황



# 부록

## 1. 주요용어 설명

### 기본개념

- ❖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 장애유형: 장애유형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분류되고, 세부적으로 15가지 유형으로 나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장애유형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주요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정신장애

- ❖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그리고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 ❖ 장애정도: 2019년 7월부터 1~6급의 등급으로 장애 정도를 구분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현재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조사, 응급보호, 사후관리 등의 장애인학대 대응 업무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
- ❖ 장애인학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구분	개념
신체적 학대	폭행, 상해, 감금 등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정서적 학대	협박, 괴롭힘, 모욕 등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성적 학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장애인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한 재산·노동력의 착취, 재산적 권리의 침해 등 장애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장애인을 버리는 행위
방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거나 장애인이 자신에 대한 보호·치료 등을 포기·거부하는 행위

- \* 중복 학대: 하나의 학대 사건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의 여러 학대유형이 동반되는 경우
- \* 노동력 착취: 경제적 착취의 대표적 행위 중 하나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가로채는 등 피해자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 \* 보호의무자: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 ❖ 피해장애인: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
- ❖ 학대행위자: 장애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
- ❖ 재가: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함
- ❖ 집단이용시설: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 등을 말함.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교육기관, 미신고시설 등이 이에 해당

## 신고접수

- ❖ 신고접수: 장애인학대(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포함)가 의심되는 사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
- ❖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
- ❖ 일반사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 중 차별, 개인적 분쟁, 정보 문의 등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요소가 없는 사례
- ❖ 인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신고 이외의 경로로 장애인학대 사건을 알게 된 경우
- ❖ 연계: 타 기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제외한 외부기관)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지원을 함께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 ❖ 이관: 특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사례가 피해자의 거주지 이전, 기관 간 협의 등으로 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넘어가는 것. 사례에 대한 관리 권한은 이관받은 기관으로 넘어감
- ❖ 신고의무자: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 ❖ 비신고의무자: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신고의무가 없는 사람이 장애인학대를 신고한 경우 이들을 비신고의무자라고 함. 본인, 가족 및 친인척, 타인, 신고의무자가 아닌 기관종사자, 파악 안 됨으로 분류함
  - 가족 및 친인척: 피해장애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그 외 친척
  - 유관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종사자로 일반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신고의무자가 아닌 공공기관 종사자, 교직원이 아닌 교육기관 종사자, 의료인이 아닌 의료사회복지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과 같은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아닌 아동·노인관련기관 종사자, 청소년·여성·노숙인·이주민 등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 타인: 피해장애인의 동거인, 이웃,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
  - 파악 안 됨: 신고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신고자가 밝히지 않아 알 수 없는 경우

## 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 ❖ 학대조사: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의심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든 형태의 조사과정. 이 과정에서 피해자 및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면담, 증거 및 입증 서류 확인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응급조치가 동시에 실시됨
- ❖ 응급조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했을 때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한 곳에서 일시 보호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이송하여 검사, 치료를 받게 하는 조치(「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1항 및 제2항)
- ❖ 사례판정: 신고접수된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절차.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사례는 학대사례로 판정하고, 장애인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잠재위험사례와 비학대사례로 판정

구분	개념
학대사례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하여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
비학대사례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잠재위험사례	학대조사 결과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로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

- ❖ 사례회의: 신고접수된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사례의 내용을 내부적으로 공유·논의하여 사례지원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결정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회의
-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위원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회의에서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유보된 사례에 대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논의하여 사례와 관련된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
- ❖ 재학대사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 개입종료되었다가 다시 신고접수되어 학대로 판정된 사례
- ❖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최초 장애인학대가 시작된 시점부터 발견 시점까지의 기간
- ❖ 장애인학대 발생빈도: 장애인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횟수

## 피해자 등 지원

- ❖ 피해장애인 지원: 학대사례로 판정한 후 피해자에 대한 학대 후유증 감소, 학대 재발 방지, 피해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으로 의료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예방교육지원, 학업지원, 중재지원, 진정지원, 상담지원, 기타지원으로 분류함
  - 의료지원: 학대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 등의 치료와 피해 회복을 의료적으로 돕는 것으로 응급의료조치, 검진 또는 진단, 통원 및 입원치료 등을 말함
  - 심리지원: 피해장애인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심리평가 및 진단, 심리 상담 및 치료 등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함
  - 거주지원: 피해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주공간 마련에 관한 지원으로 응급보호, 임대주택과 같은 재가에서의 거주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와 같은 거주시설에서의 거주지원 등이 있음
  - 사법지원: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피해장애인이 입게 된 손해의 회복, 후견인 선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자 신뢰관계 동석 등 사법적인 절차와 관련된 지원을 말함
  - 복지지원: 장애인등록 절차를 연계하거나, 공공 및 민간 영역의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피해장애인에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는 지원을 말함
  - 예방교육지원: 피해 회복과 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자, 가족, 행위자, 관련자 대상의 학대 예방 교육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외부 자원을 연계하여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말함
  - 학업지원: 피해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협의나 신청, 연계, 전학 신청, 등·하교 지원 등 학업을 위한 지원을 말함(2022년 신설된 지원 유형)
  - 중재지원: 피해장애인과 학대행위자가 법적절차로 가지 않고 당사자들간의 분쟁을 조정하여 화해를 이끌어 내는 지원을 말함
  - 진정지원: 피해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기관에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직접 진정하거나 피해장애인의 진정 과정을 돕는 지원을 말함
  - 상담지원: 의료·심리·거주·사법·복지·예방교육·학업·중재·진정 외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이뤄지는 정서적 지지, 진행 경과 안내 등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상담을 말함
  - 기타지원: 어떤 유형에 포함되기 어려운 지원으로 피해자의 이동을 목적으로 지원하거나, 다수의 복합적인 지원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 ❖ 상담 및 지원: 신고접수 이후부터 사례종결 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피해자, 가족, 행위자, 관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통칭함
- ❖ 사례종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마치는 단계로 사례종결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은 실시하지 않음
- ❖ 사후 모니터링: 사례종결 이후 일정기간 동안 피해자의 안전과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 업무를 말함
- ❖ 개입종료: 사례에 대한 개입을 완전히 마치는 것을 말함

## 2.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 사례지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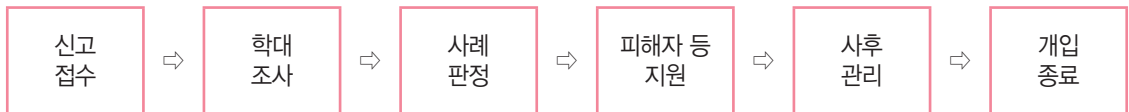
사례지원이란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의 신고접수, 장애인학대조사, 응급조치, 피해자 등에 대한 회복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사례에 대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개입절차 전반을 말한다.

사례지원의 대상은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가족, 보호자, 학대행위자이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3에 따라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접수와 학대조사를 실시한다.

사례지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에 최우선하여 진행하며, 그 과정은 피해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내한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피해자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보호자의 의사나 욕구를 우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절차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신고접수부터 개입종료까지의 절차로 진행된다.



장애인학대사례는 사례판정 이후 피해자지원, 사후 모니터링을 거쳐 사례의 개입을 종료한다. 장애인학대사례 외 잠재위험사례로 판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지 않고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비학대사례로 판정한 경우 피해자 지원, 사후 모니터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 신고접수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장애인학대 신고번호(1644-8295)로 신고할 수 있다. 전국 20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신고를 받으며, 학대피해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사례를 담당한다. 2021년부터 전화 외에도 문자(SMS), 카카오톡으로 신고할 수 있다. 누리집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고, 직접 기관을 방문하는 내방 신고도 가능하다.

### ❖ 학대조사

신고접수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신고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학대조사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현장조사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 동행하여야 한다.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 조사나 질문을 실시한다. 조사 시에는 피해장애인 및 관련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조사 시 장애인학대와 관련있는 자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학대조사 시 피해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인도하여야 한다.

### ❖ 사례판정

학대조사 이후 장애인학대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사 결정 회의인 사례회의에서 학대 여부를 판정한다. 사례회의 시 판정이 어렵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 ❖ 피해자 등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 피해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장애인학대사례로 판정되면 조사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향후 지원과정 및 내용, 계획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사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며 세부 내용으로는 의료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예방교육지원, 학업지원, 중재지원, 진정지원, 상담지원 등을 실시한다.

### ❖ 사례종결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마치면 사례회의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완료되었는지 평가하고, 사례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사례회의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정·변경하여 피해자 지원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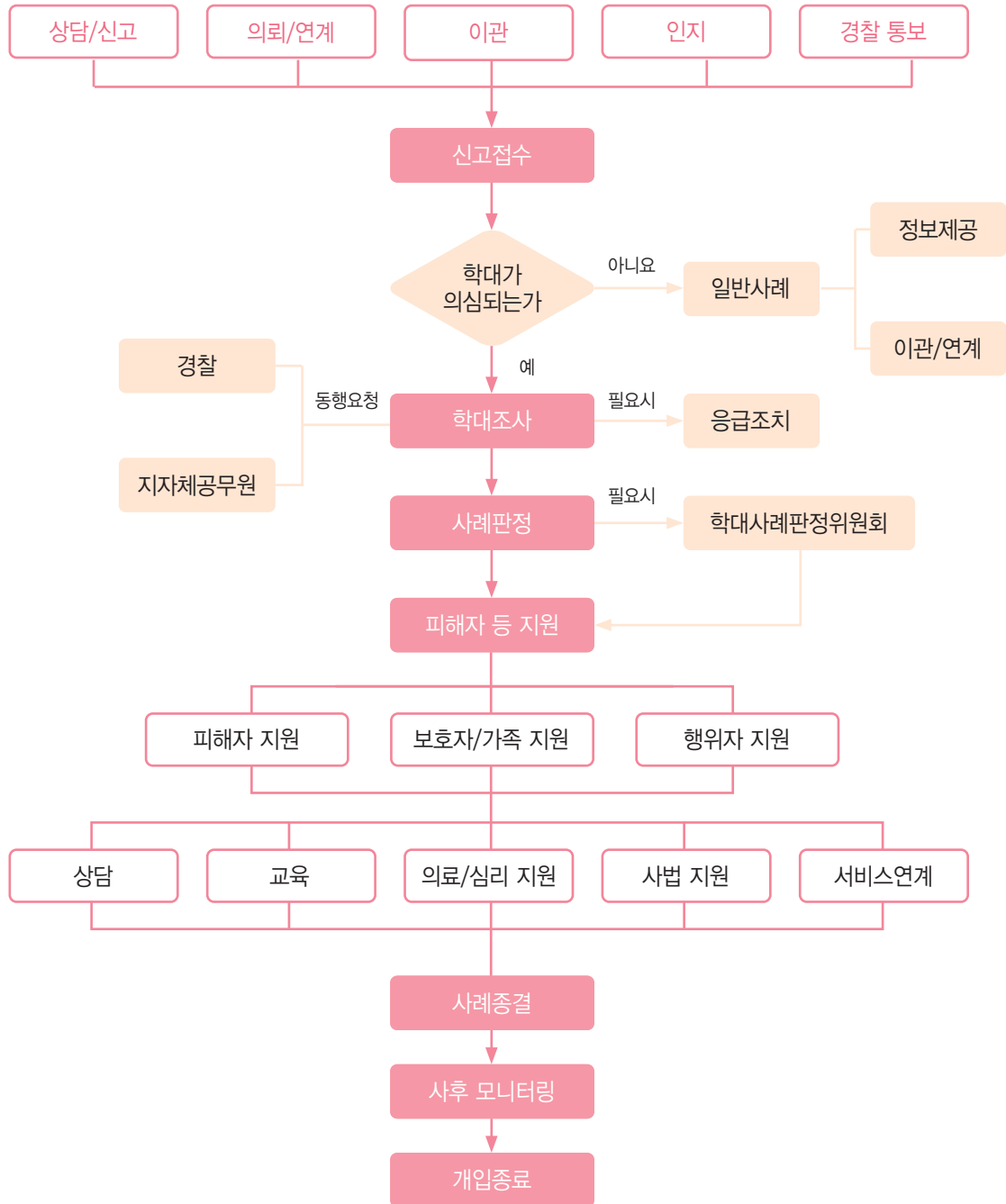
### ❖ 사후 모니터링

피해자 지원을 마치기로 결정하면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장애인의 재학대 발생 여부 및 안정적인 생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 개입종료

사후 모니터링 기간 내 재학대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례의 개입을 최종적으로 종료한다.

##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체계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및 현황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권리옹호 목적으로 2017. 1. 1.부터 설치·운영되는 법적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연구, 프로그램 개발, 지역기관 지원 등을 담당,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개별 학대사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

구분	주요 업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li> <li>•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li> <li>•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li> <li>•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li> <li>•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능력개발</li> <li>•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li> <li>•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li> <li>•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li> <li>•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li> <li>•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li> </ul>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li> <li>•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li> <li>•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li> <li>•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li> <li>• 피해장애인 보호 및 피해회복</li> <li>•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li> <li>•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li> </ul>

##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 (2024. 6. 30. 기준, 20개)

기관명	전화	주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2-6951-1790	(07205)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선유도코오롱디지털타워 1412호 (양평동)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2-3453-9527	(06278) 서울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6층 (대치동)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51-715-8295	(47511) 부산 연제구 법원로16번길 10, 금복빌딩 6층 (거제동)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53-716-8295	(41242) 대구 동구 동부로22길 2, 서한코보스카운티 403호 (신천동)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32-425-0900	(22134)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타워 1801호 (주안동)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62-716-1633	(61960) 광주 서구 상무대로 719, 나라빌딩 2층 (치평동)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42-631-5667	(34541) 대전 동구 계족로 499, 루루빌딩 3층 (용전동)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52-260-8295	(44669) 울산 남구 중앙로 311, 연세H타워 2층 (신정동)
세종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44-905-8295	(30150) 세종 한누리대로 2107, 보람종합복지센터 121호 (보람동)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31-287-1134	(16639)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 208호 (오목천동)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31-851-1007	(11485) 경기 양주시 고삼로 43번길 28,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306호 (삼송동)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33-264-8296	(24390) 강원 춘천시 퇴계로 199, 경림빌딩 2층 (석사동)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43-287-8295	(28797)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63번길 61-54, 라데팡스빌딩슬레이관 303-1호 (분평동)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43-847-8295	(27352) 충북 충주시 갯고개로 166, 3층 (연수동)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41-551-8295	(3119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56, 천안법조플라자 301호 (청당동)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63-227-8295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흥산남로 11-10, 경희공빌딩 5층 (효자동)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61-285-8298	(58615) 전남 목포시 영산로 633, 힐링타워 2층 (석현동)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54-282-8295	(37662)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4-5 (대잠동)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55-603-8295	(5151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5, 리제스타워 210호 (중앙동)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T)064-900-9695	(63217) 제주 제주시 청귤로5길 21, 1층 (이도이동)

##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인쇄일	2024년 11월
발행일	2024년 11월
발행인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편집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박정식
편집위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정혜, 전화준, 조은임, 최지연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12)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6951-1790)
인쇄	블루애드(02-6082-7076)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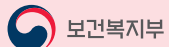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2023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